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

2011. 7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원양협력관실

목 차

I.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조업어선 준수사항	1
II.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	1
1. 승선검색 단계별 조치사항	1
2. 검색선박 및 검색당국 목록	2
3. 검색선박의 기	122
4. 표준 다언어 질문서(영문 및 국문)	1
III. 보존관리조치(국문 및 영문)	1
1. 어선의 표시 및 확인을 위한 상세사항(CMM 2004-03)	1
2.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05-03)	1
3. 남서태평양 청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06-04)	1
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승선검색절차(CMM 2006-08)	1
5. 지역옵서버 프로그램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7-01)	1
6. 위원회 선박감시시스템(CMM 2007-02)	1
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VMS 표준, 사양 및 규칙	0
8. 바닷새 부수포획 경감 보존관리조치(CMM 2007-04)	2
9.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08-01)	2
10. 바다거북 보존관리조치(CMM 2008-03)	B
11. 대규모 유자망 어업 금지 보존관리조치(CMM 2008-04)	3
12.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CMM 2009-01)	B
13. 공해상 FAD 사용 금지와 어획물 보유 적용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2)	39
14. 황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09-03)	B
15. 자료 부이 주변 어업금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5)	3

16. 전채규정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6)	3
17. 용선통보계획(CMM 2009-08)	9
18. 무국적 선박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9)	8
19. 신뢰성 있는 어획 데이터 보장을 위한 선망선 항구 양륙 감시 보존관리 조치(CMM 2009-10)	8
20. 북방청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10-01)	4
21. 동부 포켓공해 특별 관리구역을위한 보존관리조치(CMM 2010-02) ..	4
22. 이행감시제도를 위한 보존관리조치(CMM 2010-03)	4
23.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10-04)	4
24. 남방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10-05)	4
25. IUU 어선 목록작성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0-06)	4
26. 상어 보존관리조치(CMM 2010-07)	4
27. 데이터 부이에 관한 종합정보	4

I.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조업어선 준수사항

I.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조업어선 준수사항

□ 어선의 표시 및 확인을 위한 상세사항(CMM 2004-03)

- 선박의 양측면에 WIN(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식별번호) 표시 의무
 - 우리나라는 국제통신연맹무선호출부호를 WIN으로 사용
 - 선박에 의해 운반중인 소형보트 또는 헬리콥터 등은 본선과 같은 WIN 사용

※ WIN 표시 세부기준은 보존관리조치 참고

□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05-02)

- 남위 20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자국 어선수를 현재(2005) 또는 이전 5년간 평균수준 이상으로 증가금지
- 적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어획량을 2005년 수준 또는 이전 5년간 평균수준 초과 금지

□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05-03)

- 어획노력 현수준 초과금지
- 어획량 6개월 단위 보고
- 어획노력 연 단위 보고(어구별 어획량, 조업일수 등)

□ 남서태평양 청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06-04)

- 남위 10도 이남의 청새치 조업척수를 2000-2004년중 어느 한해의 조업척수로 제한(우리는 2003-2004년중 28척으로 최대)

□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승선검색절차(CMM 2006-08)

- 동 절차에 따라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게 할 목적으로 공해상 승선검색을 받을 의무
- 주요 점검사항(중대한 위반사항)
 - 무허가 조업
 - 어획량 관련자료의 기록 미비 또는 중대한 오보
 - 금어수역에서의 조업
 - 금어기중 조업
 -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어종의 고의적 어획 또는 어획물 보유
 -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어획량 제한 또는 할당량의 중대한 위반
 - 금지된 어구의 사용
 -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 손상 또는 폐기
 - 제26조 및 제27조 이외의 승선검색 수락의 거절
 - 권한 있는 검색관에 대한 공격, 저항, 위협, 성적학대, 간섭 또는 부적절한 방해 또는 지연
 - 선박감시시스템의 의도인 손상 또는 무력화

□ 지역오퍼서버 프로그램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7-01)

- 선상 오퍼서버의 권리 존중
 - 동 조치 부속서 A에 규정된 오퍼서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지침 참고
- 선박 운영자 및 선장의 책임
 - 선박에 오퍼서버를 받아들일 의무
 - 승무원에게 오퍼서버 승선시기와 ROP 오퍼서버가 승선하였을 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는 것.
 - 오퍼서버가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안전하게 승하선하도록 지원
 - 만일 오퍼서버가 특별히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오퍼서

버에게 선상에서 그물을 전개하거나 끌어올리기 시작전 적어도 15분전에 알릴 책임.

- 옵서버가 안전하게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을 허용하고 지원할 책임.
- 옵서버가 기록검색 및 복사의 목적으로 선박의 조업일지, 서류를 포함하여 선박의 기록에 완전한 접근을 허용
- 항해장비, 해도 및 무선통신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 및 어업과 관련된 다른 정보에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
- 선상에서 옵서버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능 쌍안경, 전자통신수단 등 만일 있다면 추가적인 장비에 접근의 허용
- 옵서버가 어획물로부터 샘플을 선택하고 저장하도록 허용
- 선상에서 옵서버, 옵서버 공급자 또는 정부의 비용 부담없이 옵서버에게 선상 사관에게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음식, 숙박, 적절한 위생 및 의료시설을 제공
- 선상에서 옵서버의 승선기간동안 옵서버에게 보험을 제공
- 어류를 보관, 가공, 계체 및 저장할 수 있는 선교, 선상어류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옵서버가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선박의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완전한 접근 및 이용을 허용하고 지원
- 옵서버가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격, 방해, 저지, 연기, 위협, 간섭 받지 않고, 뇌물제공 또는 뇌물제공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장

□ 위원회 선박감시시스템(CMM 2007-02)

- 협약수역내 북위 20도 이남 수역 및 동경 175도 이동 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2008년도부터 VMS를 작동시켜야 함.
- 이 수역에서 조업한 후 그 외 협약수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자동위치 발신기를 작동시키고 위원회에 계속보고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VMS 표준, 사양 및 규칙(2008년 연례 회의시 채택)

- ALC에 대한 감사
- 감사기관 : 각국 또는 사무국

- 감사내용 : ALC의 위치 정확성 평가, 발신기와 데이터 수신 사이의 경과시간, 전력공급, 조작 증거 등
- 감사결과 보고 : 연례보고서 제2장에 포함 보고

○ ALC의 검사

- 공해상에서는 공해상 승선검색절차에 따라 검사
- 검색선이 제품사양과 관련하여 비정상적 상황 발견시 선박 운영자는 30일 내에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검사결과 제출.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대체 통신수단에 의해 4시간 간격 위치보고의무

○ 위치보고

- WCPFC VMS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조업선박은 90분이내에 위치보고 의무

○ 조업선박의 의무

- ALC 최소표준에 부합하는 ALC를 등록, 장착, 및 상시 작동의무
- 공해 또는 항구에 있는 동안 검사관이 ALC 관련 연결장치 및 안테나에 접근허용

□ 바닷새 부수포획 경감 보존관리조치(CMM 2007-04)

- 연승어선은 바닷새 부수포획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리라인 및 야간투승을 하여야 함.
 - 남위 30도 이남에서 조업하는 연승선에 대하여는 2008. 1. 1 부터 적용
 - 북위 23도 이북에서 조업하는 연승선에 대하여는 2008. 6. 30 부터 적용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08-01)

○ 선망어업

<2009년도>

-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 사이의 나우루협정당사국(PNA) EEZ 및 공해에서 2개월(8-9월)간 어류 군집장치(FAD) 사용 금지 및 이의 감시를 위한 옵서버 100% 승선

<2010-2011년>

- PNA EEZ에서는 그들 국가의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서 이행
 - 2004년 수준으로 총 조업일수를 제한하는 VDS 시행
 - 3개월(7-9월)간 FAD 사용금지 및 이의 감시를 위한 옵서버 100% 승선
 - 어획물 완전 보유 등
- 공해상의 조치
 - 3개월(7-9월)간 FAD 사용금지 및 이의 감시를 위한 옵서버 100% 승선
 - 포켓수역(Pocket High Seas) 조업금지 : 2009년도에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2010년부터 PNA EEZ로 둘러싸인 2개의 포켓수역에서 조업금지
 - 선망선 어업노력 제한 : 각국은 조업일수 기준, 선망선 어업노력 수준이 2004년 수준 또는 2001-2004년 평균수준을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VDS 도입 : 2009년에 검토, 2010년 연례회의시 채택

※ VDS(Vessel Day Scheme) : 조업일수관리제도

<어획물 보유>

- 100% 옵서버 승선을 목표로 하는 옵서버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2010년부터 북위 20° 및 남위 20°사이에서 가다랭이,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물 투기 금지
- 선상 어획물 보유의 예외로 ① 최종 양망시 어창용적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단, 연안국의 국내법(특히, 마이크로네시아)은 준수하여야 함. ② 크기 이외의 이유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장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감시>

- 2009년에는 입어약정상 옹서버를 승선시키고, 공해상에서 옹서버 최소 20% 이상 승선
- 2010년부터는 ROP로부터 EEZ 및 공해상에 옹서버 승선. 단, 자국어선은 자국수역에서 옹서버 승선 면제가능

○ 연승어업

- 2001-2004년 평균 또는 2004년 어획량 기준, 2009년부터 3개년간 매년 10%씩 눈다랑어 어획량 감축

※ 우리나라의 연승어업 눈다랑어 어획한계

- 2009년 19,305톤, 2010년 17,159톤, 2011년 15,014톤

○ 항구 통제

- 각국은 위원회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으로부터 어획된 참치의 양륙, 전재 및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여야 함.

□ 바다거북 보존관리조치(CMM08-03)

○ 선망어업

- 투망시 바다거북을 둘러치지 않도록 하고 만일 그물에 걸렸을 경우 안전하게 풀어줄 것.
- 양망시 바다거북이 걸려 물 밖으로 나오면 그물 감기를 중단하고 풀어줄 것

○ 연승어업

- 선박에 낚시줄 절단기, 낚시제거기 및 뜰 그물을 보유하여 바다

거북이 걸렸을 시, 이들을 사용하여 방류할 것

□ 대규모 유자망 어업 금지 보존관리조치(CMM2008-04)

- 협약수역내의 공해상에서 대규모 유자망 어업을 금지
 - 대규모 유자망이라 함은 길이 2.5km 초과하는 어망

□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CMM 2009-01)

- 우리나라의 어업허가장 선상 소지
 - 연안국 EEZ 조업시 그 연안국의 어업허가장 선상 소지
 - 국적기 게양
 - WCPFC 어선등록부에 등록의무
 -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의 경우 임시등록부에 등록의무
 - 어선 등록부와 임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협약수역내에서 조업, 어획물 선상보유, 전채 또는 양륙을 허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조업선박은 조업개시 15일 전, 최소 조업개시 72시간 전에 기국을 경유 사무국에 다음사항을 통보할 의무
 - 신규 투입 선박은 등록 필요사항
 - 기 등록 선박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그 변경사항
- ※ 선박의 등록여부는 WCPFC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공해상 FAD 사용 금지와 어획물 보유 적용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2)

- FAD 사용금지기간 준수 관련
 - FAD의 정의 : 생물, 무생물을 불문하고 어류를 유집할 수 있는 부유물
 - CMM 2008-01에서 규정된 FAD 금지 기간 동안, 어떤 선망선도

FAD 1마일 내에서 그물의 일부를 전개할 수 없음.

- 선박의 운영자는 어류를 모으거나 수중 등과 밀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어된 어류를 이동하는데 선박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지 않음.
- FAD 사용 금지 기간 동안 FAD 또는 이와 관련된 전자 장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FAD 또는 전자 장비를 육지에 도착할 때 까지 또는 금어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선상에 두는 경우
 - FAD를 회수한 지점에서 반경 50 마일 내 또는 회수한 후 7일 동안 투망을 하지 않는 경우
- 선박은 군집 어류를 잡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조업하지 않음. FAD 사용 금지기간동안 투망 직전 24시간 이내에 다른 선박이 FAD를 회수한 지점에서 1마일 내에서 투망하지 못함.

○ 선망선 어획물 완전보유 규정 관련

※ CMM2008-01에 의거 2010년부터 선망선에 옴서버 항시 승선

- 선박 운영자가 사이즈, 시장성 또는 어종 구성의 이유로 어획물을 선상에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물이 완전히 닫히고 그물의 반이 끌어올리기 전에 어류를 방류하여야 함.
- 식용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 선망선 그물에 걸리거나 으깨진 경우
 - 상어 또는 고래의 약탈로 인해 손상된 경우
 - 어구 고장으로 정상적인 그물 및 어획물 회수와 어류를 산채로 풀어주는 노력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식용부적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크기, 시장성, 또는 어종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 어선의 선원이 한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상하거나 오염된 경우.

- 어류를 항차 마지막 투망에서 잡고 어창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선상에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로 폐기 가능한 경우
- 선장과 선원이 가능한 한 빨리 어류를 산 상태로 방류하도록 노력하고,
- 폐기 후 선상에 보유한 어류를 양륙 또는 전재할 때까지 추가적인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어류는 옵서버가 폐기될 어류의 어종 구성을 산정할 때까지 선박에서 폐기하지 못함.
- 선박의 운영자는 어류 폐기 결과를 폐기후 48시간내에 사무국에 보고하고 이 결과 사본을 옵서버에게 제공

□ 황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09-03)

- 남위 20도 이남의 황새치 조업척수를 2000-2005년중 어느 한해의 조업척수로 제한(우리나라는 2003년도 24척이 최대)
- 남위 20도 이남의 황새치 어획량을 2000-2006년중 어느 한 해의 어획량으로 제한

□ 자료 부이 주변 어업금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5)

- 자료 부이는 어업목적이 아닌 환경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 또는 측정할 목적으로 정부간 또는 인정받는 과학기구 또는 실체에 의하여 전개된 부유장치로 정의
-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자료 부이의 1마일 이내에서 또는 자료부이와 상호 연계하는 어업을 금지
- 상기사항 위반은 협약 제25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
- 기국의 허가 없이 자료 부이 선상 보유 금지

□ 전재규정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6)

- 일반 원칙

- 선망선 해상전재는 금지함.
 - 연안국이 전재항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항에서 전재
 - 용선 선박에 대하여는 용선국이 보고책임
 - WCPFC의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포함된 운반선에 대하여는 용선약정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이 그 선박에 대한 보고 책임
 - 전재전 36시간전에 기국은 부속서 III의 정보(선명, 전재량, 전재일시, 전재위치 등)를 사무국장에게 보고
 - 상기 보고는 선박의 운영자가 직접 하도록 허가 가능
 - 하역 선박과 수취 선박 모두 부속서 I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 전재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국을 통하여 전재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보고
 - 각국은 부속서 II의 지침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일부로서 사무국에 보고
 - 2011년부터 운반선에 옵서버가 승선 보존조치 이행 감시 확인
 - 각 옵서버에 대해 한번에 하나의 하역 선박으로부터만 수취 가능
- 불가항력 또는 심각한 기계적 결함의 경우 전재 가능
- 전재가 완료된 지 12시간 내에 전재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통보
 - 전재 15일 이내에 기국을 통하여 전재 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
- 연승선에 대한 공해상 전재
- 2012년까지는 우리부가 만든 “공해상 전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지침에 따라 전재를 허가 받아 전재가능
 - 2012년까지 적용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 : 공해상 전재금지가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야기한 경우로 공해 이외에서 전재하는 경우 초래되는 비용과 총운영비, 순수입 등을 비교하여 판단
- 동 보존관리조치는 2010. 7. 1부터 시행

□ 용선통보계획(CMM 2009-08)

- 용선통보는 용선향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2010. 7. 1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
 - 사무국장은 상기 정보를 즉시 기국에 통보
- 2010. 7. 1 이후에 각 용선통보는 15일 이내에 또는 적어도 용선향정
에 따른 조업개시 72시간전에 관련정보를 사무국장 및 기국에 통보
- IUU 선박 용선향 금지

□ 무국적 선박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 2009-09)

- 무국적 어선은 어느 국가의 국기도 게양하지 않는 선박 또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92조에 따라서 둘 이상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의미
- 국제법상 무국적 선박으로 결정된 어선은 협약과 그에 따라 채택
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한 것으로 추정

□ 북태평양 청새치 보존관리조치(CMM 2010-01)

- 적도 이북 연승선 청새치 어획량을 '00-'03중 최고 어획년도의 어획
량에서 단계적으로 '11년 10%, '12년 15%, '13년 20% 감축 합의하되,
동 보존조치는 '11년에 한하여 적용되고 11년 재협의를
※ 우리나라 '00-'03년 최고어획량 : 537톤(따라서 '11년 쿼터 : 483톤)

□ 동부포켓공해(3번) 특별관리를 위한 보존관리조치(CMM2010-02)

- IUU어업근절을 위해 동 수역을 특별관리하여 입출역보고(6시간
전) 및 동 수역 이동 조업선 명단을 보고
 - 입출역 보고 내용 : 선박 식별번호 (VID)/입역/출역: 날짜/시간, 위도 및 경
도1), 황다랑어/눈다랑어/날개다랑어/가다랑어/황새치/상
어/기타/총어획량 (kg)/ 전재여부(예/아니오)
 - 선박 목적보고 : 날짜, 시간, 위치, 진로, 표식, 운항속도, 선박 유형 을 포함하
여야 함

1) 입출역 예상 날짜/시간, 위도 및 경도

□ **이행감시제도를 위한 보존관리조치(CMM2010-03)**

- 사무국은 각국의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현황을 읍저버/NGO/승선검색/국별연례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행감시보고서 초안을 작성
⇒ TCC와 위원회는 국별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결정하는 이행감시보고서를 채택 ⇒ 해당국에서 적절한 조치적용 및 위원회에 국별보고서(Part 2)의 일부로써 조치결과 보고

※ 단, 동 조치는 '11년에 한하여 CMM2008-1에만 적용되며, 내년 회의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 채택

□ **북태평양 참다랑어(PBT) 보존관리조치(CMM 2010-04)**

- '11-'12년중 '02-'04년 수준이하로 어획노력을 감소시키며, 치어(0-3세) 어획량을 '02-'04년 수준 이하로 감축하되 한국은 치어 어획량 감축에서 예외. 단, 한국은 치어 어획량 감축을 위해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한국은 전례어업 예외 삭제 및 치어(0-3세어)에 대한 조업중단을 제안하여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안)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회기간 북방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

□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CMM 2010-05)**

- 기존 보존관리조치(2005-02)상에 조업척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자료제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목표어업은 '06-'10년간의 조업척수 및 어획량, 부수어획은 매년 어획량을 위원회에 보고

□ **중서부태평양 IUU 어선목록 작성에 관한 보존관리조치(CMM2010-06)**

- 다음 어선은 IUU 어선으로 추정되며, 이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WCPFC IUU 어선목록에 등재여부가 결정됨.

- WCPFC 어선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자국의 배타적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지도 않는 어선
- 연안국의 EEZ에서 무허가 어업 또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어선
- 협약수역에서 발효중인 WCPFC 조치에 따라 어획량을 기록·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준 미달 치어를 어획하여 양륙하는 경우
- 금어기중에 어업을 하는 경우
-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 불법·비보고·비규제 선박 목록에 등재된 지원 또는 재공급 선박과 환적, 공동어업을 행하는 경우
- 국적없는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WCPFC 협약에 규정된 어종을 어획하는 경우
- 기타 WCPFC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어업에 참여하는 경우
- WCPFC 불법·비보고·비규제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주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 IUU리스트에 등재된 선박 선주의 동일선박을 IUU어선으로 추정한다는 규정(3j항) 관련, IUU 리스트에 3척 이상 또는 2년 이상 선박 보유한 경우를 3(j)선박으로 정의

- 단, (1)선주변경 및 새로운 선주가 IUU 전력이 없을시 (2)원래 IUU리스트 등재선박과 관련 위반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경우 IUU리스트 삭제(검토)될 수 있으며,
- 연안국 전재/가공시설과 연안국 관련선박과 FFA국가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을 유발할 경우 연안국이 IUU리스트에서의 삭제 요구 가능

○ 또한, TCC에서 잠정리스트에 등재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문구 완화됨

□ 상어 보존관리조치(CMM 2010-07)

- 2008년도부터 선박이 보유한 상어 지느러미의 무게가 선내 상어 총중량의 5%를 넘지 않아야 함.
- 과학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 상어 어종에 대한 어획량, 노력량, 보유 및 폐기량을 위원회에 보고
 - 기존 중요 상어종 : 청새리상어(blue shark), 미 흑점 상어(silky shark),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 청상아리(mako shark), 환도상어(thresher shark), 악상어(porebeagle shark, 남위 20도 이남, 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해 이 한계선, 또는 다른 지리학 적 한계선이 적절한 지를 알아낼 때 까지) 및 귀상어 (hammerhead shark, 윙헤드, 홍살귀상어, 그레이트, 스무스),
 - 중요 상어종에 대하여는 어구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Ⅱ.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

II.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

1. 검색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승선전	승선후	하선후
검색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기 계양 ○ 신분증 소지 ○ 어선과 교신(다언어 질문서 활용) ○ 권한있는 검색선임을 확인하는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주파수 ○ 검색의도 어선에 통보 ○ 검색당국에 검색개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에게 검색관 신분증 제시 ○ 검색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 모든 관련문서 ○ 검색시간 : 최대 4시간 ○ 보존조치 위반 증거 수집 및 명확히 기록 ○ 검색중간보고서 사본 선장에게 제공 (선장의 의견포함) 	
검색선박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당국에 검색개시 통보 ○ 어선의 선장이 검색 거절시 어선 당국 및 위원회에 즉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찰사항을 위원회와 어선당국에 즉각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위반 증거를 신속히 어선당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 완료후 3근무일내에 위원회 및 어선당국에 검색보고서 사본 송부 ○ 중대한 위반의 증거를 조사종료 즉시 어선당국에 제공

<p>어선 당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이 검색을 거절한 경우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정에 따라 승선검색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이 검색에 순응토록 지시 - 불응시 조업허가 중지 및 귀항조치 - 동 조치사실을 즉시 검색당국 및 위원회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위반사항의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어선에 대한 집행조치 ○ 검색당국이 위반의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권한부여 및 위원회에 통보 ○ 검색당국으로부터 중대한 위반사항 수보시 3근무일내에 응답 	
<p>어선선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관의 안전한 승선 지원 ○ 승선 거절시 이유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관에 협력 ○ 필요시 음식과 숙박시설 지원 ○ 검색관의 안전한 하선 지원 	

2. 검색선박 및 검색당국 목록(2010. 1월 현재)

○ 총 52척 등록

- 뉴질랜드 6, 프랑스 3, 미국 18, 캐나다 5, 대만 9, FSM 3, PNG 4, 한국 1, 쿡 아일랜드 1, 일본 2

※ 변동사항은 <http://www.wcpfc.int/> 참조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16 September 2010

Dr SungKwon Soh
Interim Executive Director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 Box 2356
Kolonias
Pohnpei State, 96941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by email: sungkwon.soh@wcpfc.int

Dear Dr Soh *SK*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nomination of authorised inspection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CMM) 2006-08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and WCPFC Circulars 2008/03 and 2008/09, Australia wishes to provide details of an authorised inspection vessel (the New South Wales Water Police Patrol Vessel "Nemesis") to be included on the WCPFC register of authorised inspection vessel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inspection vessel required under paragraph 13(a)(i) of CMM 2006-08 are provided in **Attachment 1**. In addition, please note the inspection vessel is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 (see photograph provi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3(a)(ii) of CMM 2006-08.

I can advise that any crew members assigned to the inspection vessel will be trained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in paragraph 13(a)(iii) of CMM 2006-08.

Please note that,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13(b) of CMM 2006-08, Australia notified the Commission on 14 January 2010 that the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i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and that all authorised inspectors conducting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s are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to be inspected and have received training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CMM 2006-08 (a copy of the notification is at **Attachment 2**). As previously notified, Commission members can contact the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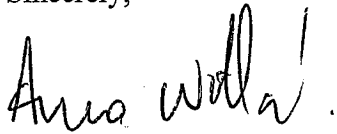
Name: Duty Officer
Authorised Authority: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Telephone: +61 419 205 329
Fax: +61 2 6275 6275
Email: foreignsurveillanceresponse@afma.gov.au

I would encourage Commission members using this point of contact to provide the name and callsign of the vessel being inspected, the inspecting authority, nature of the incident, a contact person and a means of making contact with that person (such as a phone number or e-mail address) so that the duty officer can respond to the notification as soon as possible.

Australia understands, as clarified in WCPFC Circular 2008/09, that it is bound not to conduct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s pursuant to CMM 2006-08 until after the expiry of the 60 day period following the circulation of the updated register of authorised inspection vessels by the Executive Director through posting on the WCPFC websit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fication.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Anna Willock".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flowing style.

Anna Willock
WCPFC Commissioner (Australia)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07 / 09 /2010
(DD/MM/YY)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Nemesis	Australia	VJN3285	22786	Sydney	
2.						
3.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Nemesis	+61 419 205 329	+61 2 6275 6275	+61 419 205 329	foreignsurveillanceresponse@afma.gov.au
2.					
3.					

**Contact the 24/7 AFMA duty officer for vessel contact information: Phone +61 419 205 329, Fax +61 2 6275 6275.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el/Other)
1.	Nemesis	32m LOA, Moulded Beam 7.10m	32 metres	Aluminium
2.				
3.				

Vessel Photograph

Vessel Class:
Offshore Patrol

Name: Nemesis

Length Overall
(LOA): 32 metres

Side number:
WP1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VJN3285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GMDSS



14 January 2010

Andrew Wright
Executive Director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hnpei,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ar Andrew:

CCM 2006-08 –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Letter of Authori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CMM) 2006-08: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HSB&I) Procedures, Australia would like to nominate the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AFMA) as authorised inspectors on the HSB&I Register .

Pursuant to paragraph 13 of the HSB&I Procedures, please be advised that:

- (i) AFMA will be the Australian authority responsible for boarding and inspection;
- (ii) AFMA's inspectors are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to be inspected and the provisions of the WCPFC Convention as well as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force;
- (iii) AFMA's inspectors undertaking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have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and
- (iv) AFMA's inspectors shall be carrying an approved identity card and badge identifying them as an Australian Fisheries Officer, attached.

Pursuant to paragraph 15 of the HSB&I procedures, AFMA has developed a specific training course curriculum on HSB&I Procedures for inspectors who will be conducting high seas boarding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s.

Sincerely,

Original sent by

Lara Santana
International Fisheries (Pacific)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GPO Box 858
Canberra ACT 2601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08/04/08
(DD/MM/YY)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Sir Wilfrid Laurier	Canadian	CGJK	807038	Ottawa	
2.	John P Tully	Canadian	CG2958	804457	Ottawa	
3.	W.E Ricker	Canadian	CG2965	372369	Ottawa	
4.	Tanu	Canadian	CGBY	330370	Ottawa	
5.	Gordon Reid	Canadian	CGBR	813735	Ottawa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Sir Wilfrid Laurier	250-480-2694	301-813-3190	600-700-6129	laurier@pac.dfo-mpo.gc.ca
2.	John P Tully	250-363-6522	301-727-9758	011-872-331-611-410	tullyjp@pac.dfo-mpo.gc.ca
3.	W.E Ricker	250-756-7240	410-999-6162	403-987-6506	rickerwe@pac.dfo-mpo.gc.ca
4.	Tanu	250-363-6888	301-813-2231	011-8816-4149-5845	tanu@pac.dfo-mpo.gc.ca
5.	Gordon Reid	250-624-3727	410-999-6185	600-701-6323	reidg@pac.dfo-mpo.gc.ca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 Wood/Steel/Other)
1.	Sir Wilfrid Laurier	82.96	meters	steel
2.	John P Tully	69	meters	steel
3.	W.E Ricker	58	meters	steel
4.	Tanu	50.06	meters	steel
5.	Gordon Reid	49.95	meters	steel



Fisheries and Oceans
Canada

Pêches et Océans
Canada

Canada



Fisheries and Oceans
Canada

Pêches et Océans
Canada

Canada



Canadian Coast Guard - Pacific Region

Garde Côtière Canadienne - Région du Pacifique



Fisheries and Oceans
Canada

Pêches et Océans
Canada

Canada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Submission Date: 01/06/2010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SHUN HU NO.1	Chinese Taipei	BEBV	8883599	Kaohsiung	
2	SHUN HU NO.2	Chinese Taipei	BEBY	8883604	Kaohsiung	
3	SHUN HU NO.3	Chinese Taipei	BEBW	8883616	Kaohsiung	
4	HO HSING	Chinese Taipei	BDBX	416007500	Keelung	
5	WEI HSING	Chinese Taipei	BDBY	012060	Kaohsiung	
6	TAI PEI	Chinese Taipei	BP3086	013728	Keelung	
7	NAN TO	Chinese Taipei	BR3248	014423	Kaohsiung	
8	KIN MEN	Chinese Taipei	BR3305	014676	Kaohsiung	
9	LIEN CHIANG	Chinese Taipei	BR3304	014677	Kaohsiung	
10	YU SHIUN NO.2	Chinese Taipei	BZNU	012018	Kaohsiung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SHUN HU NO.1	0972630780	(002)870-762925591	(002)870-762925590	
2	SHUN HU NO.2	0972630781	(002)870-762873591	(002)870-762873590	
3	SHUN HU NO.3	0972630782	(002)870-762925596	(002)870-762925595	
4	HO HSING	24215002#217962	(002)870-762925616	(002)870-762925615	
5	WEI HSING	07-5324040	(002)870-762900421	(002)870-762900420	
6	TAI PEI	0972-630779	(002)870-762873596	(002)870-762873595	
7	NAN TO	03-824600	(002)870-763087652	(002)870-763087650	
8	KIN MEN	0932-496538	(002)870-761143486	(002)870-761143489	
9	LIEN CHIANG	24215002#217962	(002)870-761143511	(002)870-761143498	
10	YU SHIUN NO.2	(002) 870-761702876	(002)870-761702878	416951000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ers/ 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 /Steel/Other)
1	SHUN HU NO.1	52.26 (meter)	174.0258 (feet)	Steel
2	SHUN HU NO.2	45.2 (meter)	150.516 (feet)	Steel
3	SHUN HU NO.3	45.2 (meter)	150.516 (feet)	Steel
4	HO HSING	82.3 (meter)	274.059 (feet)	Steel
5	WEI HSING	82.3 (meter)	274.059 (feet)	Steel
6	TAI PEI	56.54(meter)	185.4987 (feet)	Steel
7	NAN TO	61.41(meter)	204.4953 (feet)	Steel
8	KIN MEN	65.10 (meter)	216.783 (feet)	Steel
9	LIEN CHIANG	65.10 (meter)	216.783 (feet)	Steel
10	YU SHIUN NO.2	58.29 (meter)	191.19 (feet)	Steel

Chenise Taipei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Name : SHUN HU NO.1
Length : 174.0258 feet
Side Number : NO.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X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SHUN HU NO.2
Length : 150.516 feet
Side Number : NO.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X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SHUN HU NO.3
Length : 150.516 feet
Side Number : NO.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X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HO HSING CUTTER
Length : 274.059 feet
Side Number : CG 10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X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WEI HSING CUTTER
Length : 274.0257 feet
Side Number : CG 10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Y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TA I PEI CUTTER
Length : 185.4987 feet
Side Number : CG 116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P3086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NAN TO CUTTER
Length : 204.4953 feet
Side Number : CG 12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R3248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KIN MEN CUTTER
Length : 216.783 feet
Side Number : CG 12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R3305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LIEN CHIANG CUTTER
Length : 203.463 feet
Side Number : CG 12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R3304
Communications : UHF,VHF,HF



Name : YU SHIUN NO.2

Length : 58.29 meter feet

Side Number :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DBX

Communications : UHF,VHF,HF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01 / 09 / 08
(DD/MM/YY)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Te Kukupa	Cook Islands	E5WJ	CI0004-89	Rarotonga	Same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Te Kukupa	+ 682 26018	+ 682 26020	NIL	msa@mscci.gov.ck or rar@mmr.gov.ck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el/Other)
1	Te Kukupa	31.5	metres	Steel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 25/03/08

DETAILS OF VESSEL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 hull
1.	PRAIRIAL (frigate)	French	FARP	F 731 (hull number)	Papeete	None (French navy)
2.	LA TAPAGEUSE (patrol boat)	French	FATX	P 691 (hull number)	Papeete	None (French navy)
3.	LA RAILLEUSE (patrol boat)	French	FAJM	P 689 (hull number)	Papeete	None (French navy)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PRAIRIAL	689 46 52 42	689 46 52 43	00 872 322 874 510 00 872 322 874 515 (fax)	fs.prairial@skyfile.com (at sea) fs.prairial@mail.pf
2.	LA TAPAGEUSE	689 46 52 72	689 46 52 71	00 872 762 944 791 00 872 762 944 793 (fax)	tapageuse@skyfile.com (at sea) latapageuse-sg@mail.pf
3.	LA RAILLEUSE	689 46 52 87	689 46 52 86	00 872 762 944 795 00 872 762 944 797 (fax)	railleuse@skyfile.com (at sea) P400-rail@mail.pf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1.	PRAIRIAL	93,5 (registered length)	Metres	STEEL
2.	LA TAPAGEUSE	55,20 / 54,60 / 50,00	Metres	STEEL
3.	LA RAILLEUSE	55,20 / 54,60 / 50,00	Metres	STEEL

FREGATE DE SURVEILLANCE PRAIRIAL



Deuxième d'une série de six frégates de surveillance, commandées en 1989, le *Prairial* a été construit par les Chantiers de l'Atlantique à Saint-Nazaire, selon des normes de construction utilisées pour les navires de commerce. Cette frégate est mise sur cale le 11 septembre 1990, et lancée le 16 mars 1991. Ses armes et équipements militaires ont été installés par DCN Lorient. Le bâtiment est entré en service le 20 mai 1992 et est arrivé à Papeete en juin 1992.

Longueur hors tout :	93,50 mètres
Longueur à la flottaison :	88 mètres
Largeur maximale :	14 mètres
Tirant d'eau au DME :	4,40 mètres
Déplacement pleine charge :	2950 tonnes
Vitesse maximale :	20 nœuds
Moyens de communications	HF, UHF, VHF, INMARSAT
Armement	100 mm, MM 38, 20 mm
Hélicoptère	Alouette III
Indicatif international	FARP
N° inmarsat	4 228 745 10 inmarsat C 00 870 322 874 510 inmarsat vox

PATROUILLEUR P400 LA RAILLEUSE



Mis sur cale le 27 décembre 1984, lancé le 2 septembre 1986, le patrouilleur *La Railleuse* a été admis au service actif le 16 mai 1987. Arrivée à Tahiti en octobre 1988, *La Railleuse* est basée à Papeete.

Dimensions

Longueur hors tout :	55 m
Largeur maximale :	8
Tirant d'eau :	2.54 m
Déplacement pleine charge :	373 tonnes
Vitesse maximale :	24 nœuds
Moyens de communications	UHF, VHF, HF, INMARSAT mini M
Armement	40 mm, 20 mm
Indicatif international	FAJM
N° inmarsat	4 228 762 10 inmarsat C 00 872 762 944 795 inmarsat vox

PATROUILLEUR P400 LA TAPAGEUSE



Mis sur cale le 13 août 1985, lancé le 16 février 1987, le patrouilleur *La Tapageuse* a été admis au service actif le 11 février 1988. Arrivée à Tahiti en octobre 1988, *La Tapageuse* est basée à Papeete.

Dimensions

Longueur hors tout :	55 m
Largeur maximale :	8 m
Tirant d'eau :	2.54 m
Déplacement pleine charge :	373 tonnes
Vitesse maximale :	24 nœuds
Moyens de communications	UHF, VHF, HF, INMARSAT mini M
Armement	40 mm, 20 mm
Indicatif international	FATX
N° inmarsat	4 228 764 10 inmarsat C 00 872 764 504 681 inmarsat vox

Ministère
de l'E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Papeete, le 20 avril 2009

Direction générale
Des infrastructures, des
transports
et de la mer
Service des Affaires maritimes
de Polynésie française
Affaire suivie par :
D.PERSON
N°378 04 /SAM

Le Haut 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de Polynésie française

à

Mr the director of WCPFC

Subject: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Référence(s): my letter 11TH September 2007
Enclosures: one description of a French Navy ship

On 11th September 2007, I sent you a letter for the registration of three French Navy ships in the WCPFC database and the website of the 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

In addition to this transmission, I inform you that another French Navy high-sea tug, "Révi", could operate in international waters for high sea controls for fisheries activities. Description and informations about the tug are enclosed in this letter.

The captain and the substitute (chief officer) of the vessel will be allowed to control fisheries activities, fishing vessels and to establish infringements to fisheries regulations.

Moreover, paragraph 6 of resolution WCPFC –TCC3 2007/11 indicates that the commission will "maintain a register of all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and authorities or inspectors"

For French Polynesia, "the service de la pêche –French Polynesia Fisheries Service" is registrated in the WCPFC website.

But according to Organic Law of 2004, French Polynesia has the responsability for regulations of fisheries activities inside EEZ of French Polynesia and France is competent for boarding and inspections of fisheries activies ashore, inside EEZ and in high sea.

So, the "service de la pêche" is competent if a French Polynesian fishing vessel should be in infrigment in another EEZ or in international waters but, in case of an infrigment of a foreign fishing vessel inside French Polynesian EEZ or in high sea around French Polynesia, the authority will be the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French Government in French Polynesia.

So, I should appreciate if these two authorities could be included in the WCPFC website to comply with resolution WCPFC –TCC3 2007/11.

The operational representative of High Commissioner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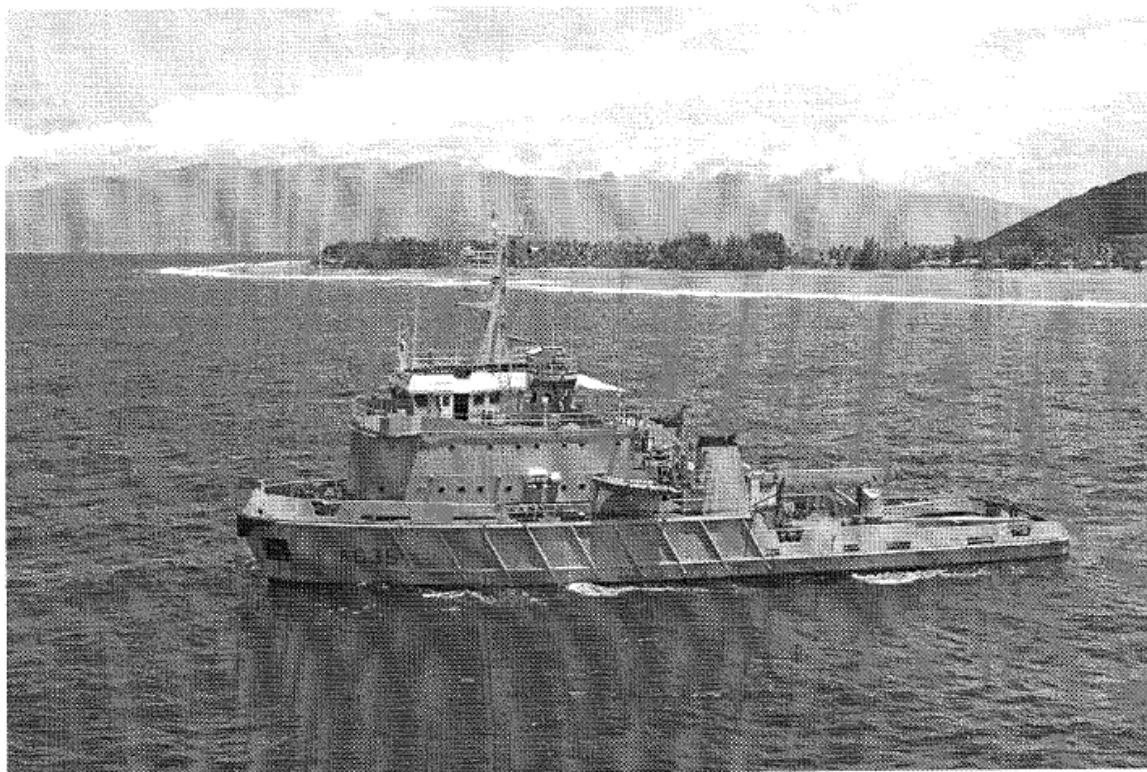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PAPEETE
FRENCH POLYNESIA
Inmarsat C : 582 422 799 192
Phone: +689 465316
Fax: +689 423915
E-mail: mrccpapeete@mail.pf

Best Regards

Le Haut 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Polynésie française
Adolphe COLRAT

Copie(s) : - COMAR Papeete
- COMSUP Papeete
- SG-Mer
- DPMA
- Dossier
- Chrono

REMORQUEUR-RAVITAILLEUR REVI



Mis sur cale le 07 juin 1983, lancé le 15 mai 1984, le remorqueur-ravitailleur type « RR 4000 » *Revi* a été admis au service actif le 09 mars 1985. Affecté dans le Pacifique dès cette admission, le *Revi* est basé à Papeete.

Dimensions

Longueur hors tout :	51 m
Largeur maximale :	12.60 m
Tirant d'eau :	3.80 m
Déplacement pleine charge :	1,035 t
Vitesse maximale :	14.5 nœuds
Moyens de communications	UHF, VHF, HF, INMARSAT mini M
Armement	2 ANF1
Indicatif international	FARV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01/05/08
(DD/MM/YY)

Details of Vessels –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Palikir	FSM	V6FP	VR0011G	Pohnpei	All same
2	Micronesia	FSM	V6FM	VR0013G	Pohnpei	All same
3	Independence	FSM	V6FI	VR0003G	Pohnpei	All same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Palikir	(691) 320-2384/5983	(691) 320-5103	(872) 762572569	451000@c.xantic.net
2	Micronesia	(691) 320-2384/5983	(691) 320-5103	(872) 762572572	451000210@c.xantic.net
3	Independence	(691) 320-2384/5983	(691) 320-5103	(872) 762572575	451000310@c.xantic.net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el/Other)
1	Palikir	31.5	Metres	Steel
2	Micronesia	31.5	Metres	Steel
3	Independence	31.5	Metres	Steel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for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p>Pacific Patrol Boat Class Name: FSS PALIKIR Length:31.5 meters Side No.0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V6FP Communications: VHF HF</p>	 A photograph of the Pacific Patrol Boat FSS PALIKIR (01) in coastal waters. The boat is light grey with the number '01' on its bow. It is positioned in front of a lush green hillside under a cloudy sky. A red timestamp '21 3:52PM'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image.
<p>Pacific Patrol Boat Class Name: FSS MICRONESIA Length:31.5 meters Side No.0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V6FM Communications: VHF HF</p>	 A photograph of the Pacific Patrol Boat FSS MICRONESIA (02) on the open sea. The boat is light grey with the number '02' on its bow. The sea is calm with a light blue sky. A red timestamp '16 6:51PM'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image.
<p>Pacific Patrol Boat Class Name: FSS INDEPENDENCE Length:31.5 meters Side No.0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V6FI Communications: VHF HF</p>	 A photograph of the Pacific Patrol Boat FSS INDEPENDENCE (03) on the open sea. The boat is light grey with the number '03' on its bow. The sea is a deep blue, and the sky is clear with a few clouds. A red timestamp '16 6:51PM'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image.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 ##/04/09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i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Toko Maru	Japan	JHEL	135231	Tokyo	None
2	Hakuryu Maru	Japan	JNSE	130199	Tokyo	None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o.	Email Address
1	Toko Maru	None	010-870-343185640 (Inmarsat B)	010-870-343185613 (Inmarsat B)	None
2	Hakuryu Maru	None	010-870-764063479 (Inmarsat F)	010-870-764063478 (Inmarsat F)	None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	Length Specified as Meters/Feets	Hull Material
1	Toko Maru	86.9	Meters	Steel
2	Hakuryu Maru	78.1	Meters	Steel

Japanese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Toko Maru



Hakuryu Maru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 04/08/2008

DETAILS OF VESSELS(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No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TAMGU 1	Republic of Korea	DSEU9	9809001-6260000	Busan	Busan

Vessel Contact Details

No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B)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TAMGU 1	None	00872 344049031	00872 764681367	None

Vessel Description

No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el/Other)
1.	TAMGU 1	90.25	Metres	Steel





HAUT-COMMISSARIAT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LE HAUT-COMMISSAIRE

Nouméa, le 27 JAN. 2011

Réf. : 037 / 20 M.

LE HAUT-COMMISSAIRE DE LA REPUBLIQUE
EN NOUVELLE-CALEDONIE

A

Mr Glenn Hurry
WCPFC Executive Director

SUBJECT : Registration of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Enclosure : 4 descriptions of Navy ships and 13 enabling decisions

REF : CMM 2006-2008

In the South Pacific, France is represented by two Government delegates for the “State’s action at sea” who are the High Commissioner in French Polynesia, already registered by the WCPFC, and the High Commissioner in New Caledonia for the western part of Pacific (see annex 2). According to articles 12,13 and 14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2006-08 adopted at Apia on 15th December 2006, you will find attached, for registration of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and authorities, a list of four Navy ships based in Nouméa, available for control on high seas

These four vessels are the frigate “Vendemiaire”, the two patrol boats “La Moqueuse” and “ La Glorieuse”, and one landing ship “Jacques Cartier”. In compliance with French law dated 6th May 2010, commanding officers, executive officers and other accredited officers are allowed to control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ing vessels and to establish infringements of fisheries regulations. These ships are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French Navy ships. Their commanding officers and officers “have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procedures as may be adopted the commission”. A special training will be organized each year with the New Caledonian fisheries service to improve knowledge about the measures adopted by the WCPFC.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fisheries procedures is the High Commissioner in New Caledonia,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He is assisted for operational matters by the commander of the New Caledonia maritime area and, for legal issues, by the head of “Maritime Affairs” department in New Caledonia, who is also the New Caledonia representative at the WCPFC. He is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I expect that all these informations will allow these four Navy ships to be registered as authorized vessels on the high seas by the WCPFC commission.

Yours sincerely,

Albert DUPUY

Annex 1

DETAILS OF AUTHORITY OF INSPECTION VESSELS AND INSPECTORS AUTHORITIES

1. FOREIGN FISHING VESSELS INSIDE FRENCH NEW CALEDONIAN EEZ OR ON HIGH SEAS AROUND NEW CALEDONIA

Name of authority: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CONTACT DETAIL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NOUMEA

NEW CALEDONIA

Inmarsat C: (582) 422 799 194

Phone number: +687 29 23 32

Fax number: +687 29 23 03

E-mail: mrcc.nc@lagoon.nc

2. FRENCH NEW CALEDONIAN VESSELS IN OTHER EEZ OR HIGH SEAS

Name of authority: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CONTACT DETAIL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NOUMEA

NEW CALEDONIA

Inmarsat C: (582) 422 799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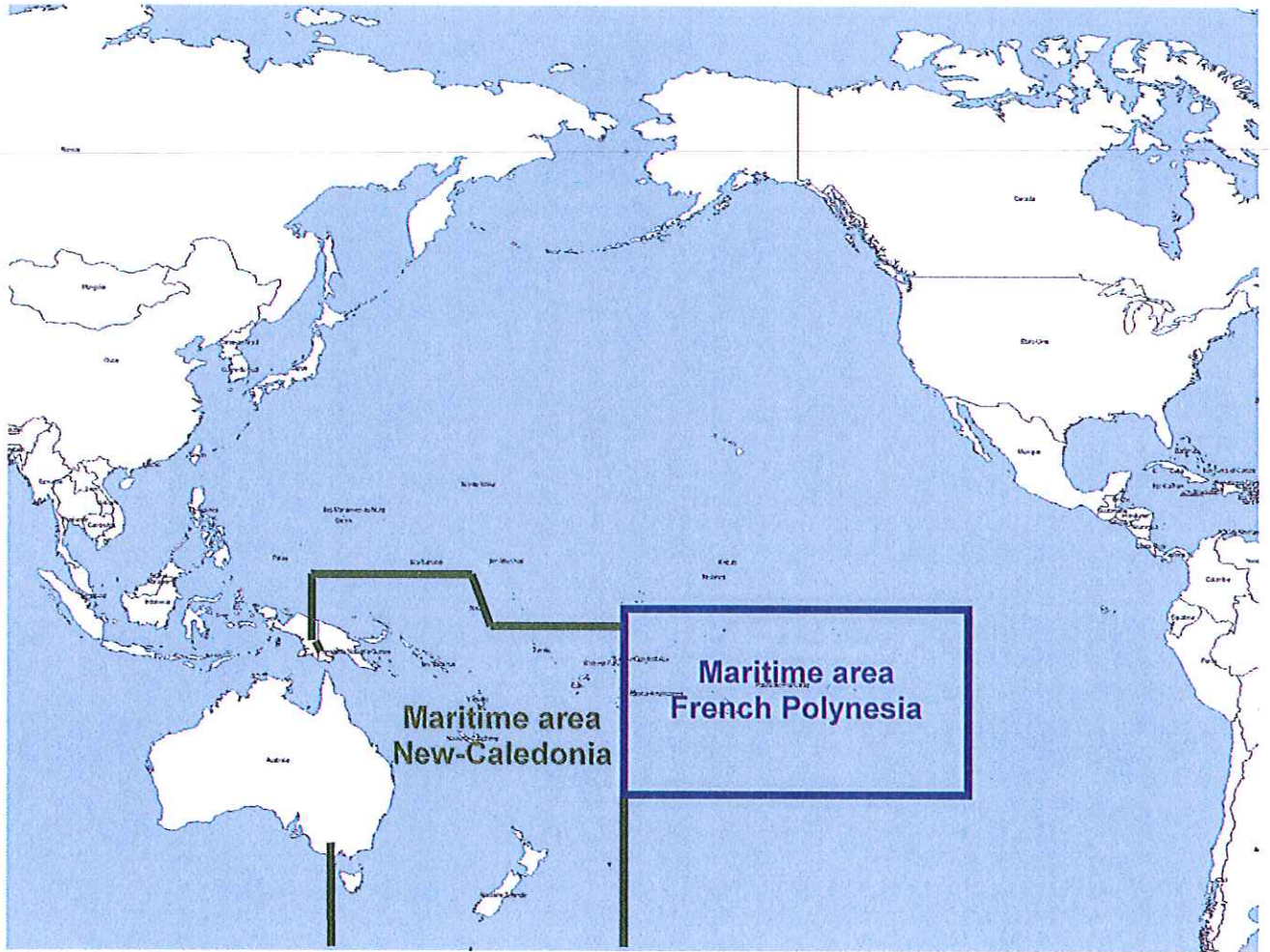
Phone number: +687 29 23 32

Fax number: +687 29 23 03

E-mail: mrcc.nc@lagoon.nc

Annexe 2

Martime areas map



LISTE DE DIFFUSION

Pour information (courrier sans pièces jointes)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mer
Etat-major de la marine (bureau AEM)
Service des affaires maritimes de Nouvelle-Calédonie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DETAILS OF VESSEL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 hull
1.	VENDEMIARE (fregate)	French	FAVM	F 734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2.	LA MOQUEUSE (patrol boat)	French	FAIK	P 688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3.	LA GLORIEUSE (patrol boat)	French	FBGU	P 686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4.	JACQUES CARTIER (landing ship)	French	FACJ	L 9033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VENDEMIARE	687 29 41 96	/	00 870 765 049 543 00 870 762 698 914 (FAX)	officiel.vendemiaire@skyfile.com (at sea) vendemiaire.noumea@canl.nc
2.	LA MOQUEUSE	687 29 40 46	/	00 870 763 04 08 33 00 870 763 04 08 34 (FAX)	lamoqueuse@skyfile.com (at sea) lamoqueuse@lagoon.nc
3.	LA GLORIEUSE	687 29 40 35	/	00 870 763 04 08 41 00 870 763 04 08 42 (FAX)	laglorieuse@skyfile.com (at sea) laglorieuse@lagoon.nc
4.	JACQUES CARTIER	687 29 40 91	/	00 870 762 94 48 14	j-cartier@skyfile.com (at sea) jacques.cartier@lagoon.nc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ers/feet	Hull material
1.	VENDEMIARE	93.5 (registered length)	Meters	Steel
2.	LA MOQUEUSE	55.20 / 54.60 / 50.00	Meters	Steel
3.	LA GLORIEUSE	55.20 / 54.60 / 50.00	Meters	Steel
4.	JACQUES CARTIER	80 / 68	Meters	Steel

FS Vendémiaire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93,50 meters
- Corresponding draft :4,40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2950 t
- **Detection**
- 1 surveillance radar DRBV 21
- **Navigation**
- 1 navigation radar « Racal decca »
- 1 gonio radio VHF Taiyo
- **Crew + passengers** 123

• Propulsion

- 4 diesel SEMT Pielstick engines
- 2 shaftlines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 Speed

- Maximum speed :20 knots

• Cruising range at 15 knots : 10 000 NM

• Ship's boat

- 1 ETN 90 – 1 Zodiac Hurricane 530 OB - 1 zodiac 10 places

• Helicopter

- 1 Alouette III

JACQUES CARTIER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80.0 meters
- Corresponding draft :3.0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1330 t
- **Navigation**
- 1 radar DRBN-38 Decca Bridgemaster
- **Crew + passengers** 40 + 140 pax
- **Propulsion**
- 2 diesel SACM Wärtsilä UD 33 V12 M
- 2 shaftlines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 **Speed**
- Maximum speed :14.5 knots
- **Cruising range at 12.5 knots** : 3 100 NM
- **Ship's boat**
- 2 Zodiacs 8 places
- 2 LCVP

P400

LA GLORIEUSE P686



LA MOQUEUSE P688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54.8 meters
- Corresponding draft :2.54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477 t
- **Navigation**
- 1 radar DRBN-38 Decca Bridgemaster
- **Navigation**
- 1 radiogoniometer VHF Taiyo TDL 1100
- **Crew + passengers** 29+12

- **Propulsion**
- 2 diesels SEMT Pielstick PA 4 V200 VGDS (2 x 3700 cv)
- 2 shaftlines
- **Speed**
- Maximum speed :24 knots
- **Cruising range at 14 knots** : 4 500 NM
- **Ship's boat**
- 2 Zodiacs 10 places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Attachment 2

Submission Date: 26/04/2011
(DD/MM/YY)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HMNZS Te Kaha	New Zealand	ZMBE	F77	Nil POR	Nil POR
2.	HMNZS Te Mana	New Zealand	ZMSI	F111	Nil POR	Nil POR
3.	HMNZS Canterbury	New Zealand	ZMCR	L421	Nil POR	Nil POR
4.	HMNZS Endeavour	New Zealand	ZMRZ	A11	Nil POR	Nil POR
5.	HMNZS Resolution	New Zealand	ZMRS	A14	Nil POR	Nil POR
6.	HMNZS Manawanui	New Zealand	ZMLR	A09	Nil POR	Nil POR
7.	HMNZS Wellington	New Zealand	ZMFS	P55	Nil POR	Nil POR
8.	HMNZS Otago	New Zealand	ZMKF	P148	Nil POR	Nil POR
9.	HMNZS Pukaki	New Zealand	ZMZL	P3568	Nil POR	Nil POR
10.	HMNZS Rotoiti	New Zealand	ZMZM	P3569	Nil POR	Nil POR
11.	HMNZS Taupo	New Zealand	ZMZN	P3570	Nil POR	Nil POR
12.	HMNZS Hawea	New Zealand	ZMZO	P3571	Nil POR	Nil POR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Contact cell (sea & alongside)	Iridium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HMNZS Te Kaha	+64 9 446 6801	+64 21 722 543	88 1631 448575	tekaha@navy.mil.nz
2.	HMNZS Te Mana	+64 9 446 6805	+64 21 722 501	88 1621 462632	temana@navy.mil.nz
3.	HMNZS Canterbury	+64 9 446 6821	+64 21 972 769	88 1621 434523	canterbury@nzvy.mil.nz
4.	HMNZS Endeavour	+64 9 446 6809	+64 21 628 097	87 2551 293010	endeavour@navy.mil.nz
5.	HMNZS Resolution	+64 9 446 6817	Not Available	88 1621 434111	resolution@navy.mil.nz
6.	HMNZS Manawanui	+64 9 446 6815	Not Available	88 1621434454	manawanui@navy.mil.nz
7.	HMNZS Wellington	+64 9 446 6813	+64 21 2469749	88 1621 465649	wellington@navy.mil.nz
8.	HMNZS Otago	+64 9 446 6811	+64 21 2458579	88 1621 465993	otago@navy.mil.nz
9.	HMNZS Pukaki	+64 9 446 6823	+64 21 02062115	88 1621 465923	pukaki@navy.mil.nz

10.	HMNZS Rotoiti	+64 9 446 6803	+64 21 294 9847	88 1621 465913	rotoiti@navy.mil.nz
11.	HMNZS Taupo	+64 9 446 6816	+64 21 243 8099	88 1621 434574	taupo@navy.mil.nz
12.	HMNZS Hawea	+64 9 446 6807	+64 21 2439060	88 1621 46521	hawea@navy.mil.nz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 Wood/Steel/Other)
1.	HMNZS Te Kaha	118	Metres	Steel
2.	HMNZS Te Mana	118	Metres	Steel
3.	HMNZS Canterbury	131	Metres	Steel
4.	HMNZS Endeavour	138	Metres	Steel
5.	HMNZS Resolution	68	Metres	Steel
6.	HMNZS Manawanui	43	Metres	Steel
7.	HMNZS Wellington	85	Metres	Steel
8.	HMNZS Otago	85	Metres	Steel
9.	HMNZS Pukaki	55	Metres	Steel
10.	HMNZS Rotoiti	55	Metres	Steel
11.	HMNZS Taupo	55	Metres	Steel
12.	HMNZS Hawea	55	Metres	Steel

New Zealand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NZAC Class Frigate

Name: **HMNZS Te Kaha**

Length: 118 metres

Side number: F77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BE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NZS Te Mana**

Length: 118 metres

Side number: F11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SI

Communications: VHF and HF



LHM (Multirole vessel)

Name: **HMNZS Canterbury**

Length: 130 metres

Side number: L42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CR

Communications: VHF and HF



Replenishment Tanker

Name: **HMNZS Endeavour**

Length: 138 metres

Side number: A1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RZ

Communications: VHF and HF



Survey Ship

Name: **HMNZS Resolution**

Length: 68 metres

Side number: A14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RS

Communications: VHF and HF



Dive Tender

Name: **HMNZS Manawanui**

Length: 43 metres

Side number: A0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LR

Communications: VHF and HF



Offshore Patrol Vessel (OPV)

Name: **HMNZS Otago**

Length: 85 metres

Side number: P148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KF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NZS Wellington**

Length: 85 metres

Side number: P5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FS

Communications: VHF and HF



Inshore Patrol Vessel (IPV)

Name: **HMNZS Pukaki**

Length: 55 metres

Side number: P3568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ZL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NZS Rotoiti**

Length: 55 metres

Side number: P356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ZM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NZS Taupo**

Length: 55 metres

Side number: P3570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ZN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NZS Hawea**

Length: 55 metres

Side number: P357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ZMZO

Communications: VHF and HF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6/6/08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1.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en Port Of Registry)
1.	HMPNGS Rabaul	PNG	P2DL	01	Nil POR	Nil POR
2.	HMPNGS Dreger	PNG	P2DM	02	Nil POR	Nil POR
3.	HMPNGS Seeadler	PNG	P2DN	03	Nil POR	Nil POR
4.	HMPNGS Moresby	PNG	P2DO	04	Nil POR	Nil POR

2.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HMPNGS Rabaul	675 3213463	675 3214421	Not Available	naturveillance@online.net.pg
2.	HMPNGS Dreger	675 3213463	675 3214421	Not Available	naturveillance@online.net.pg
3.	HMPNGS Seeadler	675 3213463	675 3214421	Not Available	naturveillance@online.net.pg
4.	HMPNGS Moresby	675 3213463	675 3214421	Not Available	naturveillance@online.net.pg

3.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ll/Other)
1.	HMPNGS Rabaul	31.5	Metres	Steel
2.	HMPNGS Dreger	31.5	Metres	Steel
3.	HMPNGS Seeadler	31.5	Metres	Steel
4.	HMPNGS Moresby	31.5	Metres	Steel

Papua New Guinea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Pacific Class Patrol Boat

Name: **HMPNGS Rabaul**

Length: 31.5 Metres

Side Number: 0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P2DL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PNGS Dreger**

Length: 31.5 Metres

Side Number: 0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P2DM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PNGS Seeadler**

Length: 31.5 Metres

Side Number: 0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P2DN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HMPNGS Moresby**

Length: 31.5 Metres

Side Number: 04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P2DO

Communications: VHF and HF





行政院農業委員會漁業署

FISHERIES AGENCY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No.1 Fishing Harbour North 1st Road, Kaohsiung, Taiwan

TEL: 886-2-33436084 FAX: 886-2-33436128 <http://www.fa.gov.tw>

March 23,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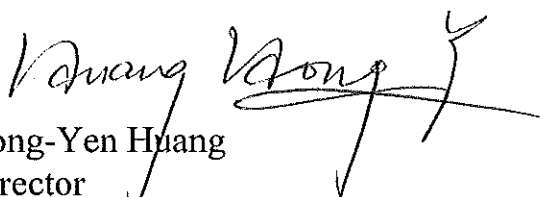
Mr. Glenn Hurry
Executive Director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 Box 2356, Kolonia, Pohnpei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ar Mr. Hur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and relevant paragraphs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CMM-2006-08), we would like to add a new B&I vessel, HSUN HU NO.7 (Call Sigh: BL2098), whose relevant information and photo are attached.

Please update it on the WCPFC website and advise us of the flag's number of the B&I vessel we propose to add.

Sincerely yours,


Hong-Yen Huang
Director
Deep Sea Fisheries Division

Chinese Taipei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Name: HSUN HU
NO.7

Length: 84.5 meter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 BL2098

Communications :
SSB,DSB,VHF,
INMRT-FBB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DETAILS OF VESSELS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Submission Date : (23/03/2011)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1	HSUN HU NO.7	Chinese Taipei	BL2098		Kaohsiung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1	HSUN HU NO.7	(002)870-773156706	(002)870-783159948	416951000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res/feet	Hull Material (Aluminium/Fibreglass/Wood/Steel/Other)
11	HSUN HU NO.7	84.5 (meter)	277.23 (feet)	Steel (under maindeck) Aluminium (upper deck)



TUVALU GOVERNMENT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Communication, Fisheries and Transport

Private Mailbag, Teone, Funafuti, Tuvalu
Phone: (688) 20836 Fax: (688) 20151 Email: fisheries@gov.tv

20 October 2010

Glenn Hurry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 Box 2356
Kolonia, Pohnpei Stat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ar Mr. Glenn Hurry,

Subject: Notification of Tuvalu's Authorized Patrol Vessel Information, Vessel Authority, Authorities for Inspectors, and the MCS Entity and Personnel For the Receipt of Non 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and VMS Client Activation

Authorized Patrol Vesse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 of the WCPFC Convention and paragraph 13(a) of CMM 2006-08, Tuvalu wishes to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of its patrol vessel assigned for Patrols 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the high seas.

a. Details of the Vessel include:

Name: HMTSS Te Mataili
Description: Length: 31.5M Breadth: 8M Draught: 2.3M Colour: Grey
Hull Number: 801 IRCS: T2SB Registration Number: 572211301
Port of Registry: Funafuti, TUVALU Communication capability: Pri 8247 KHz
Sec 4576 KHz, Tertiary 12772 KHz

- b. The Tuvalu wishes to certify that the vessel is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 c. The Tuvalu also wishes to certify that the crew of the Patrol vessel has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s have been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ara 26 and Annex III, Para 6 as well as CMM 2006-08.
- d. The Authority for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the patrol vessel is:

Name of Agency: Maritime Wing Police Service
Address: NCC Building, Vaiaku, Funafuti, Tuvalu
Contact Person: Maritime Commander Mr. Talafou Esekia
E-mail Address: talaloi@yahoo.com.au
Telephone: +688 20187 Fax: +688 20148

Key contact for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Communications, Fisheries, and Transport
Surveillance Officer Mr. Laitailiu Seono
Private Mailbag, Teone, Funafuti, Tuvalu,
Phone +688 20143, Fax +688 20151, Email: laitailiu_seono@yahoo.com

Authorities for Insp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 of the WCPFC Convention and paragraph 13(b) of CMM 2006-08, Tuvalu wishes to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of Inspectors assigned for the conduct of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in the Convention Area.

- a. Tuvalu wishes to inform the WCPFC Secretariat that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boarding in inspection is: Tuvalu Police Service, National Coordination Centre, Vaiaku, Funafuti, Tuvalu
Ph: +688 20148, Fax: +688 20147, Commanding Officer Mr. Seleganiu Fusi;
Email: selefusi2@yahoo.com.au
- b. An example of the identification card that the Inspectors from Tuvalu are carrying to certify that they are appropriately designated inspections for the WCPFC High Seas Inspection and Boarding operations is attached to this letter.
- c. Tuvalu wishes to note that the Authorities highlighted in paragraph (a) are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to be inspected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force.
- d. Tuvalu wishes to notify that the inspectors of the above stated Authority have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s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ara 26 and Annex III, Para 6 as well as CMM 2006-08.

MCS Entity and Personnel For the Receipt of Non 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and VMS Client Acti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 of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Data Compiled by the Commission of 2007** and paragraph 11 of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High Seas Non-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Compiled by the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Control or Surveillance (MCS) Activities and the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High Seas VMS Data for Scientific Purposes of 2009**, Tuvalu wishes to notify the Secretariat that Tuvalu, Ministry of Home Affairs will be the MCS Entity authorised to receive high seas non-public domain data and VMS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Further, the Tuvalu Police Service will be the Authorized MCS Personnel for the purposes of the Rules and Procedures.

The contact details fo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Maritime Commander Mr. Talafou Esekia, E-mail Address: talaloi@yahoo.com.au

Telephone: +688 20156 Fax: +688 20148 and;

Maritime Surveillance Advisor LCDR Brendan Mcharg Email: tuvalumsa@yahoo.com.au

Telephone: +688 20148 Fax: +688 20148

As these individuals will be provided special coded access to the WCPFC Secure side of the web, as well as being the individual who will have authority to request and receive VMS dat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with special attention to data security requirements.

Tuvalu notes that it shall provide appropriate data security measures equivalent or more stringent to those required by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security of this data.

Yours sincerely,



Samasoni Finikaso
Director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Submission Date - 08/04/08

Details of Vessels -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o.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in Vessel's Hull (if different than port of Registry)
1	Alex Haley	US	NZPO	39	Kodiak, AK	None
2	Assateague	US	NDRV	1337	Guam	None
3	Boutwell	US	NYCQ	719	Alameda, CA	None
4	Chase	US	NLPM	718	San Diego, CA	None Decommissioned
5	Galveston Island	US	NRLP	1349	Honolulu, HI	None
6	Hamilton	US	NMAG	715	San Diego, CA	None Decommissioned
7	Jarvis	US	NAQD	725	Honolulu, HI	None
8	Kiska	US	NUSF	1336	Hilo, HI	None
9	Kukui	US	NVJK	203	Honolulu, HI	None
10	Mellon	US	NMEL	717	Seattle, WA	None
11	Midgett	US	NHWR	726	Seattle, WA	None
12	Morgenthau	US	NDAW	722	Alameda, CA	None
13	Munro	US	NGDF	724	Kodiak, AK	None
14	Rush	US	NLVS	723	Honolulu, HI	None
15	Sequoia	US	NBHF	213	Guam	None
16	Sherman	US	NMMJ	720	Alameda, CA	None
17	Walnut	US	NZNE	205	Honolulu, HI	None
18	Washington	US	NVMJ	1331	Guam	None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Alex Haley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2	Assateague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3	Boutwell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4	Chase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5	Galveston Island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6	Hamilton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7	Jarvis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8	Kiska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9	Kukui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0	Mellon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1	Midgett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2	Morgenthau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3	Munro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4	Rush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5	Sequoia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6	Sherman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7	Walnut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18	Washington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Ship email, telephone and fax numbers are considered sensitive information not for public release; contact the 24/7 watch for vessel contact information: Phone 808-535-3333, Fax 808-535-3338.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Specified as Meters/Feet	Hull Material
1	Alex Haley	282	Feet	Steel
2	Assateague	110	Feet	Steel
3	Boutwell	378	Feet	Steel
4	Chase	378	Feet	Steel
5	Galveston Island	110	Feet	Steel
6	Hamilton	378	Feet	Steel
7	Jarvis	378	Feet	Steel
8	Kiska	110	Feet	Steel
9	Kukui	225	Feet	Steel
10	Mellon	378	Feet	Steel
11	Midgett	378	Feet	Steel
12	Morgenthau	378	Feet	Steel
13	Munro	378	Feet	Steel
14	Rush	378	Feet	Steel
15	Sequoia	225	Feet	Steel
16	Sherman	378	Feet	Steel
17	Walnut	225	Feet	Steel
18	Washington	110	Feet	Steel

United States Inspection Vessels for WCPFC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Submission Date - 08/04/08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BOUTWELL**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1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YCQ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CHASE**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18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LPM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HAMILTON**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1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MAG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JARVIS**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AQD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MELLON**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17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MEL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MIDGETT**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6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HWR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MORGENTHAU**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2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DAW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MUNRO**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4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GDF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RUSH**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LVS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Hamilton Class Cutter

Name: **USCGC SHERMAN**

Length: 378 feet

Side number: 720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MMJ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Juniper Class Cutter

Name: **USCGC WALNUT**

Length: 225 feet

Side number: 205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ZNE

Communications: VHF and HF



Juniper Class Cutter

Name: **USCGC KUKUI**

Length: 225 feet

Side number: 20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VJK

Communications: VHF and HF



Juniper Class Cutter

Name: **USCGC SEQUOIA**

Length: 225 feet

Side number: 213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BHF

Communications: VHF and HF



Name: **USCGC ALEX HALEY**

Length: 282 feet

Side number: 3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ZPO

Communications: VHF and HF



Island Class Cutter

Name: **USCGC KISKA**

Length: 110 feet

Side number: 1336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USF

Communications: VHF and HF



Island Class Cutter

Name: **USCGC GALVESTON ISLAND**

Length: 110 feet

Side number: 1349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RLP

Communications: VHF and HF



Island Class Cutter

Name: **USCGC ASSATEAGUE**

Length: 110 feet

Side number: 1337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DRV

Communications: VHF and HF



Island Class Cutter

Name: **USCGC WASHINGTON**

Length: 110 feet

Side number: 133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VMJ

Communications: VHF and H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nited States
Coast Guard



Fourteenth Coast Guard District
United States Coast Guard

300 Ala Moana Blvd., Rm 9-232
Honolulu, HI 96850-4982
Staff Symbol: dre
Phone: 808 535-3361
Fax: 808 535-3369
Email:

16210
April 12, 2011

Mr. Glenn Hurry
Executive Director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 Box 2356, Kolonia, Pohnpei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ar Mr. Hur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and relevant paragraph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2006-08, please see included details of two additional U.S. vessels that may be assigned to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under the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enclosure (1). Please note that cutters BERTHOLF and WAESCHE are both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in U.S. government service. The crew aboard each vessel is properly trained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procedures as adopted by the Commission. Request these vessels be added to the list of inspection vessels.

Additionally, cutters HAMILTON (inspection vessel #15) and CHASE (inspection vessel #13) have been decommissioned and are no longer in the servic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lease remove these vessels from the list of inspection vessel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ay Caputo".

J. CAPUTO
Lieutenant Commander, U.S. Coast Guard
Chief, Enforcement Branch, Acting
By direction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Update 1)

Submission Date – 12APR11

Details of Vessels –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Name	Flag	Call Sign	Registration #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in Vessel Hull	Phone #	Fax #	Inmarsat #	Email Address	Length	Meters /Feet	Hull Material
1	Bertholf	US	NBCQ	750	Alameda, CA	None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418	Feet	Steel
2	Waesche	US	NBGN	751	Alameda, CA	None	808-535-3333	808-535-3338	FOUO	jrcchonolulu@uscg.mil	418	Feet	Steel

Legend Class Cutter
Name: USCGC BERTHOLF
 Length: 418 feet
 Side Number: 750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BCQ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Legend Class Cutter
Name: USCGC WAESCHE
 Length: 418 feet
 Side Number: 751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NBGN
 Communications: VHF, UHF, and HF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 AUSTRALIA

Name of Authority: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614 1920 5329

Fax Number: +612 6275 6275

Email address: foreignsurveillanceresponse@afma.gov.au

Website: www.afma.gov.au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Robert Martinolich
Fisheries and Oceans Canada,
Conservation and Protection,
Pacific Region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604-666-0589

Fax Number: 604-666-4313

E-mail Address: martinolichr@pac.dfo-mpo.gc.ca

Website: http://www.pac.dfo-mpo.gc.ca/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Cook Islands Minister of Marine Resources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C/- + 682 28721

Fax Number: C/- + 682 29721

Email Address: rar@mmr.gov.ck

EXCERPTS FROM LETTER ON Circular 2010/05, some of which was confidential and removed.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AFFAIRS AND MARKETS

INTERNATIONAL AFFAIRS, LAW OF THE SEA AND 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S

Brussels, 18 MAI 2010
MARE/B-1/PN/mp ARES (2010) 264050

SungKwon Soh
Interim Executive Director WCPFC
Kaselehlie Street
P.O.Box 2356
Kolonias - Pohnpei 96941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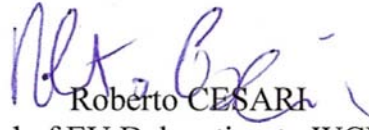
Subject: WCPFC Circular 2010/05 of 16 April 2010

Dear Mr Soh,

We refer to the WCPFC Circular 2010/05 of April 2010. Please find below our replies on the different points of that Circular:

Authorised MSC Personnel: Mr. Roberto Cesari, European Commission, DG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Unit B.1 International Affairs, Law of the Sea and Regional Fisheries Organisations, Rue Joseph II 99, Brussels 1000, Belgium

Yours sincerely,



Roberto CESARI
Head of EU Delegation to WCPFC

ANNEX I

DETAILS OF AUTHORITY OF INSPECTION VESSELS AND INSPECTORS AUTHORITIES

1. FRENCH POLYNESIAN VESSEL IN OTHER EEZ OF HIGH SEAS

Name of authority: Service de la Pêche – French Polynesian Fisheries Service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 689 50 25 50

Fax number: + 689 43 49 79

E-mail address: stephen.yen-kai-sun@peche.gov.pf

Website: www.peche.gov.pf

2. FOREIGN FISHING VESSELS INSIDE FRENCH POLYNESIAN EEZ OR ON HIGH SEAS AROUND FRENCH POLYNESIA

Name of authority: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French Government in French Polynesia

CONTACT DETAIL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PAPEETE

FRENCH POLYNESIA

Inmarsat C: 582 422 799 192

Phone number: +689 465316

Fax number: +689 423915

E-mail: mrccpapeete@mail.pf

3. FOREIGN FISHING VESSELS ON HIGH SEAS BEYOND THE MARITIME ZONE OF FRENCH POLYNESIA

Name of authority: Admiral commanding the maritime zone of the Pacific Ocean (ALPACI)

CONTACT DETAILS:

(Office of State's action at sea) BUREAU AEM PAPEETE

FRENCH POLYNESIA

Phone number: +689 74 04 77

Fax number: +689 465056

E-mail: bureau-aem.chef@armees-polynesie.pf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FSM NATIONAL POLICE (MARITIME WING)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691) 320-2384/5983

FAX NUMBER: (691) 320-5103

E- MAIL ADDRESS: nphq@mail.fm

WEBSITE: None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Fisheries Agency of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81-3-3502-8459

Fax Number: +81-3-3502-0571

E-mail: japan_wcpfc@nm.maff.go.jp

Website: <http://www.maff.go.jp/e/index.html>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istant Water Fisheries Division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Y CONTACT DETAILS

Mr. Young Ho Park
Deputy Director
Distant Water Fisheries Divis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Republic of Korea

Telephone Number: +82-2-500-2400

Fax Number: +82-2-503-9104

E-mail: pyh1978@korea.kr



HAUT-COMMISSARIAT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LE HAUT-COMMISSAIRE

Nouméa, le 27 JAN. 2011

Réf. : 037/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EPUBLIQUE
EN NOUVELLE-CALEDONIE

A

Mr Glenn Hurry
WCPFC Executive Director

SUBJECT : Registration of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Enclosure : 4 descriptions of Navy ships and 13 enabling decisions

REF : CMM 2006-2008

In the South Pacific, France is represented by two Government delegates for the “State’s action at sea” who are the High Commissioner in French Polynesia, already registered by the WCPFC, and the High Commissioner in New Caledonia for the western part of Pacific (see annex 2). According to articles 12,13 and 14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2006-08 adopted at Apia on 15th December 2006, you will find attached, for registration of authorized inspection vessels and authorities, a list of four Navy ships based in Nouméa, available for control on high seas

These four vessels are the frigate “Vendemiaire”, the two patrol boats “La Moqueuse” and “ La Glorieuse”, and one landing ship “Jacques Cartier”. In compliance with French law dated 6th May 2010, commanding officers, executive officers and other accredited officers are allowed to control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ing vessels and to establish infringements of fisheries regulations. These ships are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French Navy ships. Their commanding officers and officers “have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procedures as may be adopted the commission”. A special training will be organized each year with the New Caledonian fisheries service to improve knowledge about the measures adopted by the WCPFC.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fisheries procedures is the High Commissioner in New Caledonia,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He is assisted for operational matters by the commander of the New Caledonia maritime area and, for legal issues, by the head of “Maritime Affairs” department in New Caledonia, who is also the New Caledonia representative at the WCPFC. He is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I expect that all these informations will allow these four Navy ships to be registered as authorized vessels on the high seas by the WCPFC commission.

Yours sincerely,

Albert DUPUY

Annex 1

DETAILS OF AUTHORITY OF INSPECTION VESSELS AND INSPECTORS AUTHORITIES

1. FOREIGN FISHING VESSELS INSIDE FRENCH NEW CALEDONIAN EEZ OR ON HIGH SEAS AROUND NEW CALEDONIA

Name of authority: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CONTACT DETAIL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NOUMEA
NEW CALEDONIA

Inmarsat C: (582) 422 799 194

Phone number: +687 29 23 32

Fax number: +687 29 23 03

E-mail: mrcc.nc@lagoon.nc

2. FRENCH NEW CALEDONIAN VESSELS IN OTHER EEZ OR HIGH SEAS

Name of authority: High Commissioner, representative of the French Government in New Caledonia

CONTACT DETAIL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 (MRCC) NOUMEA
NEW CALEDONIA

Inmarsat C: (582) 422 799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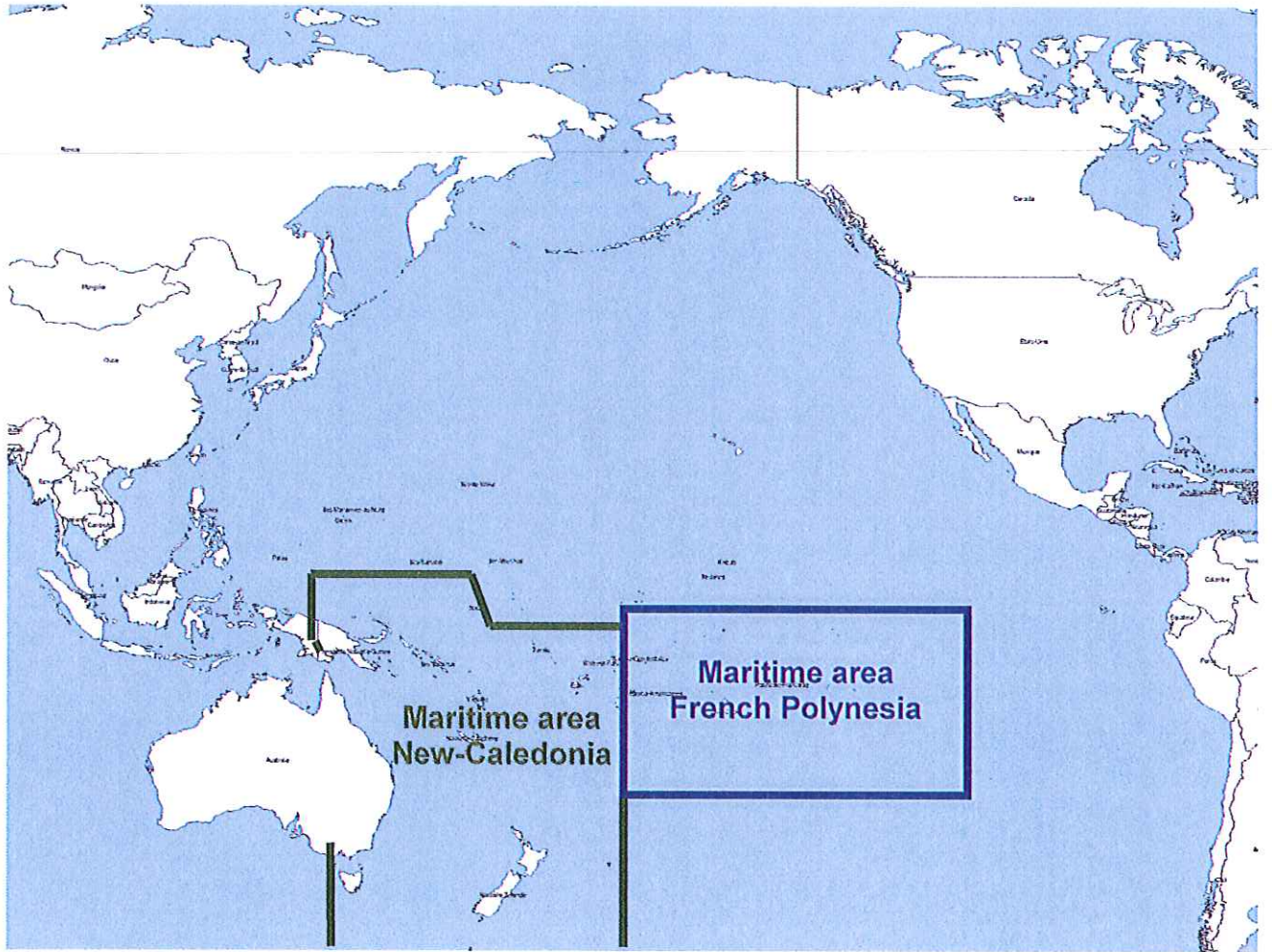
Phone number: +687 29 23 32

Fax number: +687 29 23 03

E-mail: mrcc.nc@lagoon.nc

Annexe 2

Maritime areas map



LISTE DE DIFFUSION

Pour information (courrier sans pièces jointes)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mer
Etat-major de la marine (bureau AEM)
Service des affaires maritimes de Nouvelle-Calédonie

WCPFC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REGISTER

DETAILS OF VESSEL (AS DEPICTED IN THE ATTACHED PHOTOGRAPHS)

Vessel

	Vessel name	Vessel flag	Call sign	Registration n°	Port of registry	Port marked on vessel hull
1.	VENDEMIARE (frigate)	French	FAVM	F 734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2.	LA MOQUEUSE (patrol boat)	French	FAIK	P 688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3.	LA GLORIEUSE (patrol boat)	French	FBGU	P 686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4.	JACQUES CARTIER (landing ship)	French	FACJ	L 9033 (hull number)	Nouméa	None (French navy)

Vessel contact details

	Vessel name	Phone number	Fax number	Inmarsat Mobile number	E-mail Address
1.	VENDEMIARE	687 29 41 96	/	00 870 765 049 543 00 870 762 698 914 (FAX)	officiel.vendemiaire@skyfile.com (at sea) vendemiaire.noumea@canl.nc
2.	LA MOQUEUSE	687 29 40 46	/	00 870 763 04 08 33 00 870 763 04 08 34 (FAX)	lamoqueuse@skyfile.com (at sea) lamoqueuse@lagoon.nc
3.	LA GLORIEUSE	687 29 40 35	/	00 870 763 04 08 41 00 870 763 04 08 42 (FAX)	laglorieuse@skyfile.com (at sea) laglorieuse@lagoon.nc
4.	JACQUES CARTIER	687 29 40 91	/	00 870 762 94 48 14	j-cartier@skyfile.com (at sea) jacques.cartier@lagoon.nc

Vessel description

	Vessel name	Vessel length (Length Overall/Registered Length/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ength specified as meters/feet	Hull material
1.	VENDEMIARE	93.5 (registered length)	Meters	Steel
2.	LA MOQUEUSE	55.20 / 54.60 / 50.00	Meters	Steel
3.	LA GLORIEUSE	55.20 / 54.60 / 50.00	Meters	Steel
4.	JACQUES CARTIER	80 / 68	Meters	Steel

FS Vendémiaire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93,50 meters
- Corresponding draft :4,40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2950 t
- **Detection**
- 1 surveillance radar DRBV 21
- **Navigation**
- 1 navigation radar « Racal decca »
- 1 gonio radio VHF Taiyo
- **Crew + passengers** 123

• Propulsion

- 4 diesel SEMT Pielstick engines
- 2 shaftlines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 Speed

- Maximum speed :20 knots
- **Cruising range at 15 knots** : 10 000 NM

• Ship's boat

- 1 ETN 90 – 1 Zodiac Hurricane 530 OB - 1 zodiac 10 places

• Helicopter

- 1 Alouette III

JACQUES CARTIER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80.0 meters
- Corresponding draft :3.0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1330 t
- **Navigation**
- 1 radar DRBN-38 Decca Bridgemaster
- **Crew + passengers** 40 + 140 pax
- **Propulsion**
- 2 diesel SACM Wärtsilä UD 33 V12 M
- 2 shaftlines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 **Speed**
- Maximum speed :14.5 knots
- **Cruising range at 12.5 knots** : 3 100 NM
- **Ship's boat**
- 2 Zodiacs 8 places
- 2 LCVP

P400

LA GLORIEUSE P686



LA MOQUEUSE P688



Characteristics

- Overall length :54.8 meters
- Corresponding draft :2.54 meters
- **Maximum displacement** 477 t
- **Navigation**
- 1 radar DRBN-38 Decca Bridgemaster
- **Navigation**
- 1 radiogoniometer VHF Taiyo TDL 1100
- **Crew + passengers** 29+12

- **Propulsion**
- 2 diesels SEMT Pielstick PA 4 V200 VGDS (2 x 3700 cv)
- 2 shaftlines
- **Speed**
- Maximum speed :24 knots
- **Cruising range at 14 knots** : 4 500 NM
- **Ship's boat**
- 2 Zodiacs 10 places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I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I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Stanislas de Chargères du Breuil
Capitaine de frégate
Commandant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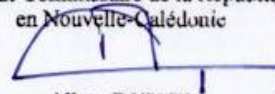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Michel Pigault
Lieutenant de vaisseau
Commandant en second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Vendémiair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Guirec Lebrun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Assistant protection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I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I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Thibault Perier
Commissaire de 2nd classe
Commissaire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 Vendémiair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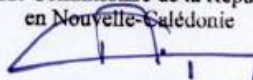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e la frégate de surveillance «Vendémiair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François Nèvejans
Capitaine de corvette
Commandant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I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I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Thibault Vaute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Officier chargé des opérations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I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I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é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Yoann José-Maria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Commandant en second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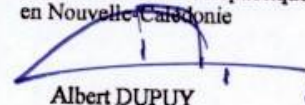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Moqu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Nicolas Pourcher de Ruelle du Chéné
Capitaine de corvette
Commandant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Manuel Bienvenu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Commandant en 2nd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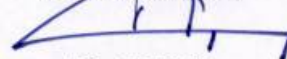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I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I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Pierre Widehem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Officier chargé des opérations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patrouilleur « La Glorieuse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Le capitaine de corvette Joseph COUVAL
Commandant le Batral « Jacques Cartier »
Commanding officer of batral « Jacques Cartier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batral « Jacques Cartier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of commanding officer.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Le lieutenant de vaisseau Didier Masson
Commandant en second du Batral « Jacques Cartier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batral « Jacques Cartier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of commanding officer.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ec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Jérôme PERROT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Assistant protection du Batral « Jacques Cartier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batral « Jacques Cartier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of commanding officer.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RÉPUBLIQUE FRANÇAISE

Albert Dupuy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High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in New Caledonia
délégué du gouvernement pour l'action de l'État en mer
Delegate of the French Government for State Action at Sea

Vu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signée à Montego Bay le 10 décembre 1982, publiée par le décret n° 96-774 du 30 août 1996 ;
According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n the sea adopted at Montego Bay December the 10th 1982, published by Decret N°96-774 on August 30th 1996,
Vu le code pénal ;
According penal code
Vu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According penal procedure code,
Vu l'article L. 942-1.1 du code rural relatif à la pêche maritime et à l'aquaculture marine,
According to the article L. 942-1.1 of rural law concerning fisheries activities and fish farming,
Vu la loi n°70-1264 du 29 décembre 1970 relative aux procédures à suivre en matière de contrôle international des pêches maritime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ccording to law N°70-1264 of December 29th 1970 concerning procedures about international sea fisheries control provided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Vu le décret n° 97-506 du 20 mai 1997 relatif aux commandements de force maritime et d'élément de force maritime ;
According to law N°97-506 of May 20th 1997 concerning procedures of control at sea by French State,
Vu le décret n° 2005-1514 du 6 décembre 2005 relatif à l'organisation outre-mer de l'action de l'État.
According to the décret N°2005-1514 of December 6th 2005 concerning Overseas Organisation of State Action,
Vu la résolution de la WCPFC CMM N°2006-08 relative aux procédures d'embarquement et de d'inspection,
According to WC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N°2006-08 concerning boarding and inspection procedures,

Sur proposition du commandant de la zone maritime Nouvelle-Calédonie,

DÉCIDE
DECIDE

Monsieur Alain FOURNIER
Enseigne de vaisseau de 1^{ère} classe
Assistant protection du Batral « Jacques Cartier »

est habilité à rechercher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ice des pêches maritime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et internationale.
Is allowed to investigate and establish infringements concerning fisheries regulations at sea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Cette habilitation est valable à compter de ce jour jusqu'à la date de son débarquement du batral « Jacques Cartier »
This official document is valid until the end of service in New Caledonia of commanding officer.

Fait à Nouméa, le **27 JAN. 2011**

Le Haut-Commissaire de la République
en Nouvelle-Calédonie

Albert DUPUY

Copies : Monsieur le directeur de la WCPFC
Monsi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1^{ère} instance de Nouméa
Monsieu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Nouméa

DETAILS OF INSPECTING AUTHORITY

AUTHORITY

Name of Authority: Ministry of Fisheries, New Zealand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64 4 819 4244

Fax Number: +64 4 819 4644

E-mail Address: InternationalCompliance@fish.govt.nz

Website: www.fish.govt.nz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AUTHORITY

Name of Authority: **Papua New Guinea National Fisheries Authority**

AUTHORITY CONTACT DETAILS

1. Phone Number: 675 3090436
Fax Number: 675 3202061
Email Address: npakop@fisheries.gov.pg
Website: www.fisheries.gov.pg

2. Phone Number: 675 3090476
Fax Number: 675 3202061
Email Address: gkomangin@fisheries.gov.pg
Website: www.fisheries.gov.pg



TUVALU GOVERNMENT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Communication, Fisheries and Transport
Private Mailbag, Teone, Funafuti, Tuvalu
Phone: (688) 20836 Fax: (688) 20151 Email: fisheries@gov.tv

20 October 2010

Glenn Hurry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O Box 2356
Kolonias, Pohnpei Stat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ar Mr. Glenn Hurry,

Subject: Notification of Tuvalu's Authorized Patrol Vessel Information, Vessel Authority, Authorities for Inspectors, and the MCS Entity and Personnel For the Receipt of Non 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and VMS Client Activation

Authorized Patrol Vesse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 of the WCPFC Convention and paragraph 13(a) of CMM 2006-08, Tuvalu wishes to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of its patrol vessel assigned for Patrols in the Convention Area including the high seas.

a. Details of the Vessel include:

Name: HMTSS Te Mataili
Description: Length: 31.5M Breadth: 8M Draught: 2.3M Colour: Grey
Hull Number: 801 IRCS: T2SB Registration Number: 572211301
Port of Registry: Funafuti, TUVALU Communication capability: Pri 8247 KHz
Sec 4576 KHz, Tertiary 12772 KHz

- b. The Tuvalu wishes to certify that the vessel is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 c. The Tuvalu also wishes to certify that the crew of the Patrol vessel has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s have been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ara 26 and Annex III, Para 6 as well as CMM 2006-08.
- d. The Authority for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the patrol vessel is:

Name of Agency: Maritime Wing Police Service
Address: NCC Building, Vaiaku, Funafuti, Tuvalu
Contact Person: Maritime Commander Mr. Talafou Esekia
E-mail Address: talaloi@yahoo.com.au
Telephone: +688 20187 Fax: +688 20148

Key contact for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Communications, Fisheries, and Transport
Surveillance Officer Mr. Laitailiu Seono
Private Mailbag, Teone, Funafuti, Tuvalu,
Phone +688 20143, Fax +688 20151, Email: laitailiu_seono@yahoo.com

Authorities for Inspec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1) of the WCPFC Convention and paragraph 13(b) of CMM 2006-08, Tuvalu wishes to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of Inspectors assigned for the conduct of High Seas Boarding and Inspection in the Convention Area.

- a. Tuvalu wishes to inform the WCPFC Secretariat that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boarding in inspection is: Tuvalu Police Service, National Coordination Centre, Vaiaku, Funafuti, Tuvalu
Ph: +688 20148, Fax: +688 20147, Commanding Officer Mr. Seleganiu Fusi;
Email: selefusi2@yahoo.com.au
- b. An example of the identification card that the Inspectors from Tuvalu are carrying to certify that they are appropriately designated inspections for the WCPFC High Seas Inspection and Boarding operations is attached to this letter.
- c. Tuvalu wishes to note that the Authorities highlighted in paragraph (a) are fully familiar with the fishing activities to be inspected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in force.
- d. Tuvalu wishes to notify that the inspectors of the above stated Authority have received and completed training in carrying out boarding and inspections activities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Para 26 and Annex III, Para 6 as well as CMM 2006-08.

MCS Entity and Personnel For the Receipt of Non 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and VMS Client Acti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0 of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Data Compiled by the Commission of 2007** and paragraph 11 of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High Seas Non-Public Domain Data and Information Compiled by the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Monitoring, Control or Surveillance (MCS) Activities and the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High Seas VMS Data for Scientific Purposes of 2009**, Tuvalu wishes to notify the Secretariat that Tuvalu, Ministry of Home Affairs will be the MCS Entity authorised to receive high seas non-public domain data and VMS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Further, the Tuvalu Police Service will be the Authorized MCS Personnel for the purposes of the Rules and Procedures.

The contact details fo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Maritime Commander Mr. Talafou Esekia, E-mail Address: talaloi@yahoo.com.au

Telephone: +688 20156 Fax: +688 20148 and;

Maritime Surveillance Advisor LCDR Brendan Mcharg Email: tuvalumsa@yahoo.com.au

Telephone: +688 20148 Fax: +688 20148

As these individuals will be provided special coded access to the WCPFC Secure side of the web, as well as being the individual who will have authority to request and receive VMS dat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with special attention to data security requirements.

Tuvalu notes that it shall provide appropriate data security measures equivalent or more stringent to those required by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security of this data.

Yours sincerely,



Samasoni Finikaso
Director

DETAILS OF AUTHORITY OR INSPECTORS

Name of Authority: US Coast Guard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808-535-3333

Fax Number: 808-535-3338

E-mail Address: jrcchonolulu@uscg.mil

Website: None

Name of Authorit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fic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 CONTACT DETAILS

Phone Number: 800-853-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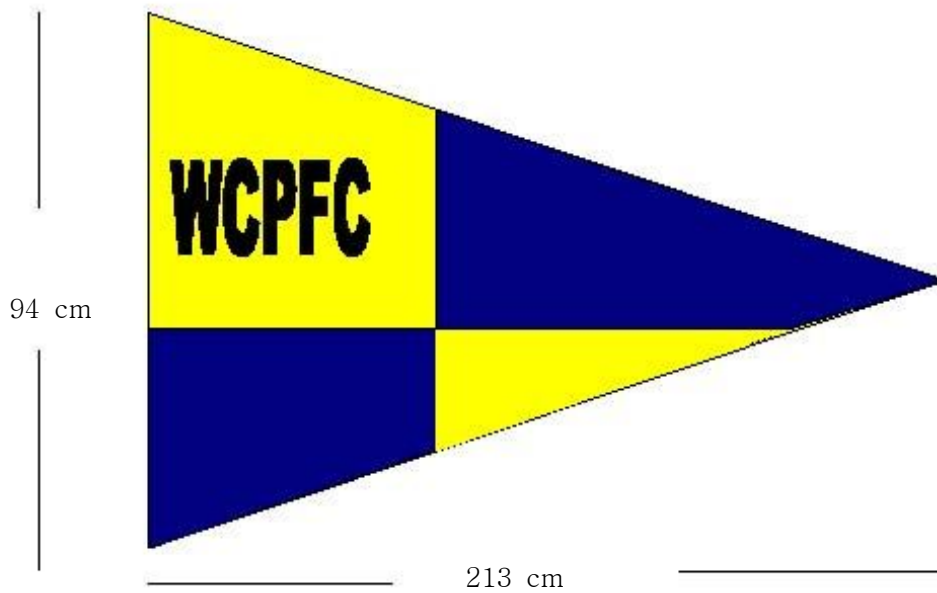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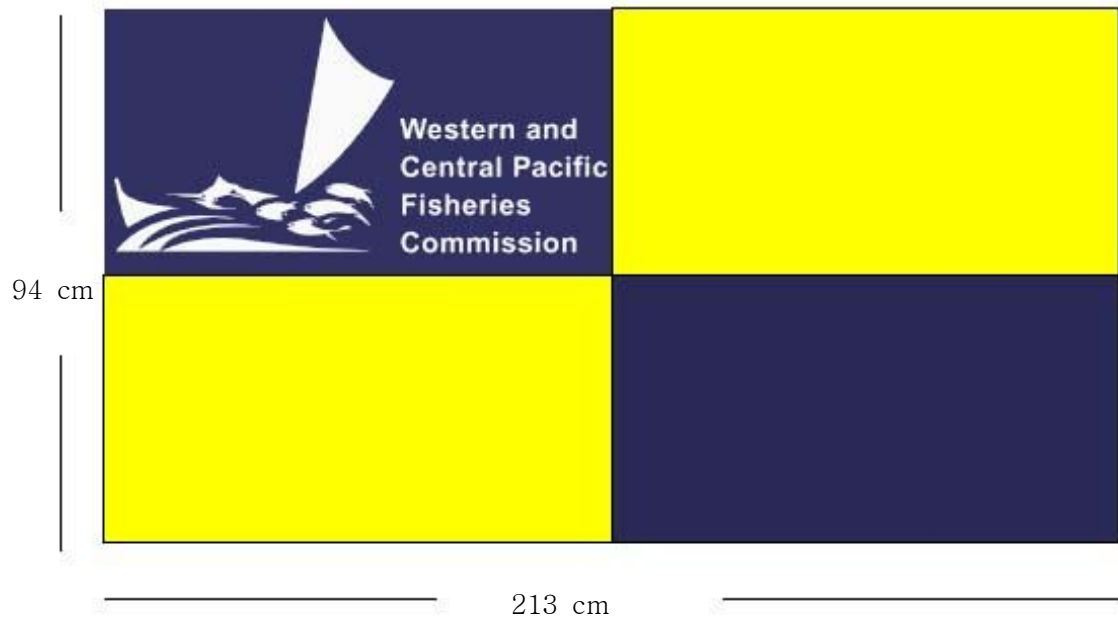
Fax Number: 808-541-3166

E-mail Address: jrcchonolulu@uscg.mil

Website: <http://www.nmfs.noaa.gov/ole/>

3. 검색선박의 기

WCPFC INSPECTION FLAG AND PENNANT



4. 표준 다국어 질문서(영문 및 국문)

※ 기타언어는 : <http://www.wcpfc.int/> 참조

STANDARDIZED MULTI-LANGUAGE QUESTIONNAIRE

표준 다국어 질문서

BOARDING QUESTIONS

승선 질문

1. _____(a)_____VESSEL____(b)_____ THIS IS THE _____(c)_____
CALLING YOU ON CHANNEL 16 VHF-FM/2182khz (HF) ----OVER.

1. _____(a)_____선박____(b)_____ 이 선박은 (c) 이며 채널 16 VHF-FM /
2182khz (HF) 으로 귀 선박을 호출하고 있다. 이상.

(a) FISHING, CARRIER, or BUNKER

(a) 어업, 운반, 또는 급유

(b) FISHING, CARRIER, or BUNKER VESSEL'S NAME

(b)어업, 운반, 또는 급유 선박의 이름

(c) PATROL VESSEL (United States Coast Guard Cutter, Her Majesty's
Australian Ship, etc.)

(c) 순찰 선박(미국 해양경비대 커터 Her Majesty's, 호주 선박 등)

2. REQUEST YOU SWITCH YOUR COMMUNICATIONS TO CHANNEL
_____.

2. 채널 ----으로 귀 통신 주파수를 맞춰 줄 것을 요청한다.

3. FISHING VESSEL (NAME), THIS IS PATROL VESSEL (NAME) --- WE

ARE HERE ON BEHALF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AND ARE AUTHORIZED TO ENSURE YOU ARE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E INTEND TO BOARD AND INSPECT YOUR VESSEL. PRIOR TO OUR BOARDING OF YOUR VESSEL, WE NEED TO ASK YOU A FEW QUESTIONS.

3. 어선(이름), 이 선박은 순찰선(이름)--- 우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를 대신하여 여기에 왔으며, 귀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도록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우리는 귀 선박에 승선하여 검색을 할려고 한다. 귀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한다.

4. IS YOUR VESSEL REGISTERED WITH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4. 귀 선박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5. UNDER WHICH COUNTRY'S FLAG ARE YOU REGISTERED?

5. 귀 선박은 어느 나라에 등록이 되어있는가?

6. WHAT IS YOUR INTERNATIONAL RADIO CALL SIGN?

6. 국제무선호출부호는 무엇인가?

7. WHAT IS YOUR HOMEPORT?

7. 등록항구는 어디인가?

8. HOW MUCH _____(a-c)_____ DO YOU HAVE ONBOARD? IF FISH, WHAT TYPE?

8. 귀 선박은 선상에 얼마나 많은 양의 _____(a-c)_____를 싣고 있는가?

만일 어류라면 어떤 형태냐?

a. FISH (Fishing Vessel)

a. 어류(어선)

b. FISH and/or SUPPLIES (Carrier Vessel)

b. 어류 그리고/또는 선수품(운반선)

c. FUEL (Bunker Vessel)

c. 연료 (급유선)

9. WHAT WAS YOUR LAST PORT OF CALL?

9. 귀 선박의 마지막 기항지는 어느 항구였는가?

10. W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10. 귀 선박의 다음 기항지는 ?

11. WHAT IS THE NAME AND NATIONALITY OF YOUR MASTER?

11. 선장의 이름과 국적은?

12. HOW MANY CREW DO YOU HAVE ONBOARD AND WHAT ARE THEIR NATIONALITIES?

12. 승무원 수는 몇 명이며, 그들의 국적은 무엇인가?

13. DO YOU HAVE ANY WEAPONS ONBOARD? IF SO, WHERE ARE THEY LOCATED?

13. 선상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4. DO YOU HAVE A FISHERY OBSERVER ONBOARD? IF SO, WHAT IS THE OBSERVER'S NAME AND NATIONALITY?

14. 선상에 수산 옵서버가 승선해 있는가? 있다면, 옵서버의 이름과 국적은?

15. WE WILL BE SENDING OVER A BOARDING PARTY IN (FIVE / FIFTEEN / THIRTY) MINUTES; PLEASE ASSIST THEM IN GETTING ONBOARD AND BY COMPLYING WITH ALL OF THEIR INSTURCTIONS.

15. 우리는 승선단을 (5분/15분/30분후)에 보낼 것이다. 그들의 승선에

협조하고 그들의 모든 지시사항에 따라 주기를 바란다.

16. TO ASSIST OUR BOARDING PARTY IN BOARDING YOUR VESSEL, WE REQUEST YOU _____(a-e)_____.

a. STOP YOUR VESSEL

a.귀 선박을 멈춰 세우시오

b. SLOW YOUR VESSEL

b. 선박의 속도를 줄이시오

c. CONTINUE ON YOUR PRESENT COURSE AND SPEED

c.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계속 운항하십시오.

d. TURN TO (PORT / STARBOARD)

d. (좌현/우현)으로 돌리시오

e. LOWER A LADDER ON THE (PORT / STARBOARD) SIDE

e. (좌현/우현) 쪽으로 사다리를 더 낮추시오

17. TO CONDUCT THIS INSPECTION IN A TIMELY MANNER, PLEASE MAKE AVAILABLE TO OUR BOARDING OFFICER ALL OF YOUR VESSEL'S DOCUMENTS, INCLUDING YOUR CATCH LOGS AND REPORTS.

17. 적기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승선검색관이 귀 선박의 조업일지 및 어획보고서를 포함하여 선박의 모든 서류를 열람할 있도록 하시오.

INITIAL BOARDING QUESTIONS

승선 초기 질문서

1. GOOD (MORNING / AFTERNOON / EVENING), ARE YOU THE MASTER OF THE VESSEL?

1.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이 배의 선장입니까?

2. I AM HERE TO INSPECT YOUR VESSEL FOR 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BY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2. 저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귀 선박을 검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3. DO YOU UNDERSTAND?

3. 이해합니까?

4. IS THERE ANYONE HERE WHO SPEAKS _____ (a-f)_____

4. 여기 _____ (a-f)_____ 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a) 영어
- (b) 일본어
- (c) 한국어
- (d) 중국어
- (e) 불어
- (f) 스페인어

5. I DO NOT HAVE ANYONE ONBOARD WHO CAN SPEAK YOUR LANGUAGE.

5. 나는 당신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6. I AM USING BILINGUAL LANGUAGE CARDS. PLEASE ANSWER MY QUESTIONS SIMPLY AND SLOWLY, USING YES AND NO WHENEVER POSSIBLE

6. 나는 두개의 언어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가능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천천히, 예 아니오 로 대답하세요.

7. THESE PEOPLE WILL ASSIST ME IN MY INSPECTION

7. 이 사람들은 내가 검사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8. PLEASE MUSTER YOUR CREW ON THE (FANTAIL / BOW / OPEN DECK)

8. 승무원들을 (선미/선수/갑판)에 모아 주세요.

9. PLEASE INDICATE WHERE YOU KEEP YOUR WEAPONS ONBOARD

9. 귀하의 무기를 선상 어느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말하십시오.

10. THIS IS A COPY OF THE TEXT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WHICH PROVIDES ME THE AUTHORITY TO BOARD YOUR VESSEL AND CONDUCT THIS INSPECTION

10. 이것이 나에게 귀하의 배를 승선하여 검사를 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중서부태평양수산협약의 사본입니다.

11. PLEASE REVIEW THIS DOCUMENT AND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11. 이 문서를 검토하고 만일 질문이 있다면 하세요.

12. THIS IS A COPY OF THE RELEVANT COMMI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APPLY TO YOUR VESSEL

12. 이것이 귀하의 배에 적용할 위원회의 적합한 보존관리조치 사본입니다.

13. WHEN WERE YOU INSPECTED LAST? WHO INSPECTED YOU?

13. 귀하는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습니까? 누가 검사를 하였습니까?

14. I INTEND TO INSPECT YOUR VESSEL TO ENSURE YOUR COMPLIANCE WITH THE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14. 나는 귀하가 이들 보존관리조치들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귀하의 선박을 검사할 것입니다.

15. PLEASE SHOW ME

15. 나에게 다음을 보여주세요

(a) YOUR VESSEL'S DOCUMENTS

(a) 선박에 관한 서류

(b) YOUR CURRENT PERMITS

(b) 귀하의 현재의 허가사항

(c) YOUR CATCH LOGS

(c) 귀하의 조업일지

(d) YOUR PLOTTING CHARTS

(d) 귀하의 항해도

16. YOUR DOCUMENTS AND RECORDS INDICATE YOU ARE IN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COMMI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16. 귀하의 서류와 기록은 귀하가 위원회의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 YOUR DOCUMENTS AND RECORDS INDICATE YOU ARE NOT IN COMPLETE COMPLIANCE WITH AL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17. 귀하의 서류와 기록은 귀하가 위원회의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 THIS IS THE SPECIFI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BY WHICH YOU ARE NOT IN COMPLIANCE

18. 이것이 바로 귀하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보존관리조치입니다.

19. THIS (IS / IS NOT) CONSIDERED BY THE COMMISSION TO BE A SERIOUS VIOLATION

19. 이것은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하지 않습니다.)

20. I AM SEIZING THIS ITEM FOR EVIDENCE

20. 나는 이 목록을 증거로 가져갑니다.

21. I AM PHOTOGRAPHING THIS ITEM TO DOCUMENT THE VIOLATION

21. 나는 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목록의 사진을 찍습니다.

22. I WILL USE THIS BOARDING REPORT TO DOCUMENT MY INSPECTION OF YOUR VESSEL

22. 나는 이 승선보고서에 귀하의 선박에 대한 검사내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23. THIS BOARDING REPORT INDICATES YOU (ARE / ARE NOT) IN COMPLIANCE WITH ALL COMMI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23. 이 승선보고서는 귀하가 위원회의 모든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있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 THIS IS YOUR COPY OF THE BOARDING REPORT

24. 이것은 귀하를 위한 승선보고서의 사본입니다.

25. A COPY OF THIS BOARDING REPORT WILL BE PROVIDED TO THE

**FISHERIES ENFORCEMENT AUTHORITIES OF YOUR COUNTRY
(FOR FURTHER ACTION)**

25. 이 승선보고서의 사본은 (추가적인 조치를 위하여) 귀국의
어업단속기관에 보내질 것입니다.

26.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ON THIS BOARDING

26. 이번 승선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7. I HAVE COMPLETED THE INSPECTION OF YOUR VESSEL

27. 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마쳤습니다.

28. WE ARE DEPARTING YOUR VESSEL AT THIS TIME

28. 우리는 지금 이 선박을 떠납니다.

Ⅲ. 보존관리조치(국문 및 영문)

1. 어선의 표시 및 확인을 위한 상세사항

보존관리조치2004-03

채택 : 2004. 12. 8

발효 : 2005. 2. 8

1. 일반조항

1.1. 목적, 원칙 및 범위

1.1.1 다음 상세사항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어선의 표시 및 확인에 관한 FAO 표준 상세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1.1.2 다음 상세사항들은 국가 관할수역 이원의 협약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위원회 회원의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다음 상세사항들은 의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1.2 정의

다음 상세사항들의 목적을 위하여

“협약”은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갑판”은 조타실의 상층부를 포함하여 수평적 평면에 놓여있는 표면을 의미한다.

“어선의 표시 및 확인에 관한 FAO 표준상세사항”은 1989. 4. 10 - 14간 로마에서 개최된 제18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승인된 표준상세 및 지침을 의미한다.

“선박”은 협약 제1조 (e)항에서 정의되고, 위원회 회원이 그 회원의 관할수역 이외의 협약수역에서 어업하도록 허가를 한 어선을 의미하며, 어선의 선상에 탑재되고 어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기선(boat), 소형모터보트(skiff), 배(craft)(비행기를 포함)를 포함한다.

“운영자”는 선박을 담당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사람 또는 선장, 소유자 및 용선자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그 선박이 사용되어진 사람을 말한다.

2. 필요조건 및 적용

2.1 일반 필요조건

2.1.1 위원회의 회원은 선박의 운영자가 다음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a) 선박의 확인을 위하여 국제통신연맹 무선호출부호(IRCS)를 선박에 표시하도록 요청된다.

(b) IRCS를 할당받지 못한 선박은 국제통신연맹(ITU)가 해당 위원회 회원에게 할당된 문자로 또는 양자간 어업협정하에서 요구되고 적절한 경우 어선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다른 문자로, 또는 해당 위원회 회원국에 의하여 어선에 할당된 등록번호를 선박에 표시하도록 요청된다.

2.1.2 상기 2.1.1의 (a), (b)중 어떤 체계를 사용하더라도 확인자는 이후부터 WCPFC 확인번호(WIN)로 불려진다.

2.1.3 위원회 회원은 다음을 보장한다.

(a) 선박의 이름 또는 확인표시 및 국제관습 또는 국가법률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는 항구 등록과는 별도로 특정 WIN은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구조에 페인트로 칠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유일한 다른 선박의 확인 표시여야 한다.

(b) 어선에 WIN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관할 수역 이원의 협약수역에서 어업허가를 위한 조건이다.

(c) 다음은 국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i) 이 상세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

(ii) 선박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것 또는 잘못 표시하는 것

(iii) WIN의 고의적 삭제 또는 방해

(iv) 다른 운영자 또는 다른 선박에 할당된 WIN을 사용하는 것

(d) 상기 2.1.3(c)를 위반하는 것은 어업허가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2 표시 및 기타 기술적 상세사항

2.2.1 위원회의 각 회원은 운영자가 WIN을 언제나 영어로 뚜렷하게 표시할 것을 보장한다.

(a)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구조, 좌현 또는 우현상에서. 운영자는 기울어진 각도가 또 다른 선박 또는 공중으로부터 표지의 관측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선박의 측면 또는 상부구조와 일정각도로 기울어진 고정물을 부착할 수 있다.

(b) 아래 2.2.4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갑판위에서. 천막 또는 다른 일시적인 덮개가 갑판상의 표시를 가리기 위하여 놓여졌다면, 그 천막 또는 덮개는 또한 표시되어 진다. 이들 표시는 선수를 향하여 숫자 또는 문자의 상단이 선체를

가로질러서 표시되어야 한다.

2.2.2 위원회의 각 회원은 운영자가 다음과 같이 WIN을 표시하도록 보장한다.

- (a) 선박의 양측면 수선상에 가능한 높이 표시하고 선수 및 선미의 휘어진 표면 부분은 피한다.
- (b) 어구를 사용중에 있던지 사용하지 않고 있던간에 어구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가려지지 않도록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 (c) 특정 종의 어획으로부터 손상 또는 색이 바래지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하수구 또는 배박으로 배출로부터 떨어지도록 표시한다.
- (d) 수선 아래로 연장되지 않도록 표시한다.

2.2.3 갑판이 없는 선박은 수평적 표면에 WIN을 표시하도록 요청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영자는 실제적인 경우 위원회의 회원이 WIN이 공중으로부터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WIN을 표시하는 판의 맞추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2.2.4 어업중인 선박에 의하여 운반되는 소형기선(boat), 소형모터보트(skiff), 배(craft)(비행기를 포함)는 해당 선박과 똑같은 WIN을 가진다.

2.2.5 위원회의 회원은 선박의 운영자들이 그 선박에 WIN을 표시하는데 있어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 (a) 인쇄체 문자 및 숫자를 사용한다.
- (b) 문자 및 숫자의 너비는 높이와 비례한다.
- (c)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선박크기와 비례하며, 다음에 의한다.
 - (i) 선체, 상부구조 그리고/또는 경사진 표면에 표시될 WIN

선박의 전장(m)	문자 또는 숫자의 높이(m)는 다음이상
25m 이상	1.0m
20m 이상 25m 이하	0.8m
15m 이상 12m 이하	0.6m
12m 이상 15m 이하	0.4m
5m 이상 12m 이하	0.3m
5m 이하	0.1m

(d) 하이픈의 길이는 문자 및 숫자 높이의 절반이다.

- (e) 모든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너비는 높이의 1/6이다.
- (f) 문자 및/또는 숫자간의 간격은 높이의 1/4를 초과하지 않고 높이의 1/6보다 작지도 않다.
- (g) A 또는 V처럼 경사진 측면을 가진 이웃하는 문자간의 간격은 높이의 1/8을 초과하지도 않고 높이의 1/10보다 작지도 않다.
- (h) WIN은 검정바탕에 흰 글씨거나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i) 바탕은 WIN 주위에 높이의 1/6만큼의 경계가 주어진다.
- (j) 양질의 해수용 페인트가 사용된다.
- (k) WIN은 광선을 반사하거나 또는 열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들 상세사항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l) WIN과 그 배경은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

3. WIN의 기록

3.1 위원회의 회원은 협약 제24조 4항에 따라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선박등록부에 WIN을 기록한다.

4. 상세사항의 재검토 및 수정

4.1 위원회는 이 상세사항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한다.

2.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보존관리조치2005-03

채택 2005. 12. 16

발효 2006. 2. 16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WCPFC)는

북태평양 참치 및 참치류 관련 국제과학위원회의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최고의 과학적 근거가 동 어종들이 완전히 개발되었거나, 또는 조업으로 인한 사망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유의하며,

동 위원회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협약 수역에 나타나는 어족에 대한 IATTC와의 협력을 위해 제정된 WCPFC 협약 제22조(4)항을 더욱 상기하며,

IATTC 제73차 회의에서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된 것을 인지하며,

WCPFC 협약 제10조에 따라서 다음을 채택한다.

1. 적도 북쪽 협약수역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총 어획노력의 수준은 현재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참여속령(이하 "CCMs")은 WCPFC 협약수역에서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조업을 하는 자국 선박의 어획노력 수준이 현재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CCMs는 1년 단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소규모 연안어업을 제외하고,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모든 포획을 6개월 마다 WCPFC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조업기간이 끝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동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4. 모든 CCMs는 적도 북쪽에서의 모든 날개다랑어 어획 및 날개다랑어 어업에서의

모든 어획노력에 대하여 매년 WCPFC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어획 및 어획노력에 대한 보고서는 어구에 따라 구별하여 보고되어야 하며, 어획량은 중량에 따라서 보고한다. 어획노력은 최소한 모든 어구의 유형에 있어서 조업일수를 포함하여, 해당되는 어구유형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로서 보고되어야 한다.¹

5. 북방위원회(The Northern Committee)는 북태평양 참치 및 참치류에 대한 국제과학위원회 및 WCPFC 과학위원회를 포함하여 동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기타 과학 기구와 협력하여,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상태를 감독하고, 동 어족의 현황에 대하여 연례회시 위원회에 보고하며,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러한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6. 위원회는 북방위원회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향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7. CCMs는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협약수역내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어획노력의 수준을 유지 및 필요한 경우, 감소를 위하여 작업한다.
8. WCPFC 사무국장은 IATTC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 두 위원회가 북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일련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조치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특별히, 두 위원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통합보존관리조치와 모든 보고서나 합의된 조치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9. 제2항의 규정은 현재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조업이 제한적이긴 하나 진정한 경제적 이해와 동 어종에 대한 포획이력을 갖고 있으며, 자국의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의 향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약수역내 소규모개발도상도서회원국 및 참여속령의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10. 제9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업이 소규모개발도상도서회원국 또는 참여 영토의 자국내 어업개발을 위한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회원국 및 영토가 소유하거나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운영되는 어선을 이용하여 어획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첫 번째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2006. 4. 30까지 이며, 2004년까지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개발도상도서회원국은 이 1차 보고서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3. 남서태평양 청새치 보존관리조치

보존관리조치2006-04

채택 2006. 12. 15

발효 2007. 2. 13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조항에 의거하여

남서태평양 수역에서 청새치에 대한 최초의 지역적 평가결과, 어족의 풍도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하며,

또한, 과학위원회가 어획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로 남획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서 본 어족자원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더 확실해 질 때까지 이 자원에 대한 어획 사망률을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권고했음을 유의하며,

WCPFC 협약의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1. 위원회 회원, 협력적 비회원, 참여 속령(CCMs)은 남위 15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청새치를 어획하는 어선 수를 2000년부터 2004년중 어느 한 해의 어선 척수로 제한한다.
2. 제1항은 남위 15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2000년- 2004년 수준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수준으로 청새치 어획 개발을 하려는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과 참여속령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또한 자국의 수역내에서 책임있는 수준의 개발을 하려는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 할 수 없다.
3. CCMs은 남서부 태평양의 청새치 어획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며 특히 청새치 자원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에 협력한다.

4. 제1항에 근거하여 CCMs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남위 15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청새치를 어획한 자국의 선박 수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2007년 7월1일까지 제공하며,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남위 15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계속 청새치 어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대 허용 선박척수를 결정한다. CCMs은 남위 15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자국 어선에 의해 부수 어획된 청새치 어획량 수준은 물론 청새치를 목표로 한 자국 어선에 의한 어획량 수준 및 어선 수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5. 제1항내지 제4항은 자국 관할수역에서 어획된 청새치의 양륙의 상업적 중단을 통하여 남서태평양의 청새치 보존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를 밟았거나 밟을 예정인 협약수역내 남위 15도 이남의 연안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사무국장은 제4항에 의거하여 CCMs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를 종합, 배포한다. 기술이행위원회 (TCC)는 본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여부를 감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권고한다.

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승선검색절차

보존관리조치2006-08

채택 2006. 12. 15

발효 2007. 2. 13

1. 협약 제26조에 의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승선검색절차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다.

정의

2. 이 절차의 해석과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 된다

가. "협약"이란, 2000년 9월 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채택된 중서부태평양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나. "위원회"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협약 제9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다.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체약당사자의 당국을 의미한다.

라. "어선의 당국"이란 조업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의미한다.

마. "권한 있는 검색선"이란 이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아 위원회 선박등록부에 포함된 선박을 의미한다.

바. "권한 있는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에 책임있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고, 위원회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검색관을 의미한다.

목적

3. 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승선검색과 이와 관련한 활동들은, 협약의 각 규정과 위원회가 채택하고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행하여져

야 한다.

적용수역

4. 이 절차는 협약수역 내의 공해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

5. 각 체약당사자는 이 절차의 각 조항에 따라, 협약에 따라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했었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공해상 승선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절차 전부는 또한 관련 체약당사자가 그 절차의 발효를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 체약당사자와 조업실체 간에 적용된다.

7. 위원회의 각 회원은, 자국의 기를 게양한 선박이 이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검색관에 의한 승선검색에 응하도록 보장한다. 위의 권한 있는 검색관은 그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한다.

일반원칙

8. 이 절차는 협약 제26조 및 부속서 III, 제6(2)조의 이행과 실행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 각 규정과 일관성 있게 해석되어진다.

9. 이 절차는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선상 옵서버의 승선여부, 과거 검색의 빈도 및 결과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 나.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위원회의 각 회원의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 검색 활동을 포함하여 협약의 각 규정 및 합의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10. 모든 선박의 이행을 보장키 위한 노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편, 이 절차에 의한 승선검색 노력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 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등록부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면서 위원회 회원의 기를 게양한 어선들
- 나.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어선들
- 다. 자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용수역에 순찰 선박을 파견하지 않은 회원의 어선들
- 라. 선상에 옵서버가 없는 어선들
- 마. 대형 참치 어선들
- 바. 국제협정 또는 어느 나라의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해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어선들

11. 위원회는 이 절차의 이행을 계속 재검토한다.

참여

12. 위원회는 권한 있는 모든 검색선, 당국 또는 검색관의 등록부를 유지한다. 오직 위원회의 등록부에 등록된 선박, 당국 또는 검색관만이 이 절차에 따라 협약수역내의 공해에서 외국의 기를 게양한 어선을 승선검색 할 권한을 갖는다.

13. 이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사무국장을 통해 위원회에 그러한 의사를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 가. 이 절차에 따라 각 회원이 승선검색활동을 하도록 지정한 각 검색선과 관련하여는
 - (1) 선박의 세부사항(선박명, 제원, 사진, 등록 번호, 등록항(그리고, 등록항과 다를 경우, 선체에 표시된 항구),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통신 능력
 - (2) 해당 검색선이 정부업무 수행중인 것으로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확인될 수 있다는 통지

(3) 승무원이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상에서의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고 수료했다는 통지

나. 이 절차에 따라 각 회원이 지정한 검색관과 관련하여는

(1) 승선검색을 책임지는 당국의 이름

(2) 그러한 당국의 검색관이 검색될 어업활동과 협약의 각 규정 및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잘 알고 있다는 통지

(3) 그러한 당국의 검색관이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상에서의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훈련을 받았고 수료했다는 통지

14. 군함이 승선검색을 행하는 선박으로 사용되는 경우 선박검색당국은 승선검색이 어업단속절차에 관하여 완전히 훈련받았거나 또는 국내법에 의해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러한 검색관은 이 절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한다.

15. 제13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통보한 권한 있는 검색선 및 검색관은, 일단 사무국장이 그들이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경우 위원회 등록부에 포함된다.

16. 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 효과를 증진시키고, 최대한 훈련받은 검색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다른 계약당사자의 검색선에 권한 있는 검색관을 배치할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양자간 약정을 체결할 것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절차를 이행할 목적으로 양자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촉진시켜야만 한다.

17. 사무국장은 권한 있는 검색선, 당국 또는 검색관의 등록부가 항시 이 위원회 모든 회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부에 어떠한 변경사항도 즉시 회람할 것을 보장한다. 갱신된 목록은 위원회 웹사이트에 기재된다. 위원회의 각 회원은 이들 목록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의 각 어선에 배포되도록 보장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절차

18. 권한 있는 검색선은 위원회가 고안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검색기를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계양한다.

19. 권한 있는 검색관은 검색관이 위원회의 후원하에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 승선 검색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승인된 신분증을 소지한다.

20.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했다고 보고되어지는 어선을 공해상에서 승선검색할 의도가 있는 권한있는 검색선은 승선검색을 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파, 적절한 국제 신호 코드 또는 그 외 해당 선박에 경고를 주는 다른 수락된 방법을 통해 어선과 교신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나. 해당 검색선이 권한있는 검색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 주파수

다. 위원회의 허가 및 이 절차에 따라 선박을 승선검색할 의도를 선박의 선장에게 통보한다.

라. 선박 검색 당국을 통해 해당 어선 당국으로 승선검색을 통보하기 시작한다.

21. 이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을 수행함에 있어, 권한 있는 검색선 및 검색관은 해당 어선의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만일, 해당 선박의 선장과 검색관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색관은 사무국에 의해 준비되고 권한있는 검색선 및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배포될 표준화된 다언어 질문서의 관련 부분을 사용한다.

22. 권한 있는 검색관은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의 입증에 필요한 해당 선박,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 그리고 모든 관련 문서를 검색할 권한을 갖는다.

23. 이 절차에 따른 승선 및 검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어선 및 승무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람직한 항해술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나. 가능한 한 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적절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 다. 어획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 라. 어선, 어선의 사관이나 선원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24. 승선검색을 수행함에 있어 권한 있는 검색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선박의 선장에게 신분증과 공해의 관련수역에서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사본을 제시한다.
- 나. 선장이 어선의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다. 중대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4시간 이내에 선박의 검색을 종료한다.
- 라. 검색관들이 보기에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조치의 위반을 나타내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명확하게 기록을 한다.
- 마. 해당 선박을 떠나기 전, 선장이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어떠한 반대 의견이나 진술을 포함한 승선검색 중간보고서의 사본을 선장에게 제공한다.
- 바. 검색 완료 후 신속히 해당 선박을 떠난다.
- 사. 제30조에 따라 어선의 당국에게 선장의 진술을 포함한 완전한 승선검색 보고서를 제공한다.

25. 승선검색을 수행하는 동안, 해당 어선의 선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권한 있는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람직한 항해술 원칙을 따른다.
- 나. 권한 있는 검색관의 안전하고 신속한 승선을 받아들이고 촉진한다.
- 다. 이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의 검색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 라. 검색관이 그들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격, 저항, 위협, 간섭 또는 부적절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 마. 검색관이 검색받는 어선의 당국 뿐 아니라,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 바. 적절한 경우, 그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
- 사. 검색관의 안전한 하선을 돕는다.

26. 만약 어선의 선장이 이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검색관의 승선검색 수행을 허가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선장은 그러한 거절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선박검색 당국은 선장의 거절 및 설명을 위원회 뿐 아니라 해당 어선의 당국에도 즉시 통지한다.

27.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정, 절차 및 실행에 따라 승선검색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어선의 당국은 선장이 승선검색에 순응토록 지시한다. 만약 그러한 지시에 선장이 불응한 경우, 해당 회원은 선박의 조업허가를 중지하고 해당 선박이 즉시 항구로 귀항하도록 명령한다. 해당 회원은 이러한 상황에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즉시 통지한다.

무력의 사용

28. 무력의 사용은 검색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때 및 필요한 정도까지 그리고 검색관이 그들의 의무를 집행함에 있어 방해를 받는 장소를 제외하고 회피된다. 사용되는 무력의 정도는 해당 상황에서의 합리적으로 요청되어지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29. 무력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위원회 뿐 아니라 해당 어선의 당국에도 즉시 보고된다.

검색 보고서

30. 권한 있는 검색관은, 이 절차에 따라 수행한 각각의 승선검색의 정식 보고서를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준비한다. 승선검색을 수행한 선박검색 당국은, 승선검색 완료시점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위원회 뿐 아니라 검색을 받은

해당 어선의 당국에도 승선검색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이러한 시간 틀 이내에 선박검색 당국이 해당 어선의 당국에 그 같은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해당 어선의 당국에 이를 통지하고, 보고서가 제공되어질 시기를 알린다.

31. 그러한 보고서는 검색관의 이름 및 당국을 포함하고, 권한 있는 검색관이 협약 또는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위반으로 간주한 모든 관찰된 활동 또는 상황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한 특정의 사실적 증거의 특성을 표시한다.

중대한 위반

32. 어선을 승선검색하는 모든 경우, 제37조의 정의에 따라 권한 있는 검색관이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활동 또는 상황을 관찰하는 동안 해당 선박검색의 당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당 어선의 당국에 즉각 통지한다.

33. 해당 어선의 당국은 제3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사를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며, 근거가 분명하다면 문제의 해당 선박에 집행조치를 취하고, 위원회 뿐 아니라 선박검색 당국에도 이를 통보한다. 혹은,

나. 검색 당국이 있을 수 있는 위반의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원회에 알린다.

34. 위의 제33조 가항의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권한 있는 검색관이 수집한 특정 증거를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어선의 당국에 제공한다.

35. 위의 제33조 나항의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조사종료 즉시 권한 있는 검색관이 수집한 명확한 증거를 그들의 조사결과와 함께 해당 어선의 당국에 제공한다.

36. 어선의 당국은 제32조에 따른 통보를 받고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3 근무일 이내에 응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7. 이 절차의 목적상 중대한 위반이란, 협약의 각 규정 또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사항 중 다음의 위반을 의미한다.

- 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기국이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하는 조업
- 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획량 및/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의 중대한 오보
- 다. 금어 구역에서의 조업
- 라. 금어기중 조업
- 마.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모든 적용 가능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어종의 고의적 어획 또는 어획물 보유
- 바.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어획량 제한 또는 할당량의 중대한 위반
- 사. 금지된 어구의 사용
 - 아.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하는 것
 - 자.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 또는 손상하거나 폐기하는 것
- 차. 협약에 따라 발효중인 조치들의 중대한 무시를 구성하는 중복 위반
- 카.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것 외에 승선검색 수락의 거절
- 타. 권한 있는 검색관에 대한 공격, 저항, 위협, 성적학대, 간섭 또는 부적절한 방해 또는 지연
- 파. 선박감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손상 시키거나 무력하게 하는 것
- 하. 위원회가 결정할 그 외의 다른 위반으로서 이 절차의 수정안에 포함되어 지고 배포되어지는 위반사항

집행

38. 협약 또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 발효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어선과 관련하여 이 절차에 따른 승선검색의 결과로 얻어진 모든 증거는 해당 어선의 당국에 협약의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참조된다.

39. 이 절차의 목적상 해당 어선의 당국은, 자국의 어선, 선장 또는 승무원에 의한 권한 있는 검색선 또는 검색관에 대한 간섭을 자국의 배타적 관할지역 내에서 발

생하는 다른 모든 간섭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례 보고서

40. 검색선박이 이 절차에 따라 활동하도록 허가한 계약당사자는 매년 관찰된 가능한 위반뿐만 아니라 자국의 권한 있는 검색선에 의해 수행된 승선검색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41. 위원회 회원은 협약 제25조 8항에 따른 위원회 연례 보고서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내용에 제도화된 절차 및 적용된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위반혐의 어선에 대한 승선검색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기타 조항

42. 이 절차 실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권한 있는 검색선은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조업 하는 비회원 어선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감시에 착수한다. 신원이 확인된 그러한 선박은 모두 위원회에 즉시 보고된다.

43. 권한 있는 검색선은 제42조에 따라 확인된 모든 어선에게 협약의 효과를 침해하고 있는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었거나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문제가 되는 해당 선박의 기국과 위원회 회원들에게 배포됨을 알리기를 시도한다.

44. 만약 근거가 있다면, 권한있는 검색관은 해당 어선 그리고/또는 선박의 기국으로부터 제42조에 따라서 확인된 어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이 승선에 동의한다면, 뒤따르는 모든 검색의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전송된다. 사무국장은 해당 어선의 기국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 회원들에게도 이 정보를 배포한다.

45. 그러한 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초과할 때, 계약당사자는 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자국의 조치로부터 기인한 손상 혹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위원회 조정 및 감독

46. 동일한 조업수역에 있는 권한 있는 검색선들은 이 절차에 따라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찰하는 구역, 목격한 것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승선검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교신망의 수립을 추구하여야 한다.

47. 위원회는, 회원이 보고하는 이 절차와 관련된 연례보고서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이 절차의 이행과 운영에 대해 계속적으로 재검토한다. 이 절차의 적용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은 권한 있는 검색관 및 검색선의 최적 이용을 다음과 같이 촉진할 수 있다.

- 가. 이 절차에 따른 승선검색을 위하여 지역 그리고/또는 어업별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
- 나. 공해상 승선검색이 협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감시·감독·수색의 방법들과 완전히 통합됨을 보장하는 것
- 다. 계약당사자들이 발생 가능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 조사할 기회를 훼손시키지 않고, 공해상에서 위원회 회원 어선들을 차별없이 공평하게 승선검색하도록 보장 하는 것, 그리고
- 라. 자국의 어선, 특히 자국 관할수역에 인접한 공해까지 확장하여 조업하는 소형어선에 의한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원이 맡은 공해상 집행단속자원을 고려함.

의견이 다를 경우 해결

48. 이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이견 해결을 위한 시도로 협의를 한다.

49. 만일 뒤따르는 협의에도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관계 당사자들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술이행위원회는 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이견이 있는 당사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다섯명의 대표로 이루어진 패널을 설립한다.

50. 이견에 대한 보고서는 패널에 의해 작성되어 그 사건이 검토될 기술이행위원회 회의로부터 2달 이내에 기술이행위원회 의장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송부된다.

51. 그러한 보고서를 받은 즉시,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들의 고려를 위해 이견에 관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52. 이견의 해결을 위한 이 규정들의 적용은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보존관리조치2007-01

2007. 12. 7 채택

2008. 2. 5 발효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확인된 어획자료를 수입하고,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읍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협약(협약) 제28조 제1항을 상기하며,

또한 위원회가 지역읍서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한 협약 제28조 제7항을 상기하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읍서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절차를 수립한 보존관리조치 2006-07을 인식하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읍서버프로그램(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 수립을 위하여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음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의 수립

1. 위원회의 사무국에 의하여 조정될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설립한다.
2. 위원회 읍서버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이행단계는 부속서 C에 첨부되어있다.
3.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의 목적

4.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의 목적은 확인된 어획자료, 기타 과학자료 및 협약수역의 어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위원회 읍서버프로그램의 범위

5.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은 위원회 보존관리조치 2004-01에 따라 협약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어선에 대하여 적용된다.

- i) 협약수역의 공해에서만 조업하는 선박
- ii) 공해와 하나 이상의 연안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및 둘 이상의 연안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읍서버의 역할

6.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읍서버의 역할은 어획자료 및 기타 과학자료의 수집,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 이행의 감시 및 위원회가 승인한 어업에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선박이 기국의 관할수역과 인근 공해에서 동일한 조업여정으로 조업중인 때, 위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치된 읍서버는 기국의 동의 없이는 기국의 관할수역내에서 읍서버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위원회 CCM의 의무

7. 위원회의 각 CCM은 기국의 관할수역내에서만 조업중인 선박을 제외하고 협약수역내 조업중인 어선은 위원회가 요구한다면 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으로부터 읍서버를 받을 준비를 한다.

8. 위원회의 각 CCM은 위원회가 정한 읍서버 승선율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9. CCM은 위원회가 정한대로 자국 선박에 승선할 읍서버를 채용한다.

10. CCM은 선장에게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조치에 적합한 읍서버의 의무를 설명한다.

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의 역할

11. 위원회는 그 보조기구를 통하여 그 보조기구의 권능이내에서 읍서버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읍서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개발하고 읍서버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읍서버 프로그램의 행정과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무국의 역할

12. 협약 제15조 제4항과 일치하여, 사무국의 역할은

- a) 무엇보다도 다음을 포함하여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활동을 조정한다.
 - i) ROP 매뉴얼 및 읍서버 작업서를 유지
 - ii) ROP에 참여하는 기존의 국가 프로그램 및 소지역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iii) 통신을 하고, 목표 및 성취한 읍서버 승선을 수준을 포함한 ROP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그리고 그 보조기관)에 제공하는 것.
 - iv) 지시 받은대로 그리고 적절하게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ROP 활동을 조정
 - v) ROP에서 승인된 읍서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
 - vi) ROP 읍서버들이 위원회가 채택한 표준의 유지를 증진하도록 읍서버 교관 및 훈련과정을 감시
 - vii) ROP는 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감시 필요사항 및 자료를 다룬다.
 - viii)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의 감시를 위한 적절한 정보 및 자료를 ROP에 의하여 수집하고 서류철을 하고 저장하고 배포한다
 - ix) 위원회가 지시한 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읍서버를 관리하고 행정처리
 - x) 효과적으로 ROP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지원

b) ROP 읍서버 공급자를 승인

연안국의 역할

13. 각 CCM은 ROP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접촉창구가 될 WCPFC 국가 읍서버 조정자를 지명한다.

위원회 ROP의 지도 원칙

14. 위원회 ROP는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i) 위원회 ROP는 위원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받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읍서버로 구성한다.
- ii) 주로 연안에서 그러나 때때로 인근 공해에서 도는 이웃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만일 그들이 합의한다면, 그리고 사무국이 이들 읍서버를 승인하였다면 자국 국적의 읍서버를 승선시킬 수 있다.¹

¹ 본 조치 제13(c)조의 전제는 2011년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iii) 위원회 ROP는 협약수역의 어업의 특성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 iv) 비용 효과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회 ROP는 최대 가능한 정도까지 다른 지역적, 소지역적 및 국가 읍서버 프로그램과 조화되며, 그리고 이 정도까지 위원회는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한 계약 또는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v) 위원회 ROP는 위원회가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수역내에서 어획 수준에 관한 적절한 자료 및 정보 및 어업에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충분한 수준의 읍서버 승선율을 규정한다.
- vi) 읍서버는 선박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적절하게 방해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협약수역내에서 선박의 조업을 방해를 최소화한다. 읍서버는 읍서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지침, 부속서 A를 준수한다.
- vii) 읍서버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부적절하게 방해받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운영된다. 이러한 정도까지, CCM은 선박 운영자가 부속서 B의 지침 - 선박운영자, 선장 및 승무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 - 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 viii) 위원회 ROP는 세분자료 및 위원회가 비밀성격이라 간주하는 다른 정보의 안전 및 비밀을 확보하며, 위원회 ROP에 의하여 수집될 자료 및 다른 정보의 공개는 위원회가 수립한 자료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옵서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지침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협약 제3조 부속서 III 및 제28조에 따라 옵서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다음 지침은 위원회 ROP에 따라 옵서버가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적용된다.

1. 옵서버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옵서버는 그의 또는 그녀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교, 선상의 어류, 어류를 보관, 가공, 계량 및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역의 완전한 접근을 포함하여 선박의 모든 시설 및 장비에 완전한 접근 및 사용
- b) 기록의 검사 및 복사를 목적으로 조업일지, 서류를 포함한 선박의 기록에 완전한 접근, 항해 장비, 해도 및 무선방송에 합리적인 접근 및 어업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합리적인 접근
- c) 요구하는 경우, 출입, 전송 및 작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신을 위하여 통신 장비 및 관련 직원의 접근 및 이용
- d) 승선해 있는 동안 옵서버의 임무이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만일 있다면, 고성능 쌍안경, 전자적 통신수단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장비의 접근
- e) 그물 또는 낚시줄 회수중 갑판작업에 대한 접근 및 샘플을 수집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또는 죽은) 표본에 대한 접근
- f) 만일 옵서버가 특별히 통지하지 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인망 또는 그물 전개 절차에 앞서 적어도 15분전에 선장에 의한 통고
- g) 선상의 사관에게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과 동등한 합리적인 수준의 음식, 숙박, 의료시설 및 위생시설에 접근
- h) 사무작업을 위해 선교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 적당한 공간의 제공 및 옵서버 의무를 위한 갑판상에 적절한 공간의 제공
- i) 옵서버 의무 수행에 있어 모욕, 방해, 저항, 연기, 위협 또는 간섭받지 않고 의무를 수행할 자유

2. 옵서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위원회가 설정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 b) 선박 및 선박 소유자의 조업과 관련하여 합의된 비밀 규칙 및 절차의 수락 및 준수
- c) ROP 의무수행중인 동안 항상 독립성 및 공정성 유지

- d) 선상에서 ROP 의무를 수행하는 읍서버를 위한 ROP 규정의 준수
- e)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CCM의 법과 규칙의 준수
- f) 선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행동규칙 및 위계질서 존중
- g) 선박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적절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선박의 조업상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고 선장 또는 그 선박의 어로장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h) 구멍 뚫목, 소화기 및 긴급 구조품목의 위치를 포함하여 선상에서의 긴급절차와 친숙하기
- i) 읍서버의 관련문제 및 의무에 관하여 선장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j) 승무원의 민족 전통 및 선박 기국의 관습 준수
- k) 읍서버 ROP 행동규칙의 준수
- l)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 또는 국가 프로그램에 보고서를 써서 제출

선박 운영자, 선장 및 승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관리협약 제3조 부속서 III 및 제28조에 따라 선박 운영자, 선장 및 승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은 위원회 ROP에 따라 읍서버가 선박 승선하는 동안 적용된다.

선박운영자 및 선장의 권리와 책임

1. 선박 운영자 및 선장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읍서버 배치에 앞서 이 사실을 합리적인 기간 전에 통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 b) 읍서버가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CCM의 일반적인 행동 규칙, 위계질서 및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
 - c) 읍서버 승하선 완료에 관하여 읍서버 공급자로무부 선박 운영과 관련한 모든 논평을 적기에 통보. 선장은 읍서버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평할 권리를 가지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개인적 진술을 포함할 권리를 가진다.
 - d) 읍서버의 승선 및 필요한 의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간섭없이 선박의 합법적인 운영할 권능
 - e) 읍서버가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자기의 재량으로 읍서버를 수행할 선박의 승무원을 지명할 권능
2. 선박 운영자 및 선장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위원회가 요구한 ROP상의 읍서버로서 확인된 어떠한 사람이라도 선박에 승선을 받아들임.
 - b) 승무원에게 ROP 읍서버 승선시기와 ROP 읍서버가 승선하였을 때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는 것.
 - c) ROP 읍서버가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안전하게 승하선하도록 지원
 - d) 만일 읍서버가 특별히 알리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ROP 읍서버에게 선상에서 그물을 전개하거나 끌어올리기 시작전 적어도 15분전에 알릴 책임.
 - e) ROP 읍서버가 안전하게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을 허용하고 지원할 책임.
 - f) ROP 읍서버가 기록검색 및 복사의 목적으로 선박의 조업일지, 서류를 포함

- 하여 선박의 기록에 완전한 접근을 허용
- g) 항해장비, 해도 및 무선통신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 및 어업과 관련된 다른 정보에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
 - h) 선상에서 ROP 읍서버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성능 쌍안경, 전자통신수단 등 만일 있다면 추가적인 장비에 접근의 허용
 - i) 읍서버가 어획물로부터 샘플을 선택하고 저장하도록 허용하고 지원
 - j) 선상에서 읍서버, 읍서버 공급자 또는 정부의 비용 부담없이 읍서버에게 선상 사관에게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같은 음식, 숙박, 적절한 위생 및 의료시설의 공급
 - k) 선상에서 읍서버의 승선기간동안 읍서버에게 보험을 제공
 - l) 어류를 보관, 가공, 계체 및 저장할 수 있는 선교, 선상어류 및 지역을 포함하여 읍서버가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선박의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완전한 접근 및 이용을 허용하고 지원
 - m) 읍서버가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격, 방해, 저지, 연기, 위협, 간섭받지 않고, 뇌물제공 또는 뇌물제공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장

승무원의 권리와 책임

3. 승무원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읍서버가 일반 행동규칙, 계급 및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CCM의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
 - b) 합리적인 기간전에 읍서버 배치에 관한 통지를 선장으로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기대
 - c) 승무원 개인의 영역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 d) 읍서버의 참여나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간섭없이 정상적인 조업활동과 관련한 의무를 수행할 권능

4. 승무원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읍서버를 공격, 방해, 저항, 위협, 영향력을 행사 또는 간섭하지 않고 읍서버 임수수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 b) 협약, 기타 지침, 규정 또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CCM에 의하여 수립된 조건에 따라 설립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다.
 - c) 선교, 선상 어류 및 어류를 보관, 가공, 계체 및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역을 포함하여 읍서버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완전한 접근 및 이용의 허용 및 지원

- d) 읍서버가 모든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도록 허용 및 지원
- e) 읍서버가 어획물에서 샘플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을 허용 및 지원
- f) 읍서버 의무와 관련하여 선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

ROP 읍서버 프로그램의 이행

1. 이 조치가 발효할 때, CCM은 WCPFC4에서 채택한 조치에 따라서 이미 이 지역에서 운영중인 소지역적 및 국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ROP의 이행을 시작한다. CCM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2. 위원회의 지침에서 IWG-ROP는 ROP의 기본구조 및 중요한 요소들(예를 들면, 읍서버 승선율을 위한 최소 선박크기의 결정, 훈련 및 읍서버 인증, 읍서버의 역할 및 책임, 자료 필요조건, 비용문제 및 승선율의 수준을 표현하는 적절한 노력단위)을 계속하여 개발한다.
3. 2008년의 약정은 위원회가 추후 ROP를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4. 2008년 12월 31일 이전:

기존의 소지역프로그램 및 국가 프로그램은 ROP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것이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이들 읍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 자료로 간주된다.
5. 2009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중에
위원회는 IWG-ROP,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재검토할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 ROP의 적용을 포함하여 ROP를 다시 정비한다.
6. 2012년 6월 30일 전에 위원회 관할하에 각 어업 노력의 5% 승선율(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된 선박을 제외하고)을 달성한다. 읍서버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세부 계획은 조업항차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7.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의 2012년 연례회의에서 ROP에 의하여 생산된 자료는 검토되어지며 그리고 이들 보조기구는 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연례적으로 ROP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한다. ROP의 요소중에서 검토되어질 것은 초기에 ROP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선박에 관한 제10항의 규정이다.

8. CCM은 또한 어획물 보유조치, FAD 관리조치 또는 환적 조치와 같이 WCPFC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조치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ROP 의무를 충족하도록 기대된다. 그러한 조치는 냉장선 연승선, 선망선 및 운반선을 위한 옵서버 필요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특수 환경

9. 신선어류²를 배타적으로 어획하는 어선

- i) 2008년도 연례회의에서 북방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ROP의 이행을 고려한다.
- ii) 위원회의 2010년 연례회의에서 북방위원회는 북위 20도 이북 수역에서 신선어류를 조업하는 어선에 의한 ROP 이행에 관하여 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 iii) 북방위원회의 권고사항은 2014년 12월 31일 전에 북위 20도 이북수역에서 신선어류를 어획하는 선박에 의한 ROP 이행 날짜를 규정한다.

10. 다음선박의 이행일정은 연기된다.

- i) 소형선박, 소형선박의 최소크기는 2008년도에 위원회에 권고하기 위하여 IWG-ROP에 의하여 고려될 것이다.
- ii) 가다랑어 또는 날개다랑어를 어획하는 끝낚시 및 낚시선(IWG-ROP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계획된)

2 이 조치의 목적상, “신선어류”는 북위 20도 이북 수역에서 살아있는, 전체 또는 드레스된/내장 제거된 그러나 더 가공되지 않거나 또는 냉동되지 않는 고도 회유성 어족을 의미한다.

6. 위원회 선박감시시스템(VMS)

보존관리조치 2007-02

2007. 12. 7 채택

2008. 2. 5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협약의 관련조항, 특히 제3조 및 제24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상기하며,

협약수역내 고도회유성자원의 보존관리 목적 및 조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단으로써 VMS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위원회 회원, 협력적 비회원 및 참여속령(CCMs)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여,

VMS는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및 보안성, VMS의 효율성, 비용효과성 및 융통성을 포함하는 주요 원칙에 근거함을 명심하여,

WCPFC 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WCPFC VMS(위원회 VMS)의 이행과 관련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한다,

1. 위원회 VMS

2. 동 시스템은 2008년 1월 1일자로 협약수역내 북위 20도 이남 수역 및 동경 175도 이남 수역내에서 작동을 시작한다.

3. 북위 20도 이북과 동경 175도 이서 수역내 동 시스템의 작동일자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4. 북위 20도 이북수역 및 동경 175도 이서로 이동하는 제2항에 설명된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고도회유성어족을 어획하는 어선은 자동위치발신기를 작동시키고 이 보존관리조치에 따라서 위원회에 계속 보고한다.

5. 용어정의

- 가. “자동위치발신기(ALC)” : 실시간에 가까운(near real-time) 위성 위치확인발신기
- 나. “FFA 사무국” : 솔로몬, 호니아라 소재 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사무국
- 다. “FFA VMS” : FFA 사무국 및 FFA 회원들이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VMS

6. 적용가능성

- 가. 위원회 VMS는 협약수역내 공해상에서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을 어획 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 나. 길이 24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어선은 2008년 1월 1일자로 작동해야 하며, 길이 24미터 이하인 모든 선박은 2009년 1월 1일자로 작동해야 한다.
- 다. 모든 CCM은 자국 관할수역이 위원회 VMS가 규율하는 수역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VMS에 그러한 수역을 포함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경비는 그러한 요청을 한 CCM이 부담한다.

7. 위원회 VMS의 특성 및 세부사항

- 가. 위원회 VMS는 독자적인(stand-alone) 시스템이어야 한다.
 - 위원회의 지침하에 WCPFC 사무국이 개발 및 관리하며, 협약수역 내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신하고, 또한
 - FFA VMS로부터 전송된 VMS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을 통하여 협약수역내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도 FFA VMS를 통하여 자료를 보고할 선택권이 있다.
- 나. 위원회는 위원회 VMS의 운영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개발하며 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요구되는 자료의 명세, 보고양식 및 보고주기를 포함한 선박의 보고
 - 폴링 규정
 - ALC 고장시 대안
 - 비용회수
 - 비용공동부담
 - 위조 방지 조치 및

· 어선, CCMs, FFA사무국 및 위원회 사무국의 의무와 기능

다. 위원회는 WCPFC 정보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VMS 자료의 보안 기준을 개발한다.

라. 위원회 VMS에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CCM의 어선들은 ALC에 관한 위원회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작동중인 ALC를 사용 한다.

마. 위원회 VMS에 사용되는 ALC 최소기준은 부속서 1에 첨부된다.

8. 이러한 기준, 세부기술사항 및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는 개도국 전통어선의 특성을 고려한다.

9. CCMs의 의무

가. 각 기국 CCM은 협약수역내 공해상 어선이 위원회 VMS를 목적으로 위원회가 수립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원회가 결정한 자료를 전달하는 ALC를 장착하도록 보장한다.

나. CCM은 국가 VMS 및 공해 VMS간의 양립성 보장을 위해 협력한다.

10.검토

이행 2년후, 위원회는 동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고, 요구되는 바에 따라 계속해서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한다.

부속서 1 :위원회 VMS에서 사용되는 자동위치발신기(ALC) 최소기준(안)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자원보존관리협약(이하 “협약”) 제24조 제8항에 의거, 위원회는 ALC에 관한 최소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한다.

1.ALC는 선박에 관하여 자동적으로 및 어떠한 간섭없이 아래의 자료를 전송한다.

- 가. 고정된 ALC 고유확인번호
- 나. 선박의 현 지리적 위치(경/위도) 및
- 다. 위 나 항의 선박위치 일시(UTC)

2. 위 1항의 나 및 다에 언급된 자료는 위성위치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되어야 한다.

3. 어선에 장착된 ALC는 위 1항에 명시된 자료를 한시간 간격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위 1항에 언급된 자료는 ALC의 자료생성 90분 이내에 위원회에 전송되어야 한다.

5. 어선에 장착된 ALC는 위 1항에 명시된 자료의 보안성(security)과 온전성(integrity)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6. ALC내 정보의 저장은 정상적인 작동하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7. 감시당국 이외의 어느 누구도, 감시당국에 대한 위치보고 주기를 포함하여 ALC에 저장된 그러한 감시당국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서는 안된다.

8.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ALC 또는 터미널 소프트웨어에 생성된 어떠한 특정부분도 VMS의 작동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ALC내 모든 영역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가능케 해서는 안된다. .

9. ALC는 제조자의 설명과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선박에 장착되어야 한다.

10. 정상적인 위성항행활동상태에서, 전송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위치는 100미터 범위(DRMS)내 정확성을 가져야 하며, 즉 위치의 98%가 이 범위내 있어야 한다.
11. ALC 및/또는 전송서비스제공자는 자료가 복수의 독립적인 수신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2. 위성항행해독기 및 발신기는 충분히 온전해야 하며, 동일한 위조방지 통합장치에 보관되어야 한다. .
13. 안테나가 이러한 통합장치로부터 분리되어 세워진 경우, 한 개의 공통 안테나가 위성항행해독기 및 발신기를 위해 사용되며, 그러한 통합장치는 한 개의 깨어지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테나에 연결되어야 한다.

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선박감시시스템 표준, 사양 및 규칙(SSP)

2008. 12. 12. 채택

협약수역 내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WCPFC는 중서부태평양에서의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약 제24조 8항에 따라 그리고 그 이후 제4차 연례회의에서 보존관리조치 2007-02가 채택됨으로써 선박감시시스템(VMS)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조치의 부속서 1에서는 일반적 장비, 위치의 정확성 및 보고 주기 및 데이터 제출 시기 등에 관해 VMS의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사양을 설명하고 있다.

본 규칙의 목적은 자동위치발신기(ALC: FFA의 이동 송수신기/발신기 또는 MTU와 동일)가 부속서 1의 기준, 검사 규정, 플링규정, 보고 주기, 조작 방지 조치 및 조업 선박, CCM,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사무국과 위원회 사무국의 의무와 역할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VMS의 시행에 관련된 조건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1. 적용

본 규칙은 협약 수역 내 공해에서의 WCPFC의 VMS에 적용된다. 국가 관할 수역 내에서의 VMS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SSP는 연안국의 배타적 책임에 속한다.

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표준에 맞는 자동위치발신기(ALC)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1. WCPFC 협약 수역에서의 위원회 VMS 적용을 받는 선박은 CMM2007-02의 부속서 1(이후 부속서 1로 표기함)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표준을 전적으로 충족하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ALC를 장착해야 할 것이다.

2. ALC의 설치 및 사용은 본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하여 위원회에 의해 채택 및 공표된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3. 부속서 1에서 명시된 최소한의 표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만 원거리에서의 수신이 불가능한 ALC를 장착한 선박은 1시간 또는 그 이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거나 ALC 외에 필요시 기국 CCM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WCPFC 사무국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음성 (예를 들어 라디오, 위성 전화) 또는 데이터 (텔레텍스, 팩스, 이메일)에 의한 양방향 통신 수단을 설치, 작동시켜야 한다.

4. VMS의 등록시 상기의 제3항에서 설명한 양방향 통신 수단을 장착한 선박은 관련 사용자 ID와 사무국이 선박과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와 함께 해당 통신 수단에 대해 통지한다.

5. 부속서 1의 요구 사항의 이행 확인은 선박의 기국 CCM의 책임에 속한다.

6. 승인된 ALC의 초기 목록을 준비함에 있어 WCPFC 사무국은 기존의 지역 및 소지역 VMS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목록과 CCM들이 승인한 목록을 고려한다.

7. 사무국은 CCM과 장비 제조업자 양측으로부터의 본 목록에 있는 추가 ALC 품명과 모델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평가한다. 유형 승인 과정 비용은 제안한 주체가 부담하며 ALC의 승인은 적절한 경우 FFA가 수립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CMM 2007-02의 부속서1에 명시된 위원회 VMS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WCPFC SSP를 기준으로 ALC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8. 사무국은 위원회의 V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위원회 VMS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는 각 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CCM이 위원회의 VM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에는 선박 명, 선박 고유번호 (UVI),¹ 무선통신부호, 길이, 등록된 총톤수, KW/마력으로 표기된 엔진 동력, 어구 유형 및 위원회 VMS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ALC의 품명, 모델, 고유 네트워크 ID (사용자 ID) 및 장비 식별 기호 (제조업자의 일련 번호)가 포함된다.

9. 부속서 1에서 명시된 특이 사항 및 기준이 준수되고 있고 조작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CCM들은 설치된 ALC의 샘플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 활동을 수행한다.

10. 연례적으로 계획되는 감사 활동의 횟수는 비용/혜택, 제반 상황 및 실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1. 감사 활동이 CCM 국가의 수산 법률에 따라 현재 승인된 당국자 등과 같

1 필요 시 위원회가 채택

은 적격한 검사관에 의해 수행되도록 보장 하는 것은 CCM의 책임이다.

12. 감사 결과는 ALC 위치 정확성 평가, 발신기와 데이터의 수신 사이의 경과 시간 및 검사관이 발견한 물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연결 상태, 전력 공급, 조작 증거)을 포함한다.

13. 감사 결과는 CCM들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제2부에 포함되고 사무국은 이러한 결과를 모아 VMS 감사 보고 문서를 만든다.

14. 또한 WCPFC 사무국 또는 사무국에서 임명한 자는 각각의 ALC의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사무국의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임의 재량에 따라 어떠한 CCM의 ALC에 대해서도 감사 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검사는 각 선박에 관한 데이터 파일의 분석에 따라 실행된다. 결과 보고서는 기술이행위원회(TCC)를 통해 위원회에 공개된다.

3. 자동위치발신기(ALC) 검사 규정

1. 협약 수역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은 선박의 승선 검색 시 EEZ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공해에서는 CMM-2006-08에 따라 ALC 검사가 수행된다.

2. 승선 시 선장은 검색을 위한 수산 관리 또는 검사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안테나, 커넥터 및 안테나 케이블을 포함하여 ALC 장치가 검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승인된 관리 또는 검사관이 ALC 장치, 안테나 및 커넥터로 접근하는 것을 선장이 막을 경우 이를 관련된 기국 CCM과 사무국에 즉시 알린다. 기국은 선박이 즉시 응할 것을 지시한다. 이를 거부하는 선박은 기국 또는 용선 허가국의 지시에 따라 항구로 즉시 귀항하여 논란이 되는 장비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받는다.

4.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국에 의해 협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권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승선 검색 중 선장의 책임에 관해서는 CMM-2006-08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5. 매 검색에 따라 발행된 보고서는 ALC 장비와 설치가 부속서 1에서 명시된 특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선장

에게도 주어지며 선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국에게도 전달된다.

6. 검색선이 제품사양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관은 기국 CCM, 사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용선 허가국에 이를 알린다. 그 날로부터 선박 운영자는 3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여 설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이 동안 선박은 사무국에서 승인한 대체 통신 수단을 통해 4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검색 당국은 각 검사 보고서를 CMM-2006-08과 협약의 제25조에 명시된 대로 선박의 기국 CCM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폴링 및 폴링할 수 없는 ALC 장치의 보고에 관한 규칙

1. WCPFC 감독 당국이 선박의 현 위치를 요청하면 송신 후 90분 이내에 위도 및 경도에 따른 선박 위치, 메시지 전송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답해야 한다.

2. 위원회 VMS에 보고하기 위해 ARGOS 시스템을 사용하는 ALC 장착 선박의 경우 위원회 VMS는 ARGOS의 독점적 위치 확인 시스템을 선박의 ALC에 의해 제공되는 GPS로 계산된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5. 위치 보고 주기 등 선박의 보고사항

1. 부속서 1에 따라 위원회의 VMS를 준수해야 하는 선박에 장착된 ALC는 매 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어업, 적용 가능한 보존관리조치에 맞게 또는 감독, 통제, 감시 목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DNID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선박 운영자로부터 서면 허가서를 요청한다. 선박 운영자가 그러한 허가서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 선박의 조업 허가는 관련 기국 CCM에 의해 중지될 수 있다.

3. [위원회 VMS는 선박이 협약 수역의 공해 수역 출입 시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원회 VMS 선박은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의 VMS에 보고해야 하며 협약 수역에서 나올 때 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ALC가 작동되지 않거나 고장이 난 경우 수동 시스템을 통해 보고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 보장은 선박의 기국 CCM의 책임에 속한다.]

4. 프로그램된 공해 VMS 위치를 2회 연속 보고 받지 못하고 사무국이 일반적인 VMS 자동 위치 확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치확인이 안 되는 경우 사무국은 선박의 기국 CCM과 선장에게 알린다. CCM에게 통보한 그 시각부터 선장은 자동 보고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느 경우이러도 [30일 이내에 또는 30일 미만일 경우 첫 번째 기항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은 매 [8][4]시간 마다 위치를 수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동 위치 보고 시스템이 30일 이내에 재구축되지 않으면 CCM은 해당 선박이 조업을 중지하고 조업기구를 거둬서 항구로 돌아가도록 명령해야 한다. 선박은 사무국에 의해 ALC가 실행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고 기국 CCM이 사무국에 선박의 자동 보고 시스템이 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알린 후에야 공해에서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5.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기국 CCM은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을 연속 [15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그 동안 선박은 공해에서 매 [4]시간 마다 수동적으로 사무국에 위치를 알린다. 그러한 허가가 주어졌을 경우 기국 CCM은 사무국에 예외적인 상황의 특성에 대해 알리고 자동 보고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제 7.3.9항에 따라 TCC에 제출하는 위원회 VMS의 작동에 관한 사무국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다.

6. 사무국은 수동 보고를 해야 했던 선박과 그 기간에 관한 현 목록을 관리하고 모든 CCM들에게 공개한다.

6.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ALC는 협약 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작동하기 전에 WCPFC의 ALC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ALC 형태 승인 과정 중에 지정된 ALC는 프로세스 장치에 접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뿐 만 아니라 비용, 적합한 시설 및 보안의 질을 고려하여 결정한 물리적인 보안을 CCM에게 제공하는 것은 WCPFC의 책임이다.

4. ALC로부터 위원회의 VMS까지의 데이터 이동은 승인된 원거리 통신 당국

에 의해 제공되는 국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시스템과 실행은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을 위한 현 ISO 가이드라인과 향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표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을 준수한다.

5. 본 규칙 제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사 절차는 ALC의 조작 방지 기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6. 위원회 사무국의 VMS 데이터의 보안은 협약 수역 내 공해의 Confidential VMS 데이터 수호자로서의 사무국의 역할을 반영한다.

7. 모든 보안 기준, 절차 및 관행은 위원회의 정보보안정책(ISP)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사무국 VMS 데이터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접근은 위원회의 정보보안정책(ISP)에 따라 실행된다.

9.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TCC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종합적인 실행 절차 기준은 위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DNID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의 다운로드, 비논리적 데이터(예를 들어 육상에 있는 선박, 과속 등)를 포함하는 보고서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VMS의 비정상적 실행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다.

10. 사무국의 VMS 데이터는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아닌 적격자에 의해 매년 검토된다.

7. 조업 선박, CCM, 서비스 레벨의 공급자 및 WCPFC 사무국의 의무와 역할

7.1 조업 선박의 의무

1. 위원회에서 합의한 추가적인 표준, 사양 및 절차 뿐 아니라 부속서 1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ALC를 등록, 장착하고 지속적으로 작동 시켜야 한다.

2. 공해 또는 항구에 있는 동안 승인된 수산 관리, 검사관 또는 기타 승인된

개인 또는 조직의 지시가 있을 경우 관련 검사 조항에 따라 ALC, 관련 연결 장치 및 안테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한 경우 기국의 도움을 받아 선박과 위원회의 VMS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 통신 장비를 선상에 설치하고 항상 이를 감독한다.

4. 선박의 ALC의 작동을 방해하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기의 제5절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에 모순이 없음을 보장한다.

7.2 CCMs

1. 자국 선박과 운영자가 상기의 제3절에서 설명된 검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해에서의 VMS 데이터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수립된 규정들을 포함하여 부속서 1과 기타 본 규칙을 이행하도록 한다.

2. 상기의 제3절에서 명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결과를 비롯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른 ALC의 검사 결과를 수행하고 보고한다.

3.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와 위원회에서 합의한 본 규칙에 따라 위원회 VMS를 이용한다.

4. 각 검사 결과의 요약을 포함하여 기(flag), 선박 종류 별 ALC 검사 목록을 WCPFC 사무국에 제출한다.

5. CMM-2007-02 및 위원회에서 합의한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연결장치 및 안테나를 포함한 등록된 ALC, 관련 선박(선박 명 및 기)과 선장을 비 준수 사항과 함께 5일 이내에 이메일, 팩스 또는 위원회에서 수립한 데이터 입력 절차를 통해 사무국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각 보고에 대해 회신하고 전송 후 72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통보를 받지 못한 CCM은 접수 되지 않은 보고서를 재전송해야 한다.

6. 적용 가능한 VMS 의무 및 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제재 조치와 벌금을 부과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제재 조치에 대해 보고한다.

7.3 WCPFC 사무국

1. 위원회의 VMS에 일단 기록된 데이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 접근, 변경, 복사 또는 손상되지 않고 또는 위원회의 ISP 및 위원회에서 채택한 AHTG [Data]가 수립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
2. 위원회의 ISP에서 명시된 보안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완전히 유지되고 지원되는 위원회 VMS를 제공한다.
3. V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FA와의 서비스 레벨 협정(SLA)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WCPFC 사무국과 소프트웨어 제공자 간의 외주 VMS 서비스 제공과 VMS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위해 추가적 SLA가 필요할 수 있다.
4. SLA는 Confidentiality, 비공개적, SLA 계약 조항, SLA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효율, 목표 응답 시간, 지원 데스크, 요금 청구, 외주의 VMS 서비스 조항(예를 들어 최전선에서의 ALC 관리)을 포함한다.
5. ALC에서 위원회의 VMS까지의 위치 (및 기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관리한다. 협력적 RFMO에 가입하는 전략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최적의 효율을 협상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한다.
6. 위원회의 VMS를 협약,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 및 위원회에서 채택한 VMS 관련 기타 기준, 특이사항 및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협약 제24(8)조에 따라 연안국의 요청 이외에는 위원회는 연안국이 소유한 VMS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손상 또는 사용할 수 없다.
7. 위원회 VMS의 사용을 위해 승인한 ALC 목록을 관리한다.
8. CCM-2007-02와 위원회에서 합의한 규칙의 준수 또는 비 준수에 따라 사무국에 보고된 기(flag) 및 선박 별로 승인된 ALC 목록을 취합하여 모든 CCM에게 배포한다.
9. 위원회 VMS의 성과와 적용을 검토하고 매년 TCC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VMS가 안정적이고 보완이 잘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고, 비용대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된 기준, 특이사항 또는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향상 또는 수정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10. 사무국은 위원회의 VMS 실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7.3.9)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포착된 ALC 비 준수 사항을 TCC에 보고한다. TCC는 비 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벌금과 재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권고한다.

8.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조업이 바닷새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보존관리조치¹

보존관리조치 2007-04

채택 2007. 12. 7

발효 2008. 2. 5

중서부태평양수역에서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일부 바닷새 종, 특히 신천옹 및 바다제비류가 전지구적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과 더불어 남빙양수역 바닷새에 대해 동 협약지역의 인접한 수역에서 연승어업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남극해양생물 자원위원회의 조언을 주목하고,

연승어업시 바다표면위에서 바닷새의 부수어획경감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조치들의 효과성은 크게 현존하는 어선유형, 조업시즌 및 바닷새 종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경감조치들의 조합은 바닷새 부수어획에서 효과적인 경감을 위한 필수적이라는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주목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결의한다.

1. 위원회의 회원, 협력적비회원 및 참여영토(CCMs)는 최대한 가능한, 연승어업에서 바닷새의 부수어획경감을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IPOA-Seabirds)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하여야 한다.
2. CCMs는 적절한 경우, 연승어업에서 바닷새 부수어획경감을 위한 각국의 국가 행동계획을 포함하여 IPOA-Seabirds의 이행사항들을 위원회로 보고한다.

¹ 2007. 12. 3-7간 미국 괌에서 개최된 제4차 연례회의에서 수정됨. 동 보존관리조치(CMM2007-04)를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CMM2006-02가 개정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제5조(e) 및 제10조(i)와 (c)에 따라, 바닷새 부수어획을 다루는 다음 조치를 채택한다.

1. CCMs는 각국의 연승어선들이 동 표1에서 최소한 2개의 경감조치들을 사용하되, 남위 30도 이남수역 및 북위 23도 이북에서 A항목에서 최소한 1개를 포함한다.

표1: 경감조치

Column A	Column B
바다새 커튼 사용 및 무게추 단 아릿줄로 현측투승 ²	토리라인 ³
갑판상 최소 불빛 하에 야간 투승	무게추 단 아릿줄
토리라인	염색 미끼
무게추 단 아릿줄	수중 깊숙이 투승하는 장치
	수중 투승 장치
	찌꺼기 관리

2. 타 수역에서는 필요시, CCMs는 동 표1에 나열되어 있는 바닷새 경감조치들의 1개 이상을 사용할 것이 권고된다.

3. 동 표1의 조치들에 대한 최소기술적상세사항은 첨부1과 같다.

4. 조사 및 보고목적에 위하여, 남위 30도 이남 또는 북위 23도 이북의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을 보유한 CCM은 자국 연승어선들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표1의 각 경감조치들에 대한 기술적 상세사항들 뿐만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2007년도(2008년도 제출기한) 정보를 각국의 연례 보고서의 part2의 일부분으로 위원회로 제출한다. 각 CCM은 요구된 경감조치 또는 동 조치에 대한 기술적 상세사항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추후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한다.

5. CCMs는 인망과정상에 이용되는 경감조치들을 포함하여 바닷새 부수어획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권고되고, 그러한 노력으로부터의 나온 정보를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가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조사연구는 동 연승어업 및 관련조치들이 이용되는 지역에서

² 동조치는 남위23도 수역에서의 효용성이 조사 입증될 때까지 오직 북위23도 지역에만 적용되며, 이를 보존조치 2개로 취급.

³ Column A와 Column B의 토리라인은 동시에 두 토리라인(즉, 한 쌍)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수행한다.

6.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는 매년 신규 또는 현존하는 경감조치 또는 읍저버 또는 여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바닷새의 상호작용에 관한 어떠한 신규 정보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갱신된 경감조치, 경감조치의 상세사항 또는 적용수역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고려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로 제공한다.

7. CCMs는 연승조업동안 생포된 바닷새를 살아있는 상태로 풀어주고,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하고, 관련된 바닷새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갈고리를 제거하도록 목적에 맞춘 조치들이 채택되도록 권고된다.

8. 지역읍저버프로그램을 위한 회기간 작업반(IWG-ROP)은 바닷새에 대한 어업의 효과분석 및 부수어획경감조치의 효과성을 평가를 가능케 하는 바닷새 상호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다.

9. CCMs는 매년 각국의 연간 보고서의 파트1에서, 부수어획 및 관련 상세종을 포함하여 바닷새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위원회로 제공한다. 이는 과학위원회가 중서부태평양수산 협약이 적용하는 모든 어업에서 바닷새의 사망률을 추정이 가능하다.

10. 동 보존관리조치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CCMs에서 이행하도록 한다.

- 남위 30도 이남 수역에서 전장 24미터 또는 그 이상의 대형연승어선은 늦어도 2008년도 1월 1일까지, 그리고 전장 24미터 이하 소형연승어선은 늦어도 2009년 1월 31일부터
- 북위 23도 이북 수역에서 전장 24미터 또는 그 이상의 대형연승어선은 늦어도 2008년 6월 30일부터

11. CCM은 2007년 1월 1일부로 각국의 기국 어선은 동 보존관리조치 제10항의 기한내에 제1항 조항에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12. 동 보존관리조치는 결의 2005-01을 대체한다.

첨부 1

아래 방법들은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검토되기로 하고, 우선 잠정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는 매년 바닷새 부수어획을 경감하는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신규 또는 현존하는 경감조치 또는 바닷새 상호작용에 관한 신규정보를 검토함을 인식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을 보유한 CCM은 바닷새 부수어획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수행된 조사 및 감시조치들로부터의 결과 자료뿐만 아니라 동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최소의 기술적 상세사항들을 설명하는 상세한 정보를 위원회로 제출한다.

Column A 경감조치에 대한 상세사항

1a) 토리라인 :

- i. 최소길이 :100m
- ii. 낚시줄이 입수하는 지점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 선미에서 최소 5m 수면 위 지점에 매달려 있도록 선박에 부착하여야 한다.
- iii. 미끼를 단 가라앉은 낚시 바늘 위의 대기공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iv. 깃은 각 5m 이하로 하되, 회전받침을 이용하고, 가능한 수면에 근접하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 v. 만약 토리라인이 전장이 150m 이하인 경우, 미끼를 단 가라앉은 낚시 바늘위에 대기공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끝단에 예인물체를 부착하도록 한다.
- vi. 만약 두(예를 들면 한 쌍)개의 토리라인이 사용된다면, 두개의 라인이 주 라인과 마주보도록 배치되도록 한다.

1b) 토리라인(가벼운 깃)

- i. 토리라인 최소길이 : 100m 또는 어선의 총길이의 3배
- ii. 낚시줄이 입수하는 지점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 선미에서 최소 5m 수면 위 지점에 매달려 있도록 선박에 부착하여야 한다.
- iii. 미끼를 단 가라앉은 낚시 바늘위에서 대기공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iv. 깃은 각 1m 이하로 하되, 최소 길이가 30cm이어야 한다.
- vi. 만약 두(예를 들면 한 쌍)개의 토리라인이 사용된다면, 두개의 라인이 주 라인과 마주보도록 배치되도록 한다.

2. 바다새 커튼 사용 및 무게추 단 아릿줄로 현측투승

- i. 우현으로부터 전개된 중심줄은 가능한 선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최소 1m) 그리고 중심줄 투승장치가 사용된 경우 적어도 선미의 앞쪽으로 최소 1m 지점에 고정되어야 한다.
- ii. 바다새 출현시 어구는 반드시 중심줄(mainline)을 느슨하게 하여 미끼 달린 낚시바늘이 수중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iii. 바다새 커튼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 o 투승장치의 선미 기둥(pole aft)은 최소 3m
 - o 기둥 상부 2m 높이에 부착된 최소 3개의 주 기드림
 - o 주 기드림의 직경은 최소 20mm
 - o 수면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한(바람 없을 때) 각 주 기드림의 끝에 부착된 아릿 기드림 - 최소 직경 10mm

3. 야간 투승

- o 일출과 일몰 한 시간 후 사이에는 투승하지 않는다.
- o 안전 및 항해를 위한 요건을 유념하여, 갑판의 조명은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4. 무게추 단 아릿줄

- i. 다음의 최소 무게추 상세사항이 요구된다.
- ii. 다음의 옵션들과 더불어 모든 아릿줄은 최소 무게추는 45그램이다.
 - 낚시바늘의 1m 이내에는 반드시 60그램보다 가벼운 추를 단다. 또는
 - 낚시바늘의 3.5m 이내에는 60그램과 98그램 사이의 추를 단다. 또는
 - 낚시바늘의 4m 이내에는 98그램보다 더 무거운 추를 단다.

Column B 경감조치들에 대한 상세사항

1. 무게추 단 아릿줄

- i. 다음의 최소 무게추 상세사항이 요구된다.
- ii. 다음의 옵션들과 더불어 모든 아릿줄은 최소 무게추는 45그램이다.
 - 낚시바늘의 1m 이내에는 반드시 60그램보다 가벼운 추를 단다. 또는
 - 낚시바늘의 3.5m 이내에는 60그램과 98그램 사이의 추를 단다. 또는
 - 낚시바늘의 4m 이내에는 98그램보다 더 무거운 추를 단다.

2. 미끼염색

- i. 위원회 사무국은 표준화된 색상 플래카드를 배포한다.
- ii. 모든 미끼는 플래카드가 제시한 색조로 염색되어야 한다.

3. 찌꺼기 관리

- i. 아래에서 둘 중 택일.
 - 투승 또는 양승시는 찌꺼기를 투기하지 않거나 또는
 - 미끼 달린 낚시 바늘에서 새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기 위하여 투승/양승하는 선박의 반대편으로부터 전략적인 찌꺼기 투기

9. 중서부 태평양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보존관리조치2008-01

2008. 12. 12 채택

2009. 2. 10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1999년 이래 다자간 고위급 회담(MHLC), PreCon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과도한 남획을 완화하고 중서부태평양지역(WCPO)에서의 어획능력증대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결의안 및 보존관리조치(CMM)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어획능력의 증대를 제한하거나 조업 시 눈다랑어 또는 황다랑어 미성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상기하며,**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관리에 관한 본 협약의 목적이 1982년 협약 및 협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2000년 개최된 MHLC에서 "그러나 협약이 태평양 수역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협약 수역의 서부 지역은 태평양에 속하지 않는 동남아시아 수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를 개입시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장의 최종 발언을 **더욱 상기하며**(제 7차 및 최종 회의 보고서, 2000년 8월 30일-9월 5일, p.29),

과학위원회에서는 눈다랑어 어족이 과도하게 남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황다랑어 어족은 현재 어획 능력의 범위 내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족의 남획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어획 사망률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음을 **인식하며,**

2005년과 2006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위원회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CMM를 채택했고 이러한 조치들을 매년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식하며,**

2006년과 2007년에 위원회는 조업활동 중 어류군집장치(FAD)¹로 인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차기 회의에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결의했음을 **인지하며,**

협약의 제30(1)조에 따라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 및 이러한 어족에 대한 어업 개발과 관련하여, 협약의 체약국인 개발도상국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국, 속령 및 해외영토의 특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해야 함을 **주지하며,**

협약의 제30(2)(c)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도상 체약국, 속령 및 해외영토에 비 균등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더욱 주지하며,**

협약의 제8(1)조에 따라 공해와 국가관할수역을 위한 보존관리조치의 양립성이 요구됨을 **주지하며,**

협약의 제8(4)조에 따라 위원회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으로 둘러싸인 협약수역 내의 공해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하며,**

나우루 협정 당사국이 2008년 5월 나우루 협정의 제 3차 약정을 이행하는데 동의했음을 **주지하며** (첨부 A),

또한 남태평양어업회의기구(FFA) 회원국들이 자국 EEZ에서 현재의 기국에 기초한 눈다랑어 어획 제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수역에 기초한 연승 어획 제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임을 **또한 주지하며,**

"어획 수준의 차후 감축 결정 시에는 최근 각 CCM의 어획량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한 CMM 2005-01의 제 19항을 **더욱 주지하며,**

협약의 제 10조에 따라 특히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와 관련하여 3년간 시행될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1 이러한 조치의 목적에 따라 어류군집장치(FAD)는 고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치 또는 자연적인 부유물체로 어류를 군집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목적

1. 본 조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해와 EEZ에 대해 양립하는 조치의 실행을 통해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어족이 최대 지속 가능한 생산량(MSY)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는 협약 제 5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약 수역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 요구를 포함해 관련 환경 및 경제적 요인에 적합해야 한다.
- 2009년부터 3년간 보존관리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눈다랑어 어획 사망률을 2001-2004년 평균 또는 2004년 수준에서 30% 감축한다.
- 황다랑어 어획 사망률이 2001-2004 평균 또는 2004년 수준을 넘어서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 종합적인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과학적 조언뿐 아니라 조치의 실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수정한다. 또한 검토에는 관리 목적과 기준점에 관련해 위원회가 요구한 수정도 포함된다.

적용에 관한 일반적 규칙

2. 이러한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개발도상 도서국 및 참여 속령이 용선, 임대 또는 기타 유사한 체제에 따라서 운영하는 선박은 자국 선단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선박을 유치하는 도서국 또는 속령의 선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선, 임대 또는 기타 유사한 체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선박을 유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위원회는 2009년 제6차 회의 시 용선약정 체제(Charter Arrangements Scheme)의 이행을 고려한다.

3. CMM 2004-02가 발효되면서 위원회는 협력적 비회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게 협약수역에서 현재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린다. 위원회는 이러한 어족에 대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러므로 CNM 지위를 얻게 된다면 필요한 경우 CMM 2004-02 또는 수정안에 따라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어획 활동이 제한 받을 것임을 알린다.

4.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 비회원 및 참여속령(Commission Member, Cooperating Non-Member and Participating Territories, CCM)들이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 어획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예방적 조치를 연기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군도 수역 및 영해로의 어획 노력의 이전으로 인해 본 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CCM들이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6. 특별히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치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 수역 내의 소규모 도서국 회원 및 참여 속령의 자국 어업 개발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7. 본 조치의 실행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어획 노력 수준은 적용 가능할 경우 CMM 2005-01에 따라 2006년 12월까지 위원회에 등록된 기존의 지역적 또는 양자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권리를 포함한다. 단, 양자 협정 또는 약정이 공해에서의 어획 노력을 수립하는데 기반을 제공하지 않음을 주지하면서 그러한 약정에 따라 승인된 등록의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선망 어업

8. 본 조치의 선망어업 조항은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 사이의 협약수역에 적용되며 본 조치의 목적은 2009년 발효시점부터 3년간 해당 지역에서 선망어업 시 눈다랑어의 어획 사망률을 30% 감소하고 황다랑어의 남획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9. CCM들은 조업 일수에 따른 어획 노력을 남위 20도의 이남 협약수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선망어업에 대한 본 조치의 효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본 조치의 효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CM들은 선망 어업의 조업 일수에 따른 어획 노력을 북위 20도의 이북 협약수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10. CCM들은 공해 수역에서 선망 어업의 조업 일수²에 따른 어획 노력의 수준이 2004년 수준 또는 2001-2004년 평균을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조치의 제6항에 따라 본 조항은 개발 도서국 및 참여 속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조치

² 2000년 이후 그러나 2004년 이전에 합법적으로 조업하기 시작한 4척 이하의 소규모 개발 도상국 선단의 경우 어획 노력의 기준 수준은 2001-2004년 모든 선박이 최대로 이용되었을 시점으로 한다.

EEZ 및 공해

11. 나우루 협정 당사국(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PNA)에 속한 FFA 회원국들에 대해 본 조치는 PNA국가들의 EEZ에서 총 조업 일수를 2004년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업일수관리제도(Vessel Day Scheme, VDS)를 포함하여(첨부 C) 국내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 사이 지역의 EEZ에서의 선망 어업은 8월 1일 0000시부터 9월 30일 2400시 사이 어류군집장치(Fishing Aggregating Device, FAD)를 사용한 조업을 금지한다. 동 기간 동안 모든 선망어선은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를 동반해야 하며 읍서버가 승선하지 않은 경우 조업을 중단하고 항구로 돌아와야 한다. 동 기간 동안 선박은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를 동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FAD 또는 관련 전자적 장치 또는 FAD와 관련된 군집 장치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음을 읍서버가 감시하는 경우에만 조업할 수 있다.

12. 기타 비 PNA CCM들은 자국 EEZ에서 선망 어업의 눈다랑어 어획 사망률을 감축하기 위해 양립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13.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 사이 지역의 공해에서의 선망 어업은 8월 1일 0000시부터 9월 30일 2400시 사이 FAD를 사용한 조업을 금지한다. 동 기간 동안 모든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가 승선하지 않은 선망어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즉시 항구로 귀항한다. 동 기간 동안 선박은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를 동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FAD 또는 관련 전자적 장치 또는 FAD와 관련된 군집 장치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음을 읍서버가 감시하는 경우에만 조업할 수 있다.

14. 위의 제12 및 제13항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가 필요한 선박은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21일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가 부족하여 해당 기간 동안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국은 본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승인을 얻어 자국의 읍서버를 승선시킬 수 있으며 EEZ에서 조업하는 경우 관련 국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 자국의 읍서버를 승선시킬 수 있다.

제 13항에 대한 공해 대체 조치 (어획량 제한)

15. 제 13항에 준하여 수립된 공해FAD 금지의 대체 조치로서 회원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회원국 특성에 맞춘 어획 제한을 통해 북위 20도 남위 20도 사이

지역에서의 선망어업에서 눈다랑어 어획량을 2001-2004년 평균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소 10% 감축할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본 대체 조치는 각 선박에 의한 각 조업 시마다 눈다랑어 양륙을 감시할 수 있는 기존의 항구 감시 프로그램, 항구로 귀항할 때 옵서버가 각 조업의 항구 감시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의 옵서버 승선 약속, 조업 완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각 선박의 각 조업에 관한 정보 제공 약속, 기준년도 어획량 및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 2001-2004 기간 동안의 실행중인 어획량 및 노력 데이터 제공,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조건 등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적 역량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회원국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효율성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의한 공개 감사를 받는다.

16. 상기의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 위원회에 의해 일단 결정이 된 회원국은 의도하고 있는 조치와 항구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09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고려한다.

2010-2011년 조치

EEZs

PNA 국가들의 관할수역

17. PNA 회원인 FFA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내적 절차 및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a. PNA 국가들의 EEZ에서 조업하는 총 일수를 2004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VDS (첨부 C)
- b. 매년 7월 1일 0000시부터 9월 30일 2400시까지 PNA 국가의 EEZ에서 3개월간 FAD를 금지하는 것과 최대 어획 보유 및 기타 자국 수역에서의 선망 어선 단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는 2008년 5월 나우루 협정의 제 3차 이행 약정

비 PNA 국가들의 관할 수역

18. 기타 비 PNA CCM들은 자국의 EEZ에서 선망어업에서의 눈다랑어의 어획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조치를 시행한다.

19. 북위 20도 남위 20도 사이 지역 내 공해에서의 선망 어업은 7월 1일 0000시부터 9월 30일 2400시까지 FAD를 사용한 조업을 금지한다. 동 기간 동안 지역 오퍼 프로그램의 오퍼를 동반하지 않은 모든 선망 어선은 조업을 중지하고 즉시 항구로 귀항한다. 동 기간 동안 선박은 지역 오퍼 프로그램의 오퍼를 동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FAD 또는 관련 전자적 장치 또는 FAD와 관련된 군집 장치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았음을 오퍼가 감시하는 경우에만 조업할 수 있다.
20. 대체 조치는 눈다랑어 어획을 추가 20% 감축하기 위해 2009년 위원회의 검토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21. 위원회는 선망 어선의 어업 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 공통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PNA VDS와 양립하는 공해에서의 VDS 개발을 고려한다. 공해 및 인접 EEZ에서의 어업 노력 제한의 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의 조언 및 권고를 기반으로 위원회는 2010년 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2009년 회의에서 해당 제도를 고려한다.
22. 첨부 D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해 pocket은 위원회가 2009년 제 6차 연례회의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2010년 1월 1일부터 조업이 금지된다. 동 회의에서 위원회는 또한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의 협약 수역의 모든 공해 pocket 지역의 조업 금지를 고려한다.

FAD 관리 계획

23. 2009년 7월 1일 까지 공해에서 조업하는 CCM들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FAD 사용에 대한 관리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계획은 상기의 제13 및 18항에 준하는 FAD 조업 금지 실행을 포함하여 FAD 사용과 관련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 포획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본 계획은 각 CCM을 위한 FAD 관리 계획 준비를 위해 제안된 가이드라인(Suggested Guidelines)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 E)
24. 위원회 사무국은 과학 위원회, 기술이행위원회 및 2009년 연례회의에서 고려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FAD 관리 선택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 a. FAD의 표시 및 식별
 - b. FAD의 전자적인 감독

- c. FAD 관련 부표로부터의 위치 정보의 보고 및 등록
- d. 배치된 FAD 개수 및 인공 FAD set의 개수 제한

다랑어 미성어 포획 감소를 위한 연구

25. 위원회는 CCM, 지역 다랑어 위원회 및 업계와 함께 FAD와 관련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 포획을 감소할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3개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26. 독자적으로 또는 업계와 협력적으로 실행하고,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의 각 회의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CCM들은 FAD 주변에서 포획되는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의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하여 위원회에 연례적으로 보고한다.

어획물 보유

27. 미성어 포획 방지 조치를 개발하고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미성어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및 조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CCM들은 위원회가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에 의한 100% 읍서버 승선에 관한 제 27항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 사이 지역의 공해 및 EEZ에서 조업하는 선망어선이 모든 눈다랑어,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물을 선상에 일단 보유하고 그 후 하선 또는 전재할 것을 요구한다.

본 조항은 PNA 국가들이 3차 이행 협정에 따라 자국의 EEZ에서 어획물 보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 a) 국내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최종 망에 어획된 초과 어류는 다른 선망 선으로 전재될 수 있고 선상에 보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최종 조업 시 최종 망에 어획된 모든 어류를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 b) 크기 이외의 이유로 식용 가능하지 않은 어류의 경우
- c) 장비의 심각한 장애 발생 시

감독

28.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 지역 내 공해에서만 조업하거나 한 개 이상의 연안국의 국가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선망 어선 또는 둘 이상의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

버를 동반해야 한다.

29. 2009년부터 상기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등록 협정에 따른 읍서버를 동반하고 공해에서는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에서의 최소 20% 읍서버 승선을 이행한다. 읍서버 승선 수준은 기술이행위원회를 통해 감시 및 보고된다. 전미열대참치 위원회(IATTC)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IATTC 수역과 위원회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동일한 조업 시 동일한 읍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승인 약정을 개발한다.

선망어업 조치를 위한 기타 고려사항

30. 북위 20도와 남위 20도 사이에서 최소한의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부수어획(총 2% 미만)에 대한 검증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다랑어 선망어업 개발은 100% 읍서버 감독 하에 적법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된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FAD 사용을 제한하고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타 관리 조치를 실행한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충분한 감시, 통제 및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계획은 참고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토의된다. 정부의 승인이 있기 전에 계획에 대해 위원회에서 먼저 토의한다. 본 조치는 소규모 개발 도서국의 자국 선망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승어업

31. 연승어선에 의한 눈다랑어의 총 어획은 2012년 1월 1일 까지 2001-2004 평균 또는 2004년 수준 어획량의 7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첨부 F³). 연승어업에서 황다랑어 어획량은 2001-2004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32. 제30항은 2004년 2,000톤 미만으로 어획한 CCM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 눈다랑어를 2,000톤 미만으로 포획한 각 CCM은 자국 어획량이 향후 3년간 (2009, 2010, 2011) 매년 2,00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항에 따라 비회원국에 대한 기회는 위원회에 의해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33. 기준 년도 동안 눈다랑어를 평균 2,000톤 이상 어획한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의 눈다랑어 어획 제한에 따른다.

a. 2009:첨부 F에 명시된 어획의 10% 감축

3 2004년은 중국, 미국 및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된다.

- b. 2010:첨부 F에 명시된 어획의 20% 감축
- c. 2011:첨부 F에 명시된 어획의 30% 감축

34. 제 6항에 따라 상기의 제 31에서 33항에서 명시된 눈다랑어에 관한 제한은 협약 수역 내 자국 어업 개발을 책임 있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개발 도서국 및 참여 속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 제 34항에서 더 나아가 2010년과 2011년 동안 제 33항에서 명시된 감축은 첨부 F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승에서의 총 눈다랑어 어획이 5,000톤 미만이고 신선 어류(fresh fish)만을 양륙하는 회원국 선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선단 및 조업 특징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위원회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이 되고 그러한 어업으로 승인된 등록의 수가 현재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경우 첨부 F에서 명시된 어획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36.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어획 제한은 태평양 도서국의 EEZ에서 자국 어업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국의 어획 기여를 위한 약정을 개발하기 위해 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2004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38. 어획 제한에 따라 어획량이 2,000톤 미만으로 할당된 회원의 경우 어획 제한은 2,000톤으로 적용한다.

기타 상업적 다랑어 어업 노력 제한

39. CCM들은 2009년부터 북위 20도 및 남위 20도에서 조업하는 선망어업을 포함, 그러나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의 어획량이 2,000톤 미만인 어업 및 전통어업은 제외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기타 상업적 어업의 각 총 어획량이 2001-2004년 평균 또는 2004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CM들은 이러한 기타 어업에 대한 어업 노력의 평가 또는 2009년 및 향후 이러한 어업 노력에 관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안을 과학위원회에 제출한다.

데이터 제공

40. “위원회에 제공될 과학적 데이터”로서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칙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CCM들은 매년 동의한 시간 내에 실행 단계의 어획량과 어획 노력에 관한 데이터와 모든 선단을 위한 크기 구성 데이터를 제공한다.

41. 위원회는 예방적 접근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어류 사망률 추가 감소를 실행하는데 있어 제 351항의 데이터 보고 의무에 대한 CCM들의 이행 수준을 고려한다.

항구통제

42. 각 CCM은 위원회의 CMM을 위반한 조업활동으로 어획되었음이 확인된 다랑어 및 다랑어 제품의 양륙, 전재,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

43. 양륙 및 전재 항구에서 어족에 따른 어획량을 평가하기 위해 감독 받는다. 결과는 매년 위원회에 보고된다.

어획능력

44. CCM에 의해 완료된 작업을 바탕으로 위원회 사무국은 기술이행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중서부 태평양 수역에서 어획 능력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

45. 모든 CCM들은 연례보고서 제2부에서 공해 및/또는 국가관할수역에서 조업 활동 시 본 조치의 이행에 대해 기술이행위원회에 매년 보고한다. 기술이행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위해 본 요구사항 보고 서식을 준비한다.

조치의 검토

46. 선망 및 연승 어업에 대한 상기의 조치들은 그 영향과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조언과 관련하여 매년 검토된다. 본 조치는 위원회가 대체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러한 검토는 특히 조치가 의도한 효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모든 CCM들과 어업 분야에서 위원회의 보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고려한다.

최종 조항

47. 본 조치는 CMM2005-01과 CMM 2006-01을 대체한다.

고기 미끼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표층투승 원양 연승 황새치 어업에서 바다거북의 어획률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더욱 주지하며,

어업인들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사전 사후 노력이 바다거북에 대한 상호작용을 피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됨을 인지하며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가 제75차 회의에서 선망 및 연승 어선에 적용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다량어 조업 선박의 바다거북에 대한 영향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인식하며

보존관리조치의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타 기구 특히 IATTC와 협조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의 제22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5조 및 10조에 따라 다음을 채택한다.

1. 위원회 회원, 협력적 비회원 및 참여속령(CCMs)은 조업 시 바다거북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포획된 바다거북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FAO 지침을 이행할 것이다.
2. 2009년부터 CCM들은 연례 보고서 제2부에 협약상 관리되어지는 어업에서의 바다거북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여 FAO 지침과 본 조치의 이행 과정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3. WCPFC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에 의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위원회 데이터 수집 규정상 합의된 대로 또는 위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CCM들은 협약상 관리되는 어종을 목표로 조업하는 선박의 어업인들이 실행 가능한 경우 껍질이 딱딱한 바다거북이 정신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포획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선상으로 운반하고 해상으로 되돌려 보내기 전에 인공 소생술을 포함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 할 것을 요구한다. CCM들은 사무국이 개발하여 모든 CCM에게 배포될 WCPFC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어업인들이 적절한 완화 및 처리 기술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협약상 관리되는 어족을 어획하는 선망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CCM들은
 - a. 선박의 운영자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할 것을 보장한다.
 - i.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다거북을 포위하는 것을 피하고 바다거북이 포위되어 있거나 얽혀있는 경우 안전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 ii.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류군집장치 또는 기타 어구에 걸려있는 모든 바다거북을 풀어준다.
 - iii. 바다거북이 어망에 걸려있는 경우 바다거북이 수면에 나오는 순간 어망 돌리는 것을 중지하고 작업을 개시하기 전 바다거북이 다치지 않게 어망에서 풀어주고 바다로 돌려보내기 전에 상태를 회복시킨다.
 - iv. 적당한 경우 바다거북을 다룰 때 뜰그물을 사용한다.
 - b. 그러한 선박의 운영자는 관찰을 포함한 조업 활동 중 바다거북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적절한 CCM 당국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 c. 제5(b)항에 따라 보고한 결과를 제2항의 보고의무의 일부로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 d. 바다거북이 어망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류군집장치 디자인의 수정 개발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바다거북 포획 감소에 성공적이라고 밝혀진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 협약에서 관리하는 어종을 어획하는 연승어선을 보유한 CCM은 그러한 연승어선의 운영자가 포획된 바다거북을 즉시 놓아줄 수 있도록 연승줄전단기와 낚시제거기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사무국이 개발하여 모든 CCM들에게 배포할 WCPFC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CCM들은 또한 그러한 선박의 운영자가 적당한 경우 WCPFC 지침에 따라 뜰그물을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7. 2010년 1월 1일부터 표층투승¹ 으로 황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을 가진 CCM들은

- a. 협약수역에서 그러한 선박의 운영자가 바다거북 어획을 줄이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최소한 한가지의 방법을 채택하여 실행할 것을 보장한다.
 - I. 일반적으로 원형이거나 타원형이고 뾰족한 부분이 원래 몸체를 향해 수직으로 되돌아오도록 고안되고 제조된 대형 환형 낚시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낚시의 각도는 10도를 넘지 않는다.
 - ii. 생선 전체를 미끼로 사용한다.
 - iii.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가 검토하였고 위원회가 황새치 표층투승 연승어업에서 바다거북의 혼획 비율(낚시 당 어획되는 관찰된 개체수)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승인한 기타 조치, 완화 계획² 또는 행위를 취한다.
- b. 제7(a)항의 요구사항을 관련 CCM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SC의 결정에 따라 표층투승 황새치 연승어업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 3년 동안 관찰되는 혼획은 최소한³의 수준이어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최소 10%의 옵서버 감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c. 본 7항을 이행하고자 표층투승 황새치 연승어업, 대형 환형 낚시에 관한 정의 및 실행을 보장하는 제1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되었거나 제 7(a)(iii)에 따른 조치에 대한 실행 정의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러한 정의를 연례보고서 제2부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한다.
- d. 연승선박이 관찰을 포함한 조업 활동 중 바다거북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적절한 CCM 당국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 e. 제7(d)항에 따라 보고한 결과를 제2항의 보고 의무의 일부로 위원회에 제출한다.

8. 표층투승 황새치 조업 어선을 제외한 연승어선을 보유한 CCM들은 다음을

1 "shallow-set"어업은 일반적으로 100미터 이하의 얕은 곳에서 대부분 낚시로 조업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그러나 제7(c)항에 준하여 CCM들은 각자의 실행 정의를 세워 실행하고 있다.

2 완화 계획은 바다거북과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취해질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SC5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수행해야 한다.

- a. 환형 낚시의 시험 및 연승어업에서의 완화 방법 연구 수행
 - b. 하부 위원회의 연례회의 최소 60일 전에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에 이러한 시험 결과 보고
9. 과학위원회 및 기술이행위원회는 본 조치에 준하여 CCM들이 보고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하부 위원회는 완화 조치를 수정하고, 조치에 대한 특이사항 또는 적용에 대한 권고를 개발하고 논의 및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10. 본 조치를 통해 사무국은 이 개도국 및 참여속령이 바다거북 사망률 감소를 위한 FAO 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특별필요기금(Special Requirement Fund)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기금은 어업인들이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채택하여 바다거북의 혼획을 줄이고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려하는데 사용된다.
11. 위원회는 CCM들에게 적절한 회원국들이 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특별필요기금에 기부하거나 양자합의를 통해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2.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와 기술이행위원회의 권고 및 CCM들이 본 조치에 준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연승 및 선망 어업에 대한 추가 또는 신규 완화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13. 사무국은 관련된 CCM들과 협력하여 바다거북을 다루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CCM들에게 배포한다.
14. 본 조치는 국가 관할 수역 내에서 바다거북의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포함하여 바다거북의 조사, 이용, 보존 및 관리 목적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전통적 어업 활동에 대한 권리 및 전통적 방식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연안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협약수역 내 공해상 대규모 유자망 사용 금지 보존관리조치

보존관리조치 2008-04

2008. 12. 12. 채택

2009. 2. 10.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유엔총회 결의안 46/215에서 대규모 공해 유자망 조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고 웰링턴 협약에서 협약수역 내 유자망 조업 활동을 금지하고자 함을 상기하며,

다수의 선박이 계속적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협약수역)을 포함하여 북태평양에서 대규모 공해 유자망 조업을 하고 있음을 유의하며,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대규모 유자망을 갖고 있거나 대규모 공해 유자망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업 선박은 WCPFC가 우려하고 있는 어종을 어획할 수 있고 WCPFC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며,

최신 정보에 따르면 그러한 선박은 다랑어, 황새치, 상어 및 협약에서 관리하는 기타 어종과 같은 고도회유성어족을 부수 어획하게 되고, 분실 또는 버려진 유자망에 의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중요한 어족과 해양 환경에 심각하게 유해한 영향을 끼침을 우려스럽게 유의하며,

WCPFC 북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WCPFC는 협약수역 내 대규모 공해 유자망 조업을 금지하는 보존관리조치 채택을 권고했음을 인지하며,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1. 협약수역 내 대규모 공해 유자망¹의 사용은 금지되고 그러한 유자망은 금지어

1 “대규모 유자망”은 자망(gillnet) 또는 기타 그물 또는 수면에서 그물을 내리거나 또는 수중에서 어

구로 간주되며 그러한 어구의 사용은 협약의 제25조에 따라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2. CCM들은 자국 선박이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조업하는 동안 대규모 유자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CCM 기국 조업 선박이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고 대규모 유자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² 대규모 유자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선박은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대규모 유자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제3항은 자국 수역에서 대규모 유자망을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고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조업하는 동안 모든 대규모 유자망과 이와 관련된 조업 설비가 조업을 위해 손쉽게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M 기국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CCM들은 연례보고서 제2부에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대규모 유자망과 관련된 감시, 통제 및 감독 활동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6. WCPFC는 대규모 유자망이 협약수역 내 공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7. 본 조치에도 불구하고 CCM들은 대규모 유자망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류를 가두거나 걸리게 하여 잡는 목적의 2.5 킬로미터 이상 길이의 그물 조합을 의미한다.

2 “대규모 유자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는 것은 선박이 대규모 유자망을 배치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조립 여부에 상관없이 선상에 있음을 말한다.

- I.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등록부상의 자국 어선 소유자가 자국 관할권내에 있는 시민, 거주민, 또는 법인이어서 어떠한 통제 또는 제재조치가 이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위원회 각 회원국은 자국 어선이 협약수역에 있을 때, 다음 선박인 경우에만 전채를 하거나 받거나, 급유를 하거나 받거나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a. 회원국 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 b. 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기를 게양한 기타 선박은 제D장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등재된 선박 (이하 임시 등록부); 또는
 - c. 본 조치 제41항-제43항에 의거 용선,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선박

3. 위원회의 어떤 회원국도 선박이 회원국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해 어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자국 관할권 이원의 협약수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4. 이러한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해 다음사항을 정한다.
 - a. 허가가 유효한 구체적인 수역, 어종 및 기간
 - b. 선박에 대해 허가된 활동
 - c. 관할 국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면허,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선박에 대한 조업, 선상 어획물 보유, 전채 또는 양륙의 금지
 - d. 선박 등록부의 유효한 증명서와 함께 상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또는 그 허가증에 대한 검증된 사본, 그리고 연안국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승인이나 허가 또는 그에 따른 공식 사본에 대한 선상 보유 요건(requirement)
 - e. 협약 규정과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에 효력을 부여하는 기타 특정 조건

B. 회원국의 어선 등록부

5. 협약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자국 관할 수역 이원의 협약수역에서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갖추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록부를 유

지하며 이러한 모든 어선이 등록부에 등재되도록 보장한다.

6. 위원회 각 회원국은 어선 등록부에 등재되는 모든 선박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가능한 경우 전자적 수단을 통해 사무국장에게 2005. 7. 1까지 제출한다:
 - a. 어선명, 등록번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식별번호 (WIN), 과거 선박명(알려져 있는 경우) 및 등록항구
 - b. 선박 소유주(들) 이름과 주소
 - c. 선장 이름과 국적
 - d. 존재하는 경우 선박의 과거 국적
 - e. 국제무선호출 부호
 - f. 선박의 통신유형과 번호 (Inmarsat A, B, C 번호 및 인공위성 전화번호)
 - g. 선박의 컬러 사진
 - h. 선박의 건조 장소 및 시기
 - I. 선박의 종류
 - j. 정상적인 승무원 정원
 - k. 어획방법의 유형
 - l. 선박의 길이(유형과 단위를 특정)
 - m. 선박의 주조 깊이(단위를 특정)
 - n. 선폭(단위를 특정)
 - o. 총 등록톤수(GRT) 또는 총톤수(GT)
 - p. 주엔진(들)의 동력(단위를 특정)
 - q. 냉동시설 형태, 용량 및 수량과 어획물 보관 용량을 포함한 선적 용량(단위를 특정)
 - r. 특정 수역, 어종 및 허가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기국이 발급하는 허가의 양식 및 수
7. 2005년7월1일 이후, 각 위원회 회원국은 관련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하기 전 15일 이내 또는 어떤 경우라도 72시간 전에 다음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a. 제6항에서 정한 모든 정보와 함께 자국의 어선 등록부에 추가된 모든 선박
 - b. 자국 어선 등록부에 등재된 선박에 대해 제 6항에 언급된 정보의 변경사항
 - c. 협약 제24조 제6항에 따라 자국 어선 등록부에서 삭제된 선박과 그 이유
8. 위원회 각 회원국은 자국 어선 등록부에 등재되는 어선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9. 각 회원국은 매년 7월1일 이전에 이전 연도 어느 때라도 자국 어선 등록부에 등재되었던 모든 선박에 대한 목록을 각 선박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식별 번호(WIN)와 각 선박이 자국 수역 이원의 협약 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고도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지 여부는 (a) 조업 또는 (b) 조업하지 않음으로 표기한다.
10. 임대, 용선약정 또는 기국이 아닌 국가에 부여된 자료보고의무를 초래하는 임대, 용선약정 또는 유사약정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기국이 제9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할 것이다.

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

11. 위원회는 협약 제27조 제7항과 협약 및 본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회원국 관할 수역 이원의 협약수역에서 조업을 허가 받은 선박 등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등록부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
12.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에는 각 선박에 대해 제9항 각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하여 이전연도에 자국 수역 이원의 협약 수역에서 조업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13. 사무국장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을 적절한 웹사이트에 올려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에 대한 적절한 공개를 보장한다.
14.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은 위원회 연례회의 적어도 30일 전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연간 요약 보고서를 위원회 모든 회원국과 참여속령에게 회람한다.
15. 회원국과 참여속령은 제재 및 처벌조치를 포함하여 자체적인 조치 및 제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검토하며, 공개에 대해 자국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게 매년 보고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의 기국 또는 회원국이 이러한 선박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준수

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16.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임시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선박은 기국 관할권 이원의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조업하거나 선상에 보유, 전재 또는 양륙을 허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 각 회원국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의 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한다.
17. 각 회원국과 참여속령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한 고도회유성 어종의 자국 항구로의 양륙 또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의 전재를 금지한다.
18. 각 회원국과 체약국은 협약 제25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와 어선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조업 및 전재하고 있거나/해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적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19. 이러한 선박이 위원회 회원국기를 게양한 경우, 사무국장은 그 회원국에 통보하고 회원국이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을 조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그 선박에 대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한다.
20. 제16항-제18항은 회원국 기를 게양하고 이러한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조업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 이러한 선박이 비협력적 비회원국 국적이거나 선박의 국적이 판단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이를 알려 제15항에 정한 조치 외에도 협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원회와 관련 회원국은 서로 통신하며 가능한 경우 다른 대양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속성의 어선 등록부를 시의적절하게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FAO와 기타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악영향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관할하는 수역간에 IUU 어선이 이동함으로써 나타난 초과 어획 압력 (excessive fishing pressure)일 수 있다.
23. 만약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에 포함된 선박이 위원회 결정을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국 또는 관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선박에 대해 허가한 기국 관할권 이원에서 조업 허가를 취소한다. 사무국장은 제7조 c항에 따라 통보한 후 실현 가능한 한 빨리 선박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에서 삭제한다.

D.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

24. 위원회는 협약수역에서 운행하고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등재된 운반선 및 급유선의 모든 기국이 가능한 빨리 협력적 비회원국 지위를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이러한 기국의 적절한 당사자들과 본 보존관리조치 사본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유한다.
25. 위원회는 운반선과 급유선에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협력적 비회원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에 유의하여,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이러한 모든 신청을 고려한다.

2010년-2012년

26. 위원회는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를 만든다.
27.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포함된 선박은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의 전채를 받을 수 있고 협약수역에서 고도회유성 어족 조업에 이용되는 회원국 국적 어선에 급유 또는 기타 공급을 하도록 허가된다.
28. 위원회 모든 회원국은 언제라도 사무국장에게 가능한 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등재하고자 하는 운반선과 급유선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은 선박의 기국뿐만 아니라 상기 제6항에 기술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9. 선박을 임시 등록부에 등재하도록 권고한 회원국은 권고한 선박(들)이 다음과 같은 선박이 아님을 인증(attest)하여야 한다.
 - a. 만일 선박의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그 선박과 어떤 법적, 수혜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또는 관련 회원국이 관련 모든 사실을 고려했을 때 선박이 더 이상 IUU 어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한 과거 IUU 어업 기록이 있는 선박 또는
 - b.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채택한 IUU 선박 목록에 현재 등재된 선박 또는
 - c. 제4항의 정보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제38항에 따라 임시 등록부에서 삭제된 경우.
30. 임시 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운영자가 위원회에 운반선 또는 급유선의 소유주, 관리자/운영자가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적용가능한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면 보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원회 결정에서 회원국 국적 선박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서약서 목적상 모든 비 회원국 선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서면 서약서는 위원회의 공해상 승선 검색 절차에서 허가한 공해상의 승선검색을 허가하는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약서에는 VMS 등록과 읍서버 배치에 대한 비용과 같이 위원회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31. 상기 30항과 관련하여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동안 선박 운영자는 위원회 업무를 위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
32. 이러한 약속이 기국의 국내법과 부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운영자의 책임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운영자는 공해상 승선검색과 관련된 입장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statement) 포함하여 기국으로부터 지지 서류를 확보하도록 권장된다.
33. 사무국은 모든 관련 보존관리조치와 서면 약속에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적용 가능한 위원회 결정 목록을 웹사이트에 올린다. 운반선 또는 급유선 소유주, 관리자/운영자가 제28항 정보의 변경이 있는 지 15일 이내에 사무국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도 조건이다.
34. 임시 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운영자가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적용가능한 결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것도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IUU 선박 목록을 만들기 위한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위원회의 IUU 선박 초안에 등재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된다.
35. 제28항-제30항에 따라 운반선 또는 급유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령한 지 근무일로 7일 이내에 사무국은 임시 등록부에 선박을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변경을 통보 받은 지 근무일로 7일 이내에 임시 등록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각 선박에 대해 임시 등록부는 제5항의 모든 정보와 제30항에 따라 제출된 서약서 사본과 어선 등록부에 선박을 등재하도록 요청한 회원국(들)을 포함한다.
36. 제28항-제30항에 따라 운반선 또는 급유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은 기국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30항에 따라 이미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해상 승선 검색과 관련된 명백한 의견이나 입장을 포함하여 기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37. 위원회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유지하는 IUU 선박 목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어선 등록부에 등재된 선박이 이러한 IUU 선박에 등재된 경우 어느 때라도 사무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a. 회원국과 선박 소유자에게 발견 사항을 통보하고 선박이 이를 통보한 지 30일 후부터 어선 등록부에서 삭제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 b. a항목에 따라 통보 한 지 30일 이후 어선 등록부에서 선박을 삭제한다.
38. 위원회는 제30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보장과 관련하여 어선 등록부상 선박의 이행실적을 모니터한다. 어느 때라도 위원회 회원국이 어선 등록부상 선박의 소유주, 관리자/운영자가 서면 약속을 완전히 이행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음을 실행한다:
- a. 위원회 회원국은 이러한 증거를 사무국에 즉시 제출한다
 - b. 사무국은 이러한 증거를 회원국들에게 즉시 회람한다
 - c. 위원회는 이러한 증거를 검토하고 임시 등록부에서 선박을 삭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위원회가 제38(b)항에 따라 회람한 지 14일-60일 사이에 다음 회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회기간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절차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다
 - d. 위원회에서 임시 등록부에서 선박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무국은 선박 소유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 60일 후 선박을 임시 등록부에서 삭제한다.
 - e. 사무국장은 제38(d)에 따라 취한 조치의 완료를 기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알린다.
39. 임시 등록부는 2012년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012년 연례회의 60일 후 종료한다. 이행위원회에서는 협약수역 내 고도회유성 어종에 미치는 잠재적 경제적 영향과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과 급유선 금지를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unforeseen circumstances)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1년과 2012년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2013년과 그 이후

- 40. 상기 제24항과 제25항을 유의하여 위원회는 2013년 연례회의 후, 대다수의 운반선과 급유선의 기국이 회원국이 될 것을 기대한다.
- 41.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비협력적 비회원국 국적이지만 회원국 어업의 중요 부분으로 용선,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에 운영되는 운반선 또는 급유선은 현지국가(host country) 선박으로 간주되며 하나 이상의 회원국 관할권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인 경우 제B장에 따라 회원국의 어선 등록부에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어선 등록부는 회원국 국적인 선박과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하게 된 선박을 구별하여야 한다.

42. 용선, 임대 또는 기타 이러한 약정은 현지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선박과 관련한 감시, 감독, 통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 회원국은 선박의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용선, 임대 또는 기타 이러한 약정은 선박이 보존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적용가능한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을 포함한다. 모든 위원회 결정에서 회원국 국적 선박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조건을 위해 모든 비 회원국 선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건은 위원회의 공해상 승선 검색 절차에서 허가한 공해상의 승선검색을 허가하는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이러한 약정은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과 급유선이 해당국과 연안국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 회원국 관할권 수역과 항구에서 운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회원국은 선박이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IUU 선박 목록 등재, 동일 국가의 다른 선박에 대한 어선 등록부 등재 거부, 현지 회원국의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 일반

44. 위원회는 본 절차를 계속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나. 군집 어류를 목표로 하거나 또는 작은 어류를 폐기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FAD 사용 금지와 어획물 완전 보유 규정 적용에 있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각국은 북위20도와 남위20도 사이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망선이 FAD 사용금지와 어획물 완전 보유와 관련한 CMM 2008-01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FAD 사용 금지 규정

3. CMM 2008-01 각주의 FAD 정의는 다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류가 물려들 수 있는 수면 위 또는 수면 부근에 떠있는 부표, 부유물, 그물, 띠, 플라스틱, 대나무, 통나무와 고래상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크기에 관계없이, 배치 여부에 관계없이, 살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 또는 물체조합”

4. CMM 2008-01에서 규정된 FAD 금지 기간 동안, 어떤 선망선도 FAD 1마일 내에서 그물의 일부를 전개할 수 없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조업하는 동안에는 선박 또는 이의 어구나 지원선이 FAD 1마일 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선박의 운영자는 어류를 모으거나 수중 등과 밀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어된 어류를 이동하는데 선박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

6. FAD 사용 금지 기간 동안 선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FAD와/ 또는 이와 관련된 전자 장비를 회수할 수 없다.

가. FAD와/또는 관련 전자 장비를 육지에 도착할 때 까지 또는 금어기간이 종료할 때 까지 선상에 두는 경우

나. FAD를 회수한 지점에서 반경 50 마일 내 또는 회수한 후 7일 동안 투망을 하지 않는 경우

7. 제6항에 더하여, 선박은 군집 어류를 잡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조업하지 않는다. FAD 사용 금지기간동안 투망 직전 24시간 이내에 다른 선박이 FAD를 회수한 지점에서 1마일 내에서 투망하지 못한다.

어획물 완전 보유 규정

8. 선박 운영자가 사이즈, 시장성 또는 어종 구성의 이유로 어획물을 선상에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물이 완전히 닫히고 그물의 반이 끌어올리기 전에 어류를 풀어주어야 한다.

9. 선박의 운영자가 “식용 부적합”의 이유로 어획물을 선상에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식용 부적합” 어류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1) 선망선 그물에 걸리거나 으깨진 경우 또는
- (2) 상어 또는 고래의 약탈로 인해 손상된 경우 또는
- (3) 어구 고장으로 정상적인 그물 및 어획물 회수와 어류를 산채로 풀어주는 노력을 저해하는 경우 그리고

나. “식용 부적합” 어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크기, 시장성, 또는 어종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또는
- (2) 어선의 선원이 한 행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상하거나 오염된 경우.

10. 선박의 운영자가 어류를 항차 마지막 투망에서 잡고 이를 수용하기에 어창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선상에 보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어류는 다음의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다.

가. 선장과 선원이 가능한 한 빨리 어류를 산 상태로 방류하도록 노력하고

나. 폐기 후 선상에 보유한 어류를 양륙 또는 전재할 때까지 추가적인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11. 어류는 옵서버가 폐기될 어류의 어종 구성을 산정할 때까지 선박에서 폐기하지 못한다.

12. 선박의 운영자는 어류의 폐기 후 48시간 내에 다음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가. 선박명, 국적 및 WIN 번호

나. 선장 이름과 국적

다. 허가 번호

라. 선상 옵서버 이름

마. 폐기한 날짜 시간 및 위치 (위도/경도)

- 바. 투망 낚자, 시간, 위치 (위도/경도) 및 투망 유형 (부유 FAD, 고정 FAD, 프
리스쿨 조업 등)
- 사. 어류를 폐기한 이유 (제6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 회수 상태에 대한 보고서 포
함)
- 아. 폐기되는 어류의 추정 톤수 및 어종 구성
- 자. 마지막 인망에서 보유하는 어류의 추정 톤수와 어종 구성
- 차. 제8항에 따라 폐기되는 어류인 경우 선상에 있는 어획물을 하역할 때까지 추
가 조업이 없었다는 신고서
- 타. 선장이 관련 있다고 판단한 기타 정보

13. 선박의 운영자는 제12항의 정보 사본을 선상의 WCPFC 읍서버에게 제공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가 태평양에 걸쳐 황새치 어족의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된 중남부태평양 황새치 어족은 소규모 개발 도서국 및 참여 속령의 자국 어업을 위한 장기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기회의 원천임을 인지하며,

위원회는 WCPFC 협약 제10조에 의거 다음을 채택한다.

1. 모든 CCM들은 남위 20도 이남의 협약수역 내 황새치 조업척수를 2000-2005년 중 어느 한 해의 조업 척수로 제한한다(부속서 1 참조).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선박 척수 제한 이외에, CCM들은 남위 20도 이남의 협약 수역에 있는 CCM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의 황새치 어획량을 2000-2006년 기간 중 어느 한 해의 어획량으로 제한한다.
3. CCM들은 이 조치의 결과로 남위 20도 이북 수역으로 황새치 어획노력을 이전하지 않는다.
4. CCM들은 남위 20도 이남 지역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될 황새치의 최대 총 어획량을 2010년 4월 30일 이전까지 정한다. 총 어획량은 2000-2006년 기간 동안 위원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어느 한 해의 최대 어획량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5. 제1-4항 및 제9항은 남위 20도 이남의 협약 수역 내 황새치 조업을 적정한 수준 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 및 참여속령의 관련 국제법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6. 본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 용선,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하에서 연안국의 국내 선단의 일부로 조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을 소유한 기국 또는 속령의 선박으로 고려된다. 그러한 용선, 임대 또는 유사한 제도는 IUU 어선을 용선하지 않도록 진행된다.

7. CCM들은 남서태평양의 황새치 어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특히 황새치 자원상태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8. 다음의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의 CCM들은 황새치 조업 총 선박 수와 황새치 총 어획량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 a. 또 다른 CCM의 국내 수산업의 일부로서 용선, 임대 또는 유사한 제도하의 선박을 제외하고, 남위 20도 이남의 협약수역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조업하는 선박
- b. 남위 20도 이남에서 국내 수산업의 일부로서 용선,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하에서 조업하는 선박
- c. 남위 20도 이남의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이러한 정보는 각 CCM의 연례보고서 제2부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2000 - 2008년 동안 부속서2에서 제공된 서식에 따라 제공되고 그 이후 매년 수정된다.

9. 잠정 조치로서, 그리고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한 위원회의 향후 결정을 침해하지 않고, 위원회가 기국이 할당된 제한량을 초과했을 경우 대응책을 포함한 CMM 이행 관련 제도를 채택할 때까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어획량이 상기의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총 어획량을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한 양과 동등한 어획량 감축을 할 것이다. 그러한 감축은 어획량을 초과했다는 결정을 한 직후 그 연도에 적용된다.

10. 사무국장은 상기의 제8항에 의거, CCM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기술이행위원회에 배포한다. 기술이행위원회는 동 조치 이행 현황을 모니터 및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향후 남방황새치 자원평가에 기반한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참고하여 본 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12. 본 조치는 CMM 2008-05를 대체한다.

부속서1-

2000-2007년간 남위 20도 협약수역에서 황새치를 조업한 실적이 있는 CCM국적 선박 척수 (각 CCM마다 최대 척수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출처: WCPFC-TCC4-2008/10 (Rev.3) 2008년 9월 별첨문서 2)

연도	호주	벨리즈	룩아일랜드	EU	한국	뉴칼레도니아 (부수어획)	뉴질랜드	대만			미국
								어기간 >100 GRT	부수어획 > 100 GRT	부수어획 > 100 GRT	
2000	140	0		0	22	15	103	10	41	17	
2001	159	0		0	22	12	132	10	41	17	
2002	144	0		0	22	11	151	10	42	17	
2003	134	0	16#	0	24	15	132	12	55	17	
2004	121	0	15	8	22	25	99	8	39	17	
2005	100	0	6	14	23	15	57	6	40	19	
2006	55	0	8		6					26	
2007	54	1^		15*	4		74^^			30	

* EU연례 보고서 (Part1)에서 2007년 1월1일~12월31일자 정보 참조

^ 벨리즈가 2008년 4월 29일 위원회에 제출한 어획 및 노력 데이터(부수어획) 참조

^^ 뉴질랜드 연례 보고서 (Part1)에서 2007년 1월1일~12월31일자 정보 참조

제5항 적용 참조. 본 수치는 룩아일랜드의 국내 어업 개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속서2-

기국 CCM 및 연안국 CCM별 황새치 어획 보고양식 (각 CCM의 연례보고서(Part1)을 통해 제출)

연도	남위20도 내 CCM국적 선박		용선된 선박		남위20도 내 CCM의 관할 수역 조업 선박		
	어획량 (톤)	선박 척수	어획량 (톤)	선박 척수	기국	어획량 (톤)	선박 척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제6항 및 8(a)항에 따라, 기국 CCM들은 용선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제6항 및 8(a)항에 따라, 용선을 하는 CCM들은 용선된 선박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음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1. 각국은 자국 어선이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자료 부이의 1마일 이내에서 또는 자료부이와 상호 연계하는 어업을 금지한다.
2. 이 조치의 목적을 위하여, 자료 부이는 표류하든 고정되어 있든간에, 어업목적이 아닌 환경 자료를 전자적으로 수집 또는 측정할 목적으로 정부간 또는 인정받는 과학기구 또는 실체에 의하여 전개된 부유장치로 정의된다.
3. 각국은 특별리 그 부이에 책임이 있는 회원 또는 소유자에 의해 선상에 소지하도록 승인 또는 요청받지 않았다면 자국 선박이 자료 부이를 선상에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각국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이 해상에서 정박된 자료 부이를 계속 지켜보고 어구 엉킴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자료 부이들과 직접 상호연계하는 것을 회피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5. 각국은 자료 부이와 엉켜진 자국 어선들이 가능한 한 자료부이에 적게 손상이 가도록 엉켜진 어구를 제거하도록 한다. 각국은 자국의 어선들이 모든 엉킴을 보고하고, 엉킨날짜, 위치 및 특징을 자료부이에 포함된 확인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6. 위 1항 및 2항과 불일치한 어업활동은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하는 어업활동으로 간주되며, 협약 제25조에 따라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조사 프로그램은 어선들이 1항에 설명된 데로 자료부이와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한 자료부이의 1마일내에서 어선을 운영할 수 있다.

16. 전채규정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CMM2009-06

2009. 12. 11 채택

2010. 7. 1 발효

중서부태평양 위원회(WCPFC)는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관리는 협약수역 내 고도회유성 어족 어획에 대한 정확한 보고 규정에 좌우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상전채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해상, 특히 공해상에서 고도회유성 어족 어획물에 대한 비규제 및 비보고 전채가 이러한 어족의 어획량 보고 왜곡과 협약수역 내 IUU 어업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획량의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회원국은 가능한 한 자국 선박에 대해 항구에서 전채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한 협약 제29조 제1항을 상기하고,

항구전채 또는 위원회 회원국 관할권 수역 내에서의 전채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항구전채와 해상전채 모두 전채되는 수량과 어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협약이 규율하는 전채가 완료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협약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또한 상기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 관할 수역 밖 협약수역 해상에서의 전채는 협약 부속서3의 제4조에 규정된 항목과 조건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립한 절차에 따라서만 시행한다는 협약 제29조 제4항을 상기하고, 그러한 절차는 관련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협약 제29조 제4항을 상기하고,

협약 제29조 제5항이 기존 조업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특별 예외를 제외하고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선에 의한 해상전채는 금지하고 있다

는 점을 또한 상기하며,

항구활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소규모개발도상국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해상에서 감시, 감독, 통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회원국들은 전재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재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어획량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고도회유성 어족의 자원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수역 내 전재되는 어종과 수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를 희망하며,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음을 채택한다:

제1장- 총칙

1. 본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며 늦어도 2010. 7. 1에 시작된다.
2. 본 조치의 규정은 협약이 관리하는 모든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해 협약수역 내의 모든 전재에 대해 적용된다. 협약수역에서 어획하고 협약이 관리하는 고도회유성 어족을 협약수역 외에서 전재하는 회원국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재활동과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망선은 협약에 포함되는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해 본 조치 제24조에 따라 협약수역 외에서 해상 전재할 수 없다.¹
3. 본 조치 규정은 군도수역 또는 영해에서 어획하고 전재되는 고도회유성 어족의 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항구전재 또는 회원국 관할권 내 수역에서의 전재는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수행된다. 협약 제29조 제5항이 적용되는 제2장을 제외하고 본 조치의 어떤 조항도 회원국 국가 관할권 내에서 전재가 수행되는 경우 좀더 강력한 요건의 적용을 포함하여 국내법 적용을 침해하지 못한다.
5. 회원국은 사무국장에게 전재를 위한 지정 항구 또는 항구들을 통보할 수 있다.

¹ 본 조치 제13(c)조의 전재는 2011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사무국장은 이러한 지정항구 목록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주기적으로 회람한다. “항구”는 양륙, 전재, 가공, 연료 또는 물자의 재공급을 위한 모든 연안 해상터미널과 기타 설비를 포함한다.

6. 본 조치의 어떤 조항도 공해에서 운행하는 동안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국의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각 회원국은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한 본 조치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본 조치를 위해, 회원국은 협약수역 내 연안국 국내 선단의 일부로서 선박이 용선계약, 임대 또는 기타 유사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보고할 책임이 있다. 용선계약, 임대 또는 이러한 유사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용선국이 선박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는 회원국이 된다.
8. 제7조에 따라 용선회원국과 기국 회원국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9. 비협력적 비회원국 국적이지만 WCPFC의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포함된 운반선에 대하여는 용선약정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이 그 선박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다.
10. 협약수역에서 행하는 각 전재활동과 협약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각 전재에 대해 하역 선박과 수취 선박 모두 부속서 I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 전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조치에서 요구하는 경우, 전재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보낸다.
11. 회원국은 항구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한 전재활동을 포함하여 본 조치에 포함되는 모든 전재활동에 대해 부속서 II의 지침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일부로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회원국은 어획 및 노력 자료, 위치 자료, 읍서버 보고서 및 항구 감시 자료와 같은 모든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재를 행한 선박에서 보고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

12. 사무국장에게 하는 통보는 제24조와 제35조 가항 3호에 따라 텔렉스, 팩스 또는 이메일과 같은 자료의 양방향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하역과 수취 선박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통보의 책임이 있지만 선박 또는 선박의 운영자가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통보는 반드시 부속서 III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각 회원국은 해상전재를 관찰하기 위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의 읍서버를 승선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박에 대해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수취 선박 전장이 33미터 또는 33미터 미만이며 선망선에서 어획한 어류 또는 연승선에서 어획한 어류를 냉동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선박에 대해 본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하역 선박 또는 수취 선박에 읍서버를 배치하여 100% 읍서버 승선 보장
 - 나. 가항에 포함되는 전재를 제외하고 예연승 어업과 채낚기 어업 (pole and line)에만 관련 있는 전재인 경우, 2013. 1. 1부터 수취 선박에 읍서버를 배치하여 100% 읍서버 승선 보장
 - 다. 가항과 나항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 전재는, 수취 선박에 읍서버를 배치하여 본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00% 읍서버 승선 보장.
14. 읍서버는 다음을 포함하여 본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고 가능한 한 전재되는 어류 수량이 읍서버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재 신고서에 보고된 어획량
 - 나. 연안국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에 대해 연안국에 보고한 어획 및 노력 조업 일지를 포함하여 어획 및 노력 조업일지 자료
 - 다. 선박 위치 자료 그리고
 - 라. 양륙하고자 하는 항구
15. 읍서버는 어획물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하역과 수취 선박 모두에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선박 사이를 움직이는 읍서버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지역읍서버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개발한다.
16. 수취선박은 전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각 읍서버에 대해 한번에 하나의 하역 선박으로부터만 수취할 수 있다.

17. 지역오피서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개발되었거나 합의된 다른 지역수 산관리기구와의 교차 오피서버 승인에 대한 제도 또는 절차는 본 조치에 적용 된다.
18. 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본 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개발도 상국,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도서국에게 적절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9. 본 조치는 위원회에서 취한 다른 조치 및 결정과 본 조치와 다른 조치의 이행 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진다.

제1장 A -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박으로/에서 전제

20. 회원국은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박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 결정으로 승인 받은 것이 아닌 경우 비협력적 비회원국 기를 게양한 선박으로/에서 전제할 수 없 다:
 - 가.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이 CMM 2009-01에서 수립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원회의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또 는
 - 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 허가를 받은 비협력적 비회원국 어선
21. 제2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 박은 허가 받지 못한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박으로/에서 전제 하지 않는다.
22. 제20조에 정한 비협력적 비회원국 선박이 전제에 참여한 경우 사전 전제 통보 와 본 규정 여러 장에서 요구하는 전제 신고서를 포함하여 사무국장과의 필수 적인 통신은 운반선의 선장 또는 용선 회원국의 책임이다.

제1장-B - 불가항력 또는 심각한 기계적 결함

23.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조치의 규제는 불가항력 또는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어류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기계 적 결함인 경우 전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24. 이러한 경우, 전재가 완료된 지 12시간 내에 전재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선박에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전재 15일 이내에 제10조 요건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재 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선망선 전재

25. 협약 제2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망선의 해상전재는 금지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 국적의 작은 선망 보트(어획 보유 능력이 600mt 또는 이하)로 구성된 기존의 선망선단:

- 1호. 어획물을 냉동하기 위해 냉동 운반선과 함께 조업하거나 또는 기지 근처에서 어획물을 저장하기 위해 얼음 운반선과 함께 조업하는 경우,
- 2호. 냉동 운반선과/또는 얼음 운반선과 같은 보조선박과 함께 하나의 그룹으로 조업하는 경우
- 3호. 냉장 또는 기타 얼음 운반선이 조업선과 나란히 연결하여 조업 선에서 수산물을 전재하는 경우.

나. 전재활동과 어획물 검증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해 뉴질랜드의 기존법과 운영체계에 따라 뉴질랜드 수역 내에서만 조업, 전재 및 양륙활동이 이루어지는 뉴질랜드 국적의 선망선이 전재활동을 하는 경우

26. 제25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면제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정해진 년도의 (in a given year) 7월1일까지 사무국장에게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CMM 2004-01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에서 요청하는 선박에 대한 구체 정보

나. 선박의 이전 전재 면제에 대한 기록

다. 전재되는 주요 어종 및 제품 형태

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전재가 실행될 장소

마. 면제를 요청하는 기간, 그리고

바. 면제 신청 이유

27. 사무국장은 모든 전재 예외 신청서를 취합하고 이를 기술이행위원회 연례회의

최소 30일 전에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한다. 기술이행위원회에서는 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제25조의 면제 신청에 대해 권고한다.

28. 기술이행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연례회의 기간 중 각 신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제29조 제5항에 따라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면제를 인정하는데 있어 지역, 시기 또는 어종에 대한 제한, 전재를 받는 어선과 감시, 통제 및 수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요건과 같이 협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조건이나 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
29.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항구 외 전재에 대해 면제를 받은 선망선에 한해서만 이를 허가한다. 회원국은 위원회 또는 회원국에서 파악한 조건 또는 요건을 포함하여 개별 선박마다 허가서를 발행하고 선박 운영자가 이러한 허가서를 항상 선상에 보유하도록 한다.
30.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 등록부에 등재될 것이 필수적인 이러한 허가를 받은 선망선의 기국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면제에 따라 항구 외에서도 전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허가 사항에 부가된 어떤 제한, 조건 및 요건에 대해서도 통보한다.
31. 사무국장은 면제를 인정받고 항구 외에서 전재를 허가 받은 선망선 목록과 면제를 인정받는데 부가되는 어떤 조건이나 규정을 포함하여 이를 유지하고 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공개한다.
32. 제26조에서 제30조에서 정한 절차에서 해상전재에 따라 면제를 인정받은 선박을 포함하여 모든 선망선은 협약수역 내 공해상 전재가 금지된다.

제3장 - 선망선을 제외한 선박의 전재

33. 연승선, 예연승, 채낚기 어선으로부터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 일어나는 전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34. 제37조 이하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이 책임이 있는 선박 일부에 대하여 공해상 전재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서 전재하지 못한다.

35. 공해상 전재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역 또는 수취선박에 대해 보고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1호. 전재에 대한 감시와 검증 절차를 위원회에 알린다

2호. 그러한 결정이 적용되는 선박을 통보한다

3호. 각 전재 전 적어도 36시간 전에 사무국장에게 부속서 III의 정보를 통보한다

4호. 각 전재 완료 15일 이내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전재 신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5호. 장래 항구전재를 장려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36. 위원회는 기술이행위원회를 통해 관련 회원국에서 신청한 예외 신청을 3년이 지난 후 검토하고 이 후에는 매 2년 마다 감시와 검증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를 검토한다. 검토 후, 위원회는 공해상 전재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선박에 대한 공해상 전재를 금지하거나 공해상 전재에 대한 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7. 사무국장은 항구 전재 또는 국가 관할권내 수역에서의 전재가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마련한다. 기술이행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 2012년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러한 기간 동안 회원국은 공해상 전재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지침을 활용한다.

가. 공해상 전재 금지가 공해가 아닌 적당하고 허용된 지역에서의 전재 또는 양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평가했을 때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로 이는 총 운영비, 순 수입 또는 기타 비용과/ 또는 수입에 대한 의미 있는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그리고

나. 공해상 전재 금지 결과 선박의 전통적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38. 제37조에서 언급한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국과 계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 쌓인 협약 수역 공해지역에서 전재를 금지할 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에는 이 지역 조업선박에 대해 보고

한 어획량과 노력량,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제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이 지역의 IUU 어업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 이 수역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부속서I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전채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1. 고유 문서 식별번호 (identifier)
2. 어선명과 WIN
3. 운반선명과 WIN
4. 어획에 사용된 어법
5. 전채되는 제품의 수량² (어종과 가공 상태³ 포함)
6. 어류 상태 (신선 또는 냉동)
7. 전채되는 부수어획⁴ 수량
8. 고도회유성 어종을 어획한 지리적 위치⁵
9. 전채 일시 및 위치⁶
10. 가능한 경우,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옵서버 이름과 서명
11. 이미 수취 선박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수량과 원산지⁷

2 참치 및 참치류

3 Whole(전체) gutted and headed(머리 및 내장제거) gutted, headed and tailed(내장, 머리 및 꼬리 제거) gutted only, not gilled(아가미를 제외한 내장만 제거한 경우) gilled and gutted(아가미 및 내장제거) gilled, gutted and tailed(아가미, 내장 및 꼬리제거) shark fins(상어 지느러미).

4 참치 및 참치류가 아닌 어종

5 어획한 지리적 위치란 어획물 중 어느 정도가 다음지역에서 어획되었는지 파악하기 충분한 정보를 말한다: 공해,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협약수역 외, 배타적 경제수역들 (분리하여 리스트 작성). 어획 위치는 수취선박으로부터는 요구하지 않는다.

6 전채위치는 0.1도에 가장 근접한 소수로 경도와 위도를 말하며 공해, 협약수역 외 또는 지정배타적 경제수역내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기술과 함께 제출된다.

7 원산지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별로 보고되며 각 지역기구 수역별 제품 수량을 포함한다.

부속서 II

회원국이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전제 정보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제1장에 다음을 포함한다:

1. 회원국이 보고 책임이 있는 어선에서 전제된 본 조치가 적용되는 고도회유성 어족에 대한 총 중량과 이를 다음으로 분류한 중량
 - a. 하역 및 수취
 - b. 항구전제, 국가 관할권 내 해상 전제 및 국가관할권 이원에서 일어난 전제
 - c. 협약수역 내에서 일어난 전제와 협약수역 외에서 일어난 전제
 - d.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한 어획량과 협약수역 외에서 조업한 어획량
 - e. 어종
 - f. 제품형태 그리고
 - g. 사용한 어구

2. 보고 책임이 있는 어선에서 본 조치가 적용되는 고도회유성 어족과 관련된 전제가 일어난 횡수로서 다음으로 분류한 횡수
 - a. 하역 및 수취
 - b. 항구전제, 국가 관할권 내 해상 전제 및 국가관할권 이원에서 일어난 전제
 - c. 협약수역 내에서 일어난 전제와 협약수역 외에서 일어난 전제
 - d. 협약수역 내에서 조업한 어획과 협약수역 외에서 조업한 어획
 - e. 사용한 어구

부속서III

사무국장에게 하는 통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1. 하역 선박명과 WIN
2. 수취 선박명과 WIN
3. 전재되는 제품 (어종과 가공상태 포함)
4. 제품별 전재되는 톤
5. 전재 날짜 및 예상 또는 계획된 전재 위치⁸(24마일의 오차로 1/10도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6. 고도회유성 어종 어획에 대한 지리적 위치^{9 10}

8 전재위치는 0.1도에 가장 근접한 소수로 24마일의 오차의 경도와 위도를 말하며 공해, 협약수역 외 또는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와 같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출된다.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통보내용을 갱신할 수 있다.

9 수취선박은 요구하지 않음,

10 어획한 지리적 위치란 어획물 중 어느 정도가 다음 수역에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충분한 정보를 말한다: 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약수역 외, 배타적 경제수역(분리하여 리스트 작성). 수취선박의 어획위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17. 용선통보계획

CMM2009-08

2009. 12. 11 채택

2010. 2. 9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용선선박이 중서부태평양에서 지속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용선 약정이 IUU 어업활동을 확산시키지 않고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용선약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약 제10조에 따라 다음을 채택한다.

1. 이 조치의 각 조항은 용선 회원국 및 참여속령의 국내선단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로서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또 다른 국가 또는 어업실체의 국적을 가진 제4항에 부합하는 선박들과 용선, 임대 또는 다른 약정을 맺은 위원회 회원 및 참여속령에 적용한다.

2. 각 용선국 또는 참여속령은 위원회에 각 용선한 선박과 관련한 다음정보를 2010. 7. 1까지 사무국장에게 가능한 한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이 조치에 따라 용선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통보한다.

가. 어선의 이름

나. WIN(위원회 선박식별번호)

다. 용선자의 이름 및 주소

라. 용선약정의 기간

마. 선박의 기국

상기 정보를 받은 즉시 사무국장은 기국에 이를 통보한다.

3. 2010. 7. 1 이후에 각 용선 회원국 또는 참여속령은 사무국장 및 기국에 15일 이내에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선약정에 따른 조업개시 72시간전에 다음사항을 통보한다.

- 가. 제2항에 규정된 정보와 함께 어떠한 추가 용선선박
- 나. 용선선박과 관련, 제2항에 언급된 정보의 변동사항
- 다. 제2항에 따라 이전에 통보받은 선박의 용선 종료

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어선의 기록부 또는 비협력적 비회원국 운반선 및 급유선 임시등록부에 등록된 선박 그리고 위원회 IUU 선박목록에 없거나 또는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목록에 없는 선박만이 용선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무국장은 매년 통보받은 용선선박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한다.

7. 위원회는 용선선박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포괄적인 틀을 개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이 작업은 용선 선박에 의한 어획량 및 노력량의 귀속과 용선선박의 통제 및 용선선박에 대한 책임에 관한 기국 및 용선회원국 또는 참여속령간의 관계를 다룬다.

8. 이 조치는 위원회가 수정하지 않는다면 2011. 12. 31 종료된다.

4. 각국이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국내입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5. 협약수역의 공해에서 협약에 의하여 관리되어지는 어종을 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국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선을 목격한 경우, 목적을 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속 국가의 적절한 당국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에 보고된다.

19. 신뢰성 있는 어획 데이터 보장을 위한 선망선 항구 양륙 감시 보존관리조치 2009-10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001년-2004년 또는 2004년 연평균 눈다랑어 사망률에서 최소 30퍼센트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5차 WCPFC연례회의 (WCPFC5)에서 CMM2008-01을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고,

중서부태평양 지역 선망선으로 부터 어획 된 어획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 및 크기 구성 데이터가 없으면 CMM2008-01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량의 어획물이 그물에서부터 직접 어창으로 옮겨져 쌓이고, 전채 되어 양륙 후 분류되는 선망선 조업의 특성 상 선박 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종 및 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까닭에, 보고된 눈다랑어의 어획량이 실제 어획량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륙 장소 또는 가공 공장에서 눈다랑어를 분류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업계가 이러한 종/크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하고,

현재 양륙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분류 작업 및 이를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선망선에서 어획 된 눈다랑어 어획 데이터를 향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협약 수역 내 선망선 어획의 상당 부분이 태국 등 협력적 비회원국의 항구에서 양륙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하고,

CMM 2008-01 제 43항에 따르면, 적용 가능한 경우 CCM들은 양륙항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1. 위원회와 관련 CCM들은 2010년에 협력적 비회원국과 함께 약정을 맺어 해당 협력적 비회원국의 가공 공장에서 나온 협약 수역 내 선망선에 의해 어획된 어획물에 대한 종 및 크기 구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진행 상황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2. 본 CMM에 의거하여 입수한 데이터는 비공개 데이터로 관리된다.

내의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 회원들의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북방 청새치의 전체 어획량은 단계별 감축을 통하여 2013년 1월 1일에는 2000-2003년 수준의 [80퍼센트]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적도 이북의 협약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각 기국/용선 CCM은 2011년부터 다음에 명시된 대로 북방 청새치 어획 제한을 받는다.

가. 2011: 2000-2003년 어획량 최고치에서 [10퍼센트] 감축

나. 2012: 2000-2003년 어획량 최고치에서 [15퍼센트] 감축

다. 2013년 이후: 2000-2003년 어획량 최고치에서 [20퍼센트] 감축

6. 각 기국 및 용선CCM들은 자국의 선박 및 용선이 제 5항에 명시된 어획량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마련 시에는, 과거 유사한 조치에 노력량 감축, 어구 변경, 공간적 관리 등이 포함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2011년 4월 30일까지, 각 기국 및 용선 CCM들은 자국의 선박 및 용선들이 적도 이북의 협약 수역에서 어획한 북방 청새치와 관련하여 검증 가능한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매년 CCM들은 Part2연례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어획량을 줄이고 제 5항 및 7항에 따라 수립된 제한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전체 어획량 감축을 위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및 용선에 적용된 조치 등 관련 조치의 실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9. 본 조치는 북방 청새치 자원평가 수정 내용에 따라 2011년에 개정 된다.

21. 동부 포켓공해 특별 관리구역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CMM 2010-02
2010. 12. 8 채택
2011. 2. 6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협약)의 목표가 1982년의 UN해양법 협약 및 협정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협약수역 내에서의 IUU 어업활동이 WCPFC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들의 효과성을 저해함을 우려하고,

동부포켓공해에서 IUU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들에 관한 문제를 우선순위로써 해결해야 할 필요에 대해 자각하고,

관련 WCPFC규범 하에서 CCM 및 비CCM에 관해 채택된 기타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부포켓공해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점점 증가하는 IUU어업 활동이라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결의하고,

협약문 제8조 1항에서 공해를 위한 보존관리조치와 자국 수역 내에 적용되는 보존관리조치 간에 양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음을 인식하고,

협약문 제8조 4항에서 위원회가 협약수역 내에서 EEZ로 둘러싸인 공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음을 상기하고,

협약문 제30조 1항에서 위원회가 고도회유성어족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및 본 어족의 개발과 관하여 위원회 체약국 중 개발도상국, 특히 소규모 도서개도국 및 속령인 회원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음을 주지하고,

협약문 제30조 2항에 보존관리조치가 개도국 및 속령 회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불공평한 보존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위원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음을 더욱 주지하며,

협약문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가 2011년 7월 1일부터 동부포켓공해 수역에서 실행됨을 채택한다.

적용수역

1. 동부포켓공해는 서쪽으로는 쿡아일랜드, 동쪽으로는 불령폴리네시아, 북쪽으로는 키리바시의 EEZ로 둘러싸인 공해이다. 본 보존조치를 위하여 정확한 좌표 (측지학적 정보)는 WCPFC VMS를 기준으로 한다. 동부포켓공해를 표시한 지도는 첨부문서 A에 나타나있다.

보고

2. 기국들은 동부포켓공해 입역 및 출역 전 최소 6시간 전에 사무국에 직접, 혹은 기국이 지정한 기구를 통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선박 내 보관된 어획량 추산치(킬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이 정보를 인접 연안국 및 속령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고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선박 식별번호 (VID)/입역/출역: 날짜/시간, 위도 및 경도, ¹

황다랑어/눈다랑어/날개다랑어/가다랑어/황새치/상어/기타/총어획량 (kg)/
전재여부(예/아니오)

3. CCM들은 동부포켓공해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들이 어선을 목격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해야 할 정보에는 날짜, 시간, 위치, 진로, 표식, 운항속도, 선박 유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박들은 이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전송하도록 하되, 항차가 완료된 후 30일

¹ 입출역 예상 날짜/시간, 위도 및 경도

을 넘겨서는 안된다.

VMS

4. 인접 연안국/영토는 '위원회가 감시, 감독, 통제(MCS) 활동과 과학적 목적을 위한 공해 VMS데이터 접근과 배포를 위하여 취합한 공해 관련 비공개 자료의 보호, 접근, 배포를 위한 의사규칙'제22항에 의거하여, 그리고 본 의사규칙 제 5항을 통하여 최대한 실시간으로 VMS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신하여야 한다.

선박목록

5. 위원회 사무국은 실시간 VMS정보를 기반으로 동부 포켓공해상에 있는 실시간 목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WCPFC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위원회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전재

6. 동부포켓공해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재는 적용 가능한 CMM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동부포켓공해상에 전재를 하고자하는 선박은 (옮겨 실거나 또는 옮겨 받거나) 본 보존관리조치 제 2항에 명시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행(履行)

7. 본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선박에 대한 조치는 CMM2007-03 및 위원회에서 채택된 기타 적용 가능한 조치를 통해 취해진다.

조치의 재검토

8. 상기의 조치는 기술이행위원회의 관련 조언과 맞물려 2년마다 재검토 한다. 이러한 재검토시에는 특히 본 조치가 의도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위원회의 보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CCMs와 업계가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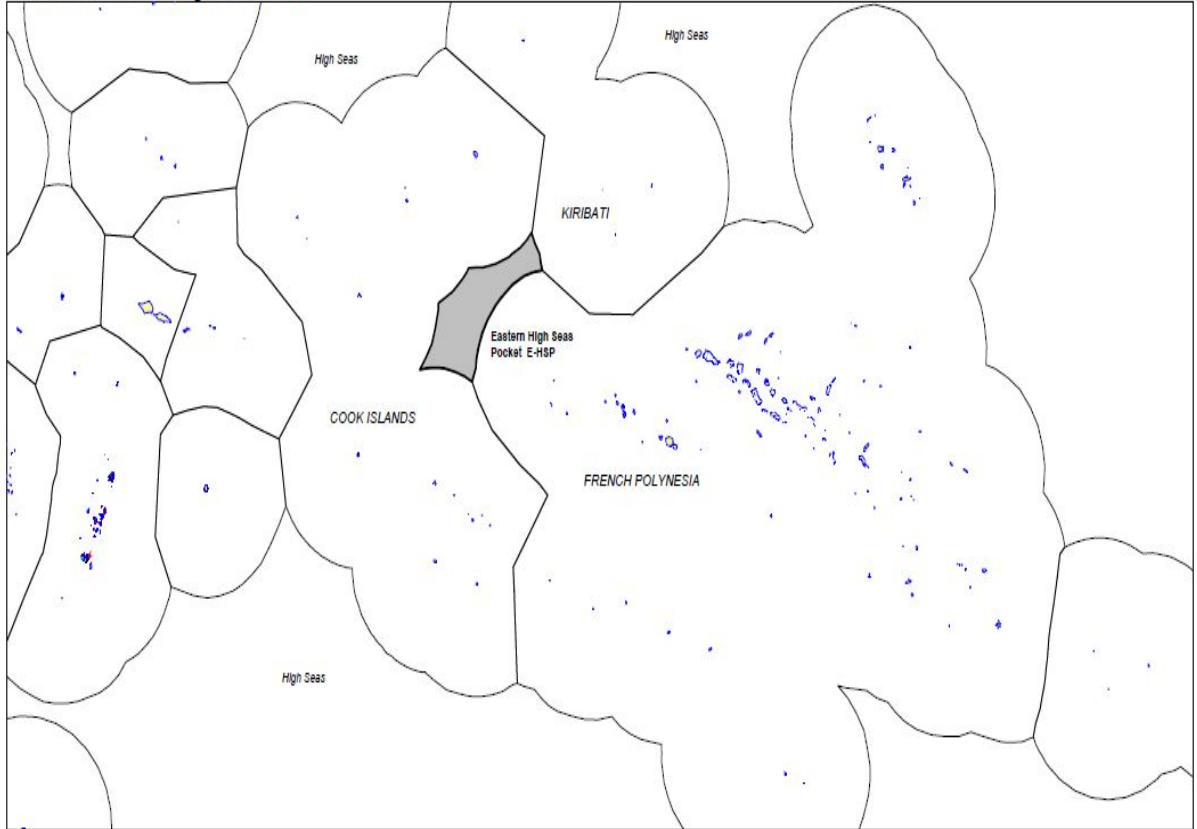
9. 위원회는 제 8차 연례회의에서, 특별 관리 구역을 연안국 EEZ경계로부터 100마일 내의 공해 까지 확장할 지에 대해 고려한다.

10. 본 조치는 위원회가 동부포켓공해를 위한 대안적 조치를 채택할 때 까지 유효하다.

첨부문서 A

동부포켓공해

Attachment A: Eastern High Seas Pocket



22. 이행 감시 제도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CMM 2010-03

2010. 12. 8 채택

2011. 2. 6 발효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 (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 보존을 위한 협약 (이하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협약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해 왔음을 상기하고,

협약문 제2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회원들이 협약문의 규정 및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발효한 보존관리조치를 시행하여 왔음을 명심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회원국, 협력적 비 회원국 및 참여 속령들이 자국의 기를 게양한 선박 및 자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명심하고,

협약문 제23조에, 위원회 회원들은 가능한 한 자국 국민들과 자국민들이 소유 및 통제하는 선박들이 협약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제24조가 회원들이 협약문의 규정 및 관련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와 용선국이 자국 선단의 중요한 일부로 활동하고 있는 용선에 관해 가지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더욱 명심하고,

위원회는 보존조치 위반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용한 정보를 책임있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비 차별적인 방식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주지하고,

제 2차 참치기구합동회의 (Joint Tuna RFMO)에서, 모든 지역수산기구들은 각 당

사자들의 조치 준수 보고 내용을 매 년 심층 검토하는 강력한 이행 검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을 상기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특히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문과 보존관리조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CCM들의 책임과, 이러한 실행을 증진하고 조치 준수를 보장할 필요에 대해 더욱 인식하며,

협약문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WCPFC 이행 감시 제도를 수립한다.

제1절 목적

1. WCPFC 이행 감시 제도(이하 제도)의 목적은 회원, 협력적 비회원, 적절한 경우 참여 속령(CCMs)들이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문 및 보존관리조치를 실행 및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의 수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i) CCM들이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한다.
- (ii) CCM들이 의무 준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이나 역량 구축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다.
- (iii)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보존관리조치의 어느 측면에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 (iv) 위반의 이유,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에 대한 여러 구제책을 마련하고 협력적 역량 구축활동, 심각한 위반 발생 시 보존관리조치¹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처벌 및 기타조치 등 위반 사항에 대응한다.
- (v)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해결한다.

제2절 범위와 적용

2. 위원회는 CCM들이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문 및 보존관리조치에서 규정하는 의

¹ 본 조치 제23항에서 정해진대로, 본 제도 보완을 위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위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절차에 부합하게

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

3. 매 년 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문 및 보존관리조치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i) 어획 및 노력량 제한
- (ii) 어획 및 노력량 보고
- (iii) 시, 공간적 금어조치 및 어구 제한
- (iv) 읍서버 및 VMS요건
- (v) 과학적 데이터 제출, 보고 및 관리

4.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 년 또는 특정 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의무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i) 위원회 및 위원회 보조기구들의 필요사항과 우선순위
- (ii) 계속되는 위반 사항을 평가 및 해결 할 필요성
- (iii) 특정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5. 본 제도를 통하여, 위원회는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해결 하여야 한다.

- (i) 제도에 따라 전년도에 채택된 권고안에 대한 CCM들의 준수
- (ii) 협약문 제23(5)조 및 제25(2)조에 따라 보고된 위반 혐의에 대한 CCM들의 대응

6. 본 제도에 따른 이행 관련 정보를 준비 및 배포하고 이에 대해 논의 할 때에는 위원회가 취합한 공개 및 비 공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보호, 유포 및 접근에 관한 의사규칙에 따라야 한다.

7. 본 제도는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국내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CCM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8.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를 실행 및 준수 향상을 위한 역량 구축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도국 CCM, 특히 소규모 도서 개도국 회원국 및 참여 속령들과 함께 협력한다.

제3절 이행 감시 보고서 초안

9. TCC연례 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무국장은 Part1 및 Part2 연례 보고서, 기타 보고 의무, 전채프로그램,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 VMS 및 위원회의 기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신된 정보와,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로부터 제출된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취합하여 각 CCM이 섹션별로 구분된 이행 감시 보고서 초안(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사무국장은 CCM들로부터 Part2 연례 보고서를 수신한지 5일 후나 TCC 연례 회의 개최 적어도 25일 전 둘 중 더 이른 날짜에², 보고서 초안의 각 섹션을 관련 CCM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초안의 자국 관련 섹션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각 CCM은 가능한 경우 TCC 시작 적어도 12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i) 보고서 초안에 나타난 잠재적 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 변경, 수정 사항을 알리거나 기타 다른 정보에 대응한다.
- (ii) 잠재적 이행 문제에 대한 특정 원인이나 해당 의무 실행 관련 어려움, 또는 잠재적 이행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상황 등을 파악한다.
- (iii) 개도국CCM, 특히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들이 잠재적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역량 구축을 파악한다.

12. TCC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사무국장은 본 조치 제11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 초안을 취합하여 CCM들에게 회람한다.

13. TCC는 각 CCM에 관해 파악된 이행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본 조치11항에 따라 CCM들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한다. CCM들은 파악된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이행 감시 잠정 보고서

14. CCM들 및 적절한 경우 NGO들이 제공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TCC는 파악된 잠재적 이행 문제에 기반을 두고 본 조치 부속서I에 명시된 이행 현황 평

² TCC는 본 조치 제10,11,12항에 명시된 일정을 2011년 잠정 보고서 마련 시 고려한다. TCC는 2011년 잠정 보고서에서 이 일정의 적절성에 관련하여 권고안을 마련한다.

가를 위한 기준 및 고려 사항을 참조하여 각 CCM의 이행 현황을 잠정 평가하고,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여 이행 감시 잠정 보고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잠정 보고서에는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TCC의 권고안과 관찰 내용을 포함한다.

(i) CCM들이 실행 및 준수에 관해 겪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CMM를 개정 및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ii) 본 조치 제4항에 따라 이행 감시 제도 하에서 검토 되어야 할 추가적인 우선순위 의무

16. 잠정 보고서는 연례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5절 이행 감시 보고서

17. 매 년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TCC에서 권고된 잠정 보고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18. 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 혹은 개최 도중에, CCM들은 지적된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잠정 보고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언 또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19. CCM들이 제공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각 CCM의 이행 현황,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CCM에 적용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 등을 포함한 이행 감시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20. 위원회는 또한 본 조치 제15항에 의거하여 TCC에서 전달된 권고안 또는 관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각 CCM들은 전년도에 행해진 위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Part2연례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부절 위반에 대한 대응

22. 위원회는 위반의 유형, 심각성, 정도 및 원인을 따져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위원회는 2011년 연례회의에서, 이행 감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및 채택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이행 감시 제도의 실행을 통해 위원회가 적용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한 대응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적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 및 적절한 경우 CMM의 이행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처벌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24. 위원회가 위반에 대한 대응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면, TCC는 이에 대한 권고안을 잠정 이행 감시 보고서에 포함하여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행 감시 보고서에 위반에 대한 대응 내용을 기록한다.

적용 및 검토

25. 본 조치는 2011년에만 적용된다.

26. 2011년 연례 회의에서, 위원회는 시범 운영 기간동안 본 조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검토하고, 본 검토 내용에 기반하여 2011년 이후에 적용될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결정한다.

27. 본 조치는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에서 검토 및 개정한다.

부속서 I

이행 현황표

이행 현황	이행 현황 평가를 위한 기준
<p>이행</p>	<p>관련 의무에 관하여 어떠한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음.</p>
<p>이행 검토 (Compliance Review)</p> <p>이행 검토의 목적은 기술적 위반 혹은 사소한 위반 또는 실행 격차를 파악하고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이 필요한 위반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p>	<p>위반 사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p> <p>(i) 불충분, 불확실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나 정보,</p> <p>(ii) 관련 의무의 사소한 위반을 초래한 작위 혹은 부작위</p> <p>(iii) 관련 의무의 모호함 또는 오해</p>
<p>이행 행동 계획 (Compliance Action Plan)</p> <p>이행 행동 계획의 목적은 기술 지원 또는 적절한 경우 역량 구축 지원을 통하여 CCM들이 위반 사항을 해결 및 시정하거나 관련 의무 시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p>	<p>위반 사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p> <p>(i) 심각한 위반을 초래한 작위 또는 부작위,</p> <p>(ii)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 또는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위반 또는</p> <p>(iii) 충분한 시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 이행 감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p>
<p>이행 개선 (Compliance Remedy)</p> <p>이행 개선의 목적은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이행 행동 계획을 통하여 지원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또는 계속되는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p>	<p>위반 사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p> <p>(i) 반복되는 심각한 위반을 초래한 작위 또는 부작위</p> <p>(ii) 위원회가 채택한 협약 또는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반복된 위반 또는</p> <p>(iii) 충분한 시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 이행 감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반복된 행위</p>

2. 위원회 회원국, 협력적 비 회원국 및 참여 속령 (이하 CCMs이라 한다)은 북위 20도 이북 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자국 선박의 전체 어획 노력량을 2011년과 2012년에 2002-2004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전래 어업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치어(0-3세) 어획량을 2002-2004년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되 한국은 예외로 한다. 한국은 본 보존조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어업 관리를 실시하여 치어(0-3세)의 어획량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CM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3. CCM들은 또한 데이터의 질 및 데이터 보고의 적시성 향상을 위하여 태평양 참다랑어에 관한 데이터 수집 체계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CCM들은 2011년 7월 31일과 2012년 7월 31일까지 자국이 본 보존관리조치의 제 2,3,6, 및 7항 실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방위원회는 CCM들이 이 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매년 검토한다.
5. 북방위원회는 2012년 연례회의에서 2012년에 완료 될 ISC의 태평양 참다랑어 신규 자원 평가를 바탕으로 본 보존관리조치를 검토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6. WCPFC사무국장은 본 보존관리조치에 대해 IATTC 사무국과 태평양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IATTC 계약국에 알리고 상기된 본 보존관리조치의 제 2항과 3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7. 본 보존관리조치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CCM들은 적절한 경우 관련 IATTC 회원국들과 양자 협력 할 것이 권장 된다.
8. 제 2항의 규정은, 현재 협약수역 내에서의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해당 어종 어획에 실질적인 관심이 있으며 향후 자국 내 태평양 참다랑어 어업 개발 열망이 있는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9. 제 8항의 규정은 8항에 명시된 개발도상연안국 이외의 회원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의 어획 노력 증가의 근거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선박이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의 국내 어업 개발 지원을 위해 조업 활동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들은 협약수역 내 소규모 도서 개도국 및 참여 속령 CCM 중 남방 날개다랑어가 자국 수역 내 국내 어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남방 날개다랑어 어업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CCM들의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협약 수역 적도 이남에서 남방 날개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조업하고 있는 CCM들은 남방 날개다랑어 어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력에는 동 어종 관련 불확실성 감축에 대한 연구를 위한 협력 및 협업 등이 포함 된다.
4. CCM들은 협약수역 남위 20도 이남에서 자국 선박들에 의해 발생하는 남방 날개다랑어의 어획 수준을, 그리고 남방 날개다랑어를 목표어종으로 하는 실제 조업 선박에 관해서는 그 척수와 남방 날개다랑어 어획 수준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6-2010년 까지의 정보를 우선 보고하며 그 이후로는 매년 갱신된 정보를 보고 한다.
5. 본 조치는 남방 날개다랑어에 관한 과학 위원회의 조언을 기반으로 매년 검토 된다.

25. 중서부 태평양에서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행한것으로 간주되는 선박 목록 작성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1

CMM 2010-06

2010. 12. 8 채택

2011. 2. 6 발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는,

2001년 6월 23일 FAO 이사회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저지 및 근절하기 위한 국제 행동계획 (IPOA IUU)을 채택하였고, 본 행동계획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행위에 종사한 선박을 확인 할 시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야 하며 형평성 있고 투명하며 비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협약 수역에서의 IUU 어업 행위는 WCPFC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저해함을 우려하고,

이러한 어업 행위에 가담한 선주들이 WCPFC 조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적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더욱 우려하고,

관련 WCPFC 규범에 의거하여 회원국 및 협력적 비 회원국에 대하여 채택된 추가 조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에 적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IUU 어업 행위의 증가라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결의하며,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 참치 수산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치를 고려하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행하는 선박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어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1 WCPFC 요약 보고서 별지 T와 U를 반영한 본 CMM 2010-06을 채택함으로써 위원회는 개정 및 교체된 CMM2007-03을 폐지한다.

IUU어업을 예방, 저지, 및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모든 관련 국제수산규범에 비추어,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 국제적 의무에 따라서 대응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위원회 회원국들의 의무 및 준수와 집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WCPFC 협약문 제 23조 및 25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확인

1. 위원회는 매년 연례 회의에서 협약 수역 이내에서 발효중인 WCPFC 조치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협약에 규정된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을 확인하고, 이 보존조치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그러한 선박들의 목록 (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해에 이를 수정한다.

2. 이러한 확인사항은 발효중인 WCPFC조치, FAO의 자료, 통계문서 및 기타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합한 무역 통계에 근거하여 입수한 통상 정보, 그리고 알맞게 문서 처리 된 항만국 또는 어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회원, 협력적 비회원, 참여속령 (통칭 CCMs)의 보고서상에 적절하게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CCMs로부터 정보는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양식으로 제공된다.

3. 본 보존조치 상, WCPFC협약에 규정된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에 대하여 어느 한 CCM이 관련 선박이 협약수역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를 제시한 경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저지 및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에서 정의한 대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행하였다고 간주 된다.

가. 협약수역 내에서 WCPFC협약에 규정된 어종을 어획하고 있으나, WCPFC어선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기국의 배타적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도 아닌 경우

나.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어업을 행하거나 연안국

의 제반 법규에 반하여 어업 행위를 한 경우

다. 협약수역에서 발효중인 WCPFC조치에 따라 어획량을 기록,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라. WCPFC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기준 미달 치어를 어획 및 양륙하는 경우

마. WCPFC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금어기중에 어업을 하는 경우

바. WCPFC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전채, 공동어업을 하거나 등재 선박에 지원 또는 재공급 하는 경우

아. 국적 없는 선박에 협약수역에서 WCPFC협약에 규정 된 어종을 어획 하는 경우

자. WCPFC 협약의 규정 또는 WCPFC 보존관리조치를 저해하는 어업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차. WCPFC 불법, 비보고, 비규제 선박 목록에 등재 된 선박 선주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본 항의 적용을 위한 절차는 부속서A로 첨부 되어 있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혐의에 관한 정보

4. CCMs는 매년 기술이행위원회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연례 회의의 시작 최소 70일 이전에 IUU행위와 관련하여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와 함께 현재 및 전년도에 협약 수역에서 IUU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목록을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5. 사무국장에게 IUU선박 추정목록을 제출하기 전 또는 제출 시 CCM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또는 해당 기국에 직접, 이 목록에 선박을 추가 할 것임을 통보하고 문서화 된 정보의 복사본을 제공한다. 기국은 즉각 이러한 통보를 받았음을 회신해야 하며, 1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CCM은 대체 수단을 강구해 재통보한다.

불법, 미보고, 비규제 선박 목록 초안

6. 사무국장은 선박의 목록과 제4항에 따라 입수한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와 본인의 재량하에 기타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를 종합하는 WCPFC IUU선박 목록 초안을 작성하고, 기술이행위원회 연례회의 시작 최소 55일 전에 선박목록 초안과 제공된 모든 입증 정보를 모든 CCMs 및 목록상에 자국 선박이 있는 비협력적 비회원 (non CCM)에게 송부한다.
7. 사무국장은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한 CCM과 non CCM에게 해당 선박 선주에게 등재사실을 공지하도록 할 것이며 IUU목록에 포함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지하도록 요청한다.
8. IUU 선박목록 초안을 받으면 CCMs는 그 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들의 활동과 선명, 국적 혹은 등록 선주의 변경을 확인한다.
9. IUU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한 각 CCM과 non CCM들은 TCC연례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선박들이 WCPFC 보존 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했거나 또는 기국 수역 내 조업 시 해당 기국의 법규를 준수 했음을, 또는 WCPFC협약에 의해 보호 받지 않는 어종만을 어획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0. 사무국장은 TCC연례 회의 7일 전에 제 4항과 9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화된 정보를 포함한 IUU선박목록초안을 재회람한다.
11. 각 CCM 및 non CCM은 언제든지 IUU목록 초안에 등재된 어떠한 선박에 대한 문서화 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수령 즉시 이 추가 정보를 모든 연관 CCM 및 non CCM에게 화람한다.

잠정 및 현행 IUU선박 목록

12. 이전 해 채택 된 WCPFC IUU선박 목록과 회기간 수정안을 포함한 이와 관련한 새로 추가된 문서화된 정보들은 IUU 선박목록 초안 및 제6항에서 제시된 세부사항과 함께 CCM 및 non CCM에게 회람한다.

13. 현행 IUU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CCM및 non CCM들은 TCC 연례회의 개최 최소 30일 전에 해당 선박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사무국장에 전달해야 하나 제출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는 제 25항에 나열된 기록 정보를 포함해 제출 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현행 IUU선박 목록을 12항 및 본 항에서 제시한 정보를 포함해 CCM및 non CCM들에게 TCC연례회의 개최 2 주 전에 재 회람한다.

14. TCC는 연례 회의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 (1) IUU선박 목록 초안과 제6항, 10항 및 11항에 의해 배포된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고려해 잠정 IUU 선박 목록을 채택하고,
- (2) 현행 IUU선박 목록과 제12항 및 13항에 따라 배포된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에 현행 IUU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할 선박이 있는지 권고 한다.

15. 선박의 기국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TCC는 해당 선박을 잠정 IUU목록에 추가하지 않는다.

- 가. 해당 선박들이 WCPFC 보존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했거나 또는 기국수역 내 조업 시 해당 기국의 법규를 준수했거나 또는 WCPFC 협약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어종만을 어획한 경우
- 나. 문제의 IUU어업 행위에 대해 특히 기소 또는 충분한 강도의 제재조치 등 효과적인 행동이 취해 진 경우
- 다. IUU어업 활동을 한 선박의 등록을 주장한 CCM과 IUU 선박의 해당 기국 간에 문제가 잘 해결 된 경우

16. TCC는 IUU 어업선박 추가를 요청하는 CCM이 5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을 잠정 IUU선박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17. TCC는 현행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기국이 본 보존 조치의 25항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 선박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8. 제 14항에서 기술된 심의과정이 끝나면 TCC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잠정 IUU선박 목록을 제출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현행 WCPFC IUU선박 목록 수정 사항을 권고한다.

19. IUU 선박목록초안, 잠정 IUU 선박목록 및 현행 WCPFC IUU 선박목록에는 선박과 관련한 다음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선명 및 이전 선명 (있는 경우)
- (2) 국적 및 이전 국적 (있는 경우)
- (3) 소유자 및 수혜적 소유자를 포함한 이전 소유자 (있는 경우)
- (4) 운영자 및 이전 운영자 (있는 경우)
- (5) 호출부호 및 이전 호출부호 (있는 경우)
- (6) 로이드 또는 IMO번호
- (7) 사진 (가능한 경우)
- (8) IUU 선박 목록에 최초로 등재 된 날짜
- (9)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원인의 요약설명과 함께 해당 행위를 증명하는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참고 자료

WCPFC IUU 선박 목록

20.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잠정 IUU선박 목록과 관련하여 새로운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고려해 잠정 IUU 선박 목록을 검토하고, 제 18항에 따라 권고 된 현행 WCPFC IUU선박 목록의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며 새로운 WCPFC IUU 선박목록을 채택한다. CCM과 non CCM들은 최소 연례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21. 새 WCPFC IUU 선박목록 채택 시 위원회는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CCM 및 non CCM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 가. 선박 소유주에게 WCPFC IUU 선박목록에 추가되는 것과 등재될 경우의 결과에 대해 공지할 것
- 나. IUU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어업 허가 또는 등록을 철회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 알릴 것

22. CCMs는 하기의 목적을 위하여 각자 적용 가능한 국내법, 국제법 또는 국제 의무사항 및 IPOA IUU 제 56및 66항에 따라 모든 비 차별적 조치를 취한다.

- 가. 자국기를 단 어선, 지원선, 모선 및 화물선이 WCPFC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어떠한 전재 또는 공동 어로활동, 지원 또는 재공급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나. WCPFC IUU 선박이 자발적으로 입항하는 경우, 양륙, 전재, 연료 및 물자

보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입항 시 검사받도록 보장한다.

다. WCPFC IUU 목록 상에 등재된 선박의 용선을 금지한다.

라. 보존관리조치 2009 01의 1절 제1항 “바”호에 따라 WCPFC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에 국적 부여를 거부한다.

마. WCPFC IUU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으로부터 나온 WCPFC 협약 관리 어종의 상업적 거래, 수입, 양륙 및 전재 금지

바.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으로부터 나온 WCPFC 협약 관리 어종의 상업적 거래, 수입, 양륙 및 전재를 자제하도록 거래업자, 수입업자, 수송업자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을 장려한다.

사. WCPFC IUU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취급하는 WCPFC 협약 관리 어종의 가짜 수입/수출 증명서를 통제하고 예방하며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CCM과 함께 적절한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한다.

23. 사무국장은 WCPFC 웹사이트 등재 등 WCPFC IUU 선박목록의 공개를 위해 적용 가능한 기밀유지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WCPFC와의 IUU어업행위 예방, 저지 및 근절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FAO 및 기타 지역수산기구에 WCPFC IUU 선박 목록을 송부한다.

24. 관련 WTO 규범 등 국제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CCM과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CCM은 제6항 및 제14항에 따라 잠정 IUU 선박목록이나 목록 초안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 IUU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조치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제17항과 20항에 따라 WCPFC IUU 선박목록에서 삭제된 선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WCPFC IUU 선박 목록의 변경

25.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CCM과 non CCM 들은 회기간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선박을 목록으로부터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 CCM 및 non CCM이 해당 선박이 WCPFC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였음.

나. 협약수역 내 해당 선박의 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한 기국

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

다. 해당 선박이 WCPFC IUU선박 목록에 등재된 IUU어업행위에 대해 기소 또는 충분한 수위의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 조치를 취하였음.

라.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이전 소유주는 해당 선박에 어떠한 법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새 소유주는 IUU 어업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을 새 소유주가 입증할 수 있음.

마. 해당 선박의 IUU 목록 등재를 요청한 CCM 과 해당 기국간에 IUU 어업 선박 문제를 서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 하였음.

26. 사무국장은 삭제 요청에 대해 모든 세부 정보를 포함해 요청 받은 후 15일 이내에 각 CCM에게 전달한다. CCM은 전달받은 후 즉각 수신했음을 공지하며 전송일 10일 이내로 수신 확인이 없을 경우 사무국장은 삭제요청정보를 재 전송하고 해당 정보가 적절히 수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27. 위원회 각 회원국은 삭제 요청을 심사한 후 사무국장에게 각자의 결정과 그 이유를 40일 이내에 제출한다. 선박 삭제 요청에 관한 결정은 의사규칙 제30조에 의거한다.

28. 위원회 회원국이 제27항에서 언급한 기간동안에 해당 선박을 WCPFC IUU 선박목록에서 삭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사무국장은 각 CCM, non CCM, FAO 및 기타 RFMO에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WCPFC IUU 선박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29. 위원회 회원국이 목록에서의 해당 선박의 삭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박은 WCPFC IUU목록에 그대로 남겨두고 사무국장은 해당 선박의 삭제를 요청한 CCM 및/또는 non CCM에게 알린다.

재검토

30. 본 보존관리조치는 TCC에서 재검토 되고 적절한 경우 수정된다.

부속서 A

WCPFC CMM2010 06 제3항 '사'호 적용을 위한 절차

위원회는 본 보존관리조치 제 3(사)항 적용 시 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본 절차는 CMM2010 06에 명시된 기타 절차, TCC와 위원회의 규칙 및 책임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유권과 통제

1. 본 절차를 위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이나 자연인(들) 또는 실체/실체들 (등록소유주(들)이라 함은 WCPFC어선등록부 또는 WCPFC 비회원 운반선 및 연료선 임시등록부에 등록된 소유주(들)을 의미한다. 만일 선박이 둘 중 어느 등록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선주는 선박의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선주 또는 선주들로 한다.

2. 본 절차를 위하여 WCPFC어선등록부 또는 WCPFC 비회원 운반선 및 연료선 임시등록부상의 법인이나 자연인(들) 또는 실체/실체들이 동일한 경우 선박은 동일한 등록선주 소유로 간주한다. 만일 선박이 둘 중 어느 등록부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면 선박의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법인이나 자연인(들) 또는 실체/실체들이 동일한 경우 등록소유주(들)은 동일하다.

3. 본 보존관리조치 제3(사)항과 25(라)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WCPFC IUU선박 잠정 목록 또는 WCPFC IUU목록에서 선박 한 척 또는 여러 척을 등재 또는 삭제할 것인지를 고려할 시에는 새로운 등록소유주(들)이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통해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전 등록선주(들)은 해당선박에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재정적, 실질적 이해관계도 없으며 새로운 등록선주(들)이 이전에 한 번도 IUU어업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등록소유주(들)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선박의 확인과 등재

4. 본 절차를 위하여 어떠한 선박이 하기 (가)항 조건 및 (나) 또는 (다)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CCM은 본 보존관리조치 제3(사(j))항에 의거하여 해당선박을 등재시킬 수 있다.

가. 등재 대상 선박은

- i. 현재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어야 한다. 또는
- ii. WCPFC IUU선박 목록에 등재되게 한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 이후로 협약수역에서 조업한 적이 있어야 한다. (하기 '나'항에서 정의된대로)
- iii. WCPFC IUU선박 목록에 등재되게 한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 이후로 WCPFC IUU선박 리스트, WCPFC 선박 등록부 또는 WCPFC 비회원 운반선 및 연료선 임시등록부에 현재 등록되어있거나 과거 등록되었었다.

나. 등록선주는 현재 세 척 이상의 선박을 IUU선박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이하 “근저선박(underlying vessel)이라 한다.)

5. 본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4(가)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저 선박을 소유한 등록 선주가 완전 혹은 부분 소유하고 있는 추가적인 선박들은 전체가 함께 IUU선박 목록에 등재 되거나, 전체가 함께 등재 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4(가)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저 선박을 소유한 등록 선주가 완전 혹은 부분 소유하고 있는 추가적인 선박들은 IUU 선박 목록에서 삭제 될 때도 다 함께 삭제가 되거나 혹은 다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제출하여 할 정보

6. CCM 들은 본 보존관리조치의 3(사)항에 의거하여 IUU 선박 목록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선박이 본 절차 4항의 요건을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CCM들은 이 정보를 등재되는 선박(이하 3j선박이라 한다) 목록과 함께 TCC 연례 회의 개최 80일 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3j선박 목록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기 이전, 혹은 제출 시에 CCM은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관련 기국에게 3j목록에 등재되는 선박에 대해 통지하고 6항에 언급된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 사본을 전송하여야 한다. 기국은 즉각 통지 수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정보 전송 후 40일 내에 수신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을 경우, 통보한 CCM은 대안적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재 통지 하여야 한다.

IUU선박 목록 초안

8. 사무국장은 본 보존관리조치의 규정에 따라 마련하고 회람한 IUU선박 목록 초안에, 본 절차에 따라 CCM들에 의해 지명된 3j 선박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사무국장은 관련 기국들에게, IUU선박 목록 초안에 해당 기국의 3j선박들이 포함 되었다는 사실 및 이러한 선박들이 IUU 선박 목록에 정식 등재될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통지 하여야 한다.

10. 적절할 경우, IUU 선박 목록에 자국 3j선박을 포함시킨 기국들은 TCC 연례 회의 개최 20일 전에 해당 3j선박들이 본 절차 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정보를 수신한 즉시 모든 CCM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11. 소규모 도서 개도국 CCM들은 TCC연례 회의 개최 이전에, 또는 위원회 연례 회의 이전 어느 때라도, 3j선박의 IUU 선박 목록 등재로 인하여 자국의 가공, 전 재 시설 또는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관련 선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현재 FFA회원국이 유치하고 있는 투자 활동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사무국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무국장은 즉시 모든 CMM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잠정 및 현행 WCPFC IUU선박 목록

12. TCC는 연례 회의에서, IUU선박 목록 초안에 등재된 3j선박에 관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CCM이나 비 CCM이 제출한 문서화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 그리고 근거 선박 관련 조사, 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선주의 협조 및 대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 11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도서 개도국CCM이 제출한 3j선박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이 정보에 대해 숙고한 뒤, 본 보존관리조치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잠정 IUU 선박 목록에 지명된 3j선박을 등재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적절한 경우, WCPFC 현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3j선박의 기국들은 TCC연례 회의 최소 20일 전 혹은 그 이전 어느 때라도, 해당 3j선박들이 본 절차 제 4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 및 본 절차 제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타 관련 정보를 사무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만일 어떤 CCM이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통하여 해당 자국 선박이 더 이상 제 4항에 따라 지명된 근저 선박의 등록 소유주의 소유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TCC는 이 3선박들을 잠정 IUU선박 목록에 등재하여서는 안 된다.

15. TCC는 연례 회의에서, 현 IUU선박 목록에 등재된 3선박들에 관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CCM이나 비 CCM이 제출한 문서화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 그리고 근저 선박 관련 조사, 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선주의 협조 및 대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정보에 대해 숙고한 뒤, 해당 3선박이 WCPFC IUU선박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한다.

16. TCC는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WCPFC IUU선박 목록에서 3선박들을 삭제 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가. 해당 선박이 더 이상 제 4항에 따라 지명된 근저 선박의 등록 소유주의 소유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 된 경우

나. 3선박들의 잠정 등재를 초래한 근저 선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3선박들을 지명한 CCM이 이에 만족한 경우

WCPFC IUU선박 목록

17. 일단 3선박들이 잠정 IUU 선박 목록에 포함이 되면, 이 선박들은 이 목록의 일부로써 취급되고 상황에 따라 본 보존관리조치 제20 24항에 의거하여 WCPFC IUU 선박 목록의 일부로서도 취급되어야 한다.

WCPFC IUU선박 목록의 변경

18. 자국의 3선박들을 WCPFC IUU선박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기국들은 다음의 내용을 담은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를 회기간 어느 때라도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가. 해당 선박이 더 이상 제 4항에 따라 지명된 근저 선박의 등록 소유주의 소유

하에 있지 않다.

나. 3j 선박들의 잠정 등재를 초래한 근저 선박(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팔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3j 선박들을 지명한 CCM이 이에 만족한 경우

19. 소규모 도서 개도국 CCM들은 회기간 어느 때라도, 3j선박의 IUU 선박 목록 등재로 인하여 자국의 가공, 전재 시설 또는 소규모 도서 개도국의 관련 선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현재 FFA회원국이 유치하고 있는 투자 활동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3j 선박의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20. 3j선박들의 삭제 요청은 본 보존관리조치 제 26 29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 만일 근저 선박이 WCPFC IUU 선박 목록에서 삭제 될 경우, 근저 선박 소유주의 전체 혹은 부분 소유 하에 있으며 3j절차에 의해 함께 등재된 모든 추가적인 선박들은 자동적으로 근저 선박과 함께 삭제 된다.

26. 상어류를 위한 보존 관리 조치 1

CMM 2010-07
2010. 12. 8 채택
2011. 2. 6 발효

중서부태평양 고도 회유성 어족 보존 관리를 위한 위원회는,

중서부 태평양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 관리를 위한 협약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에서 상어류가 생태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상어류를 위한 FAO국제 행동 계획에서 FAO회원국들로 하여금 각 국 권한의 틀 내에서 국제법에 부합하게 상어류 어족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 수산 기구와 협력하고 상어류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효과적인 상어류 보존 관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획, 노력, 폐기 및 교역에 대한 데이터 및 여러 어종에 대한 생물학적 모수 (母數,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돌목상어 및 백상아리 등 표영성 상어류 중 특정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부속서2에 등재 되었음을 더욱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위원회 회원, 협력적 비회원 및 참여 속령(CCMs)은 적절한 경우 상어류 보존 관리를 위한 국제 행동 계획(IPOA Sharks)을 실행하여야 한다.
2. CCM들은 국가 행동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결과 및/또는 상어류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현황 등 IPOA Shark 실행 내용을 (Part2보

1 본 CMM(CMM2010-07)을 채택함으로써 위원회는 수정 되고 교체된 CMM2009-04를 폐지한다.

고서를 통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어류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또는 기타 유관 정책에는 어획된 상어의 불용과 폐기를 최소화 하고 상어류의 우발적 어획 시 산 채로 방류할 것을 권장하는 조치가 포함 되어야 한다.

4. 각 CCM은 가용한 어획 전력(前歷) 데이터를 포함하여 어구 별 연간 어획량 및 어획 노력량 통계에 대한 연례 보고를 WCPF협약 및 합의 된 보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할 시 과학 위원회에서 파악한 주요 상어 어종²을 포함 하여야 한다. CCM들은 또한 Part2연례 보고서를 통하여 선박 내 보관된 연간 어획량 및 폐기된 연간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CCM들은 적절한 경우, 원치 않은 상어류 어획 회피 전략의 연구 개발을 지원 하여야 한다. (예: 상어의 접근을 막기 위한 화학적, 자기적 장치 및 회토류 금속 장치 등)

5. 위원회는 국제 행동 계획을 실행 및 선박 내 보관 상어 어획물 및 폐기된 상어 어획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개도국 및 개발 도상 참여 속령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약문 제5조 10항에 따라 다음을 채택한다.

6. CCM들은 자국의 어업인들이 선박 내 보관 된 모든 상어류를 완전히 이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전한 이용이라 함은 머리, 내장 및 껍질을 제외한 상어의 모든 부분을 첫 양륙 또는 전채 시점 까지 선박 내에 보관함을 의미한다.

7. CCM들은 자국 선박들이 첫 양륙 시점 까지 선상에 보관 된 지느러미의 총 무게가 상어 무게의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첫 양륙 시점에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을 함께 하역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CCM들은 인증, 읍서버에 의한 감시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5퍼센트 비율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CM들은 대안적으로 자국 선박들로 하여금 상어 지느러미가 몸통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

2 주요 상어 어종은 청새리상어, 미 흑점 상어, 장완홍상어, 청상아리, 환도상어, 악상어 (남위 20도 이남, 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해 이 한계선, 또는 다른 지리학적 한계선이 적절한 지를 알아낼 때 까지) 및 귀상어 (윙헤드, 홍살귀상어, 그레이트, 스무스) 이다.

로 하역하도록 하거나 짝이 맞는 몸통 없이는 지느러미를 하역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8.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수집 되는대로 과학 위원회는 제7항에서 설명된 지느러미 무게 대 몸통 무게 비율 상세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수정 사항을 권고 한다. 과학 위원회와 기술 이행 위원회(TCC)는 제7항의 효과를 위하여 추가적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논의 하여야 한다.

9. CCM들은 자국 어선들이 보존관리조치에 반하여 어획된 상어지느러미를 선박 내 보관, 전채, 양륙 또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여야 한다.

10. 다랑어 및 유사 다랑어 업종 중 상어를 목표 어종으로 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CCM들은 우발적으로 어획되고 식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살아 있는 상어를 산채로 방류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11. 본 보존관리조치의 어떠한 규정도 전통적인 어로 활동 및 전래 어업인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연안국들이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 취하는 상어류의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등 상어류의 자원 탐사, 이용,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대안적 조치를 적용할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2. CCM들은 본 보존관리조치의 실행 및 제11항에서 채택된 대안적 조치의 실행을 Part2연례 보고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학위원회, 기술이행위원회 및 위원회의 조언에 기반하여, CCM들은 본 조치 및 상기 제 11항에 의거한 대안적 조치의 실행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협약 수역 내의 상어 어족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2010년에 과학위원회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IATTC와 함께, 주요 상어 어종의 자원 상태에 대한 예비 조언을 제공하고 해당 상어종의 자원 평가를 위한 연구 계획을 제안한다.

15. 본 보존관리조치는 WCPFC 협약이 관리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어획되는

상어류 및 1982년 협약 부속서 1에 등재 된 상어류에 적용된다.

16. 위원회는 협약문 제 7조 등에 의거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참여속령이 자국 관할 수역에서 본 보존관리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본 보존관리조치는 CMM 2009-04를 대체한다.

27. 데이터 부이에 관한 종합 정보

2010년 5월 18일

참조: CMM 2009-05와 WCPFC6 요약 보고서 제 297항

본 문서는 CMM 2009--5에 따라 데이터 부이에 대한 인식을 돕고 데이터 부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 정보를 담고 있다. 하기의 링크를 열어 보면, 어업인들이 마주칠 수 있는 데이터 부이의 종류 및 이러한 부이 중에서도 국립 데이터 부이 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 등이 나타난다. 부이 지도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는 하지만, 많은 수의 부이들이 인터넷 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국립 데이터 부이 센터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에 본 종합정보가 모든 부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 둔다.

국립 데이터 부이 센터

<http://www.ndbc.noaa.gov/>

데이터 부이 협력 패널

<http://www.jcommops.org/dbcp/>

오션 웨더 주식회사

<http://www.oceanweather.com/forecast/index.html>

영국 OSIL 사(社)--Environmental Instruments and Systems

<http://www.oceanscientific.com/Products/MarineInstruments/tabid/56/agentType/ViewType/PropertyTypeID/20/Default.aspx>

기상 부이

http://en.wikipedia.org/wiki/Weather_buoy

주: 각 사례와 함께 인용 된 문구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으로 WCPFC의 의견 및 견해를 반영하지 않음.



NOAA 국립 데이터 부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상 부이



MDS에서 운영하는 기상 부이/데이터 부이/해양학 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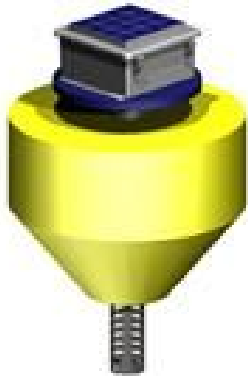


OSIL 데이터 부이

OSIL사(社)의 데이터 부이 제품군은 다양한 계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각 활용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 될 수 있다. 각 부이는 멀티 파라미터 고도기상관측기(존데), 해류 측정기 및 기상 관측 기구 등의 계측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작동 및 운송이 용이하다.

OSIL사의 부이는 회전성형한 폴리에틸렌 외장재로 아연도금 강판 주변을 감싸거나 폴리에틸렌을 중심부에 접합하여 제작한다. 중심부에는 큰 구멍이 기둥형태로 뚫려 있어 각 계측기와 케이블이 부이 상부에서 수면 아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기를 부이 중심에 부착함으로써 운송 및 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최소 직경 1.2미터, 부력 200킬로그램부터 최대 직경 3미터, 부력 9000 킬로그램 까지 총 네 가지 크기의 제품군이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태양열 판, 배터리 팩, 모니터링 계측기 등의 장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부력을 제공한다.



OSIL 신속 설치 부이 (Rapid Deployment Buoy)

OSIL사의 신속 설치 부이는 다른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또는 환경적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사용이 용이한 부이이다. 본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다루기에 적당하고 계류점이 하나라서 설치 및 회수가 용이하다.

발포소재로 제작한 후 내구성 좋은 고무 코팅을 입힌 신속 설치 부이는 YSI 6000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선박 등과 충돌 했을 때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중심 설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4주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예비 배터리와 함께 소형 태양열 판을 실었다. 무게는 25킬로그램, 길이는 1.2 미터로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다.



EMM 68 부이

EMM 68부이는 원격 측정이 가능한 수질 검사 도구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들어 올리는 데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하므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전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다이버가 입수 할 필요가 없고 작은 보트나 배로부터 쉽게 옮길 수 있다.



EMM350 PISCES 플랫폼

PISCES 는 수질, 수속 (水速), 기상학 센서, 컴퓨터 로깅 시스템을 측정하는 부이이다. 이 부이 상부층에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셀룰러 모뎀과 배터리를 실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 상자가 부착 되어 있다. 이 상자는 수면으로부터 쉽게 옮길 수 있고 다양한 해저 케이블 선을 담을 수 있다.



EMM700 수질 관측 부이

YSI사의 EMM700 수질 관측 부이는 다양한 센서가 필요한 장치에 적합하도록 설계 되었다. 부력이 뛰어나 라디오, 셀룰러 또는 위성 원격 측정기, 데이터 수집 시스템, 기상 센서, YSI 멀티 파라미터 계측기 6 시리즈 등 다양한

계측 설비를 실을 수 있다. EMM700은 호수, 연못, 강, 저수지 및 연근해에서 장기적인 관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부력은 700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다.

EMM700부이는 다루기 쉽고 대부분의 소형 선박에서 설치 할 수 있다. YSI의 부유 플랫폼에는 태양열 판, 배터리팩, 원격 측정기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 안테나, 기상 센서, 고정용 조립부품, 충돌 램프 등이 실린다.



EMM2000

엔데코(Endeco)/YSI사의 EMM2000부이는 풍속이 세고 파고가 높은 환경에서 관측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MM2000에는 라디오, 셀룰러 또는 위성 원격 측정기, 데이터 수집 시스템, 기상 센서, YSI 멀티 파라미터 계측기 6 시리즈 등 다양한 계측 설비를 실을 수 있다. 부력은 2000파운드로, 고성능 해양 관측 기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호수, 저수지, 연근해 관측에 사용된다.



데이터 부이와 데이터 로거 (Logger) OMC-045-B-250

OMC-045-B-250는 옵서베이터(Observator)사의 완전 관측 시스템으로 데이터 부이와 데이터 로거로 구성 되어있다. 매우 작은 크기의 부이는 해류가 느리게 흐르는 곳에서 수질 관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호수, 연못, 저수지 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시험 운영 결과, OMC-045-B-250 내구성이 증명 되었으며, 튼튼하고 가벼워서 설치가 무척 용이하다. 이 부이에는 모든 YSI-6시리즈 고도기상관측기 뿐 아니라 기타 고도기상관측기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OMC-045-B-250에는 12A배터리가 및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장착 되어있다.

OMC-045 데이터 로거는 사용자가 기록 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설정 15분) 설계 된 데이터 기록 장치이다. 사용자는 또한 측정된 모든 파라미터에 한계 (저, 고, 고-고)를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어떤 기록이 설정 해 둔 한계치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알람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록 주기가 알람 기록 주기 (초기설정 1분)로 전환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람을 전송한다. 모든 파라미터가 한계치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람모드를 유지한다.

OMC-045-B-250에는 고정 세트 (달과 체인 제외) 및 유지보수키트가 포함 된다. 24A배터리도 옵션으로 가능하다.